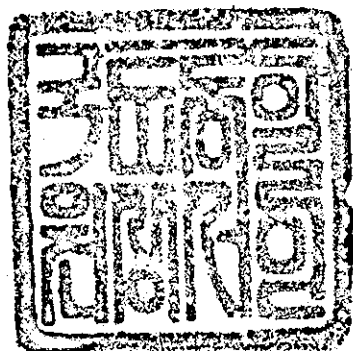


國統研 89-12-140

日本防衛白書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이 책자는 日本防衛廳이 발간한 1989 年度版 『防衛白書』중에서 全般的인 軍事情勢와 東北亞地域의 軍事狀況 및 日本自衛隊의 現況과 資料를 번역한 것입니다.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하에서 동북아 지역의 安保狀況을 分析・展望하는 관련연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冊子에 수록된 내용은 日本防衛廳의 見解 및 評價로서 當院의 見解와는 無關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目 次

第 1 部 世界 軍事情勢

第 1 章 전반적인 軍事情勢	9
第 1 節 軍事情勢의 기본적인 構造	9
第 2 節 世界軍事情勢의 기본을 이루는 東西關係	12
1. 東西關係의 推移	12
2.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외교	13
3. 美國의 動向	15
4. 유럽諸國의 動向	16
5. 금후의 東西關係	16
第 3 節 東西의 軍事的 對峙	17
1. 美國과 소련	17
2. 나토와 바르샤바	29
第 4 節 軍備管理・軍縮의 動向	34
1. 美蘇間의 軍備管理・軍縮交涉	34
2. 유럽에서의 軍備管理・軍縮交涉	35
3. UN 등에서의 多國間 軍縮審議・交涉	38
第 2 章 日本周邊의 軍事情勢	42
第 1 節 日本 周邊地域의 特性	42
第 2 節 極東소련軍의 軍事情勢와 動向	46
1. 전반적인 軍事態勢	46
2. 北方領土의 소련군	53
3. 日本周邊의 演習・行動	54
4. 中・소국경의 配置狀況	57

第3節 太平洋地域 美軍의 軍事態勢와 動向	58
1. 전반적인 軍事態勢	58
2. 日本周邊의 軍事態勢	59
第4節 中國의 軍事力	60
1. 概 觀	60
2. 軍事態勢	62
3. 美中關係	63
第5節 韓半島의 軍事情勢	64
1. 概 觀	64
2. 北 韓	64
3. 韓 國	67
4. 駐韓美軍	68
第6節 東아시아의 軍事情勢	68
1. 地域的 特性	68
2. 地域 주요 紛爭狀況	69
3. 소련의 動向	71
4. 美國, ASEAN 諸國의 動向	71
第3章 기타地域의 軍事情勢	74
第1節 中東 및 印度洋地域	74
1. 地域的 特性	74
2. 주요 紛爭狀況	75
3. 美國과 소련의 動向	76
第2節 其他의 地域	78
第2部 日本의 防衛政策	
第4章 日本의 安全保障	81

第1節 安全保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81
1. 安全保障의 重要性	81
2. 외교분야 等에서의 노력	82
3. 防衛分野에서의 努力	83
第2節 自由主義諸國의 一員으로서 日本의 役割	84
第5章 日本防衛政策의 基本과 防衛計劃의 大綱	86
第1節 防衛政策의 基本	86
1. 憲法과 自衛權	86
2. 國防의 基本方針	88
3. 防衛政策의 2大支柱 — 自衛隊와 美日安全保障體制	91
第2節 防衛計劃의 大綱	94
1. “大綱”의 전제가 되는 국제정세	94
2. 防衛의 構想	94
3. 日本이 保有해야할 防衛力	95
第3節 防衛力의 구체적 機能	98
1. 防空을 위한 機能	98
2. 上陸侵攻의 대처를 위한 機能	99
3. 海上交通의 安全確保를 위한 機能	103
第4節 美日安全保障體制的 신뢰성 확보	105
1. 美日防衛協力 — “美日防衛協力を 위한 指針”	105
第5節 기타 諸施策	108
1. 有事法制	108
2. 民間防衛	109

第3部 日本防衛의 現況과 課題

第6章 自衛隊의 現況과 課題	111
-----------------------	-----

第1節 主要作戰에 관한 防衛力の 概要	111
1. 防空能力	111
2. 上陸侵攻의 對處能力	113
3. 海上交通의 安全確保能力	117
4. 능력발휘를 위한 態勢·機能	121
第2節 研究開發	128
1. 研究開發의 意義	128
2. 研究開發의 方向	130
3. 研究開發의 着手	131
第3節 人事施策	135
1. 任用·募集	135
2. 隊員의 處遇·生活環境	138
3. 就職援護·年金	138
第7章 防衛力整備	143
第1節 中期防衛力整備計劃	143
1. 中期防衛力 整備計劃	143
2. “今後의 防衛整備에 관해서”	144
3. 向後 3年以後의 防衛力整備에 관하여	145
第2節 1989年度의 防衛力整備	146
1. 基本方針	146
2. 主要整備內容	146
3.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進척상황	152
4. 1989年度의 防衛費	152
第8章 美日防衛協力	162
第1節 “美日防衛協力を 위한 指針”에 따른 研究	162
1. 주요 研究項目	162

2. “指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研究	163
3. “指針” 第3項에 따른 研究	164
第2節 美日共同訓練	164
1. 統合幕僚會議	165
2. 陸上自衛隊	165
3. 海上自衛隊	165
第3節 美日間の 裝備・技術 協力關係	166
1. 裝備・技術분야의 對話(美日裝備・技術定期協議)	166
2. 美國의 裝備・技術의 提供	166
3. 對美武器技術 제공	167
4. 美日共同研究開發	167
5. SDI의 研究計劃에 대한 참가	168
6. 美國에서 비밀로 保有하고 있는 特許關聯의 技術 知識의 日本 移轉	169
第4節 駐日美軍의 現狀과 駐屯을 원활히 하기 위한 施策	169
1. 駐日美軍의 現狀	169
2. 駐日美軍의 주둔을 원활히 하기 위한 施策	170

第4部 國民과 防衛

第9章 各國에서의 國民과 防衛	178
第1節 自由主義諸國	178
第2節 社會主義諸國	181
第3節 中立國 등	183
<資料>	187

圖 表 索 引

〈圖 1-1〉	世界の 軍事力 對峙狀況	11
〈圖 1-2〉	美蘇 戰略 核戰力の 推移	21
〈圖 1-3〉	日本周邊의 兵力配置狀況 (概數)	43
〈圖 1-4〉	日本周邊의 集團安全保障條約	45
〈圖 1-5〉	日本 近接地域의 소련軍 配置	47
〈圖 1-6〉	極東소련地上兵力의 추이 (師團數)	50
〈圖 1-7〉	極東소련地上兵力의 추이 (병력수)	50
〈圖 1-8〉	極東소련海上兵力의 추이 (主要艦艇噸수)	51
〈圖 1-9〉	極東소련海上兵力의 추이 (主要艦艇隻數)	51
〈圖 1-10〉	極東소련의 艦艇近代化의 추이 (主要戰鬪艦艇미사일 裝備化)	51
〈圖 1-11〉	極東소련海上兵力의 추이 (潛水艦隻數)	51
〈圖 1-12〉	소련戰鬪機의 行動半徑 (例)	52
〈圖 1-13〉	極東소련航空兵力의 추이 (戰鬪機)	52
〈圖 1-14〉	極東소련航空兵力의 추이 (爆擊機)	52
〈圖 1-15〉	소련地上軍의 大規模 演習・訓練回數의 추이	55
〈圖 1-16〉	레이다 기지에 대한 攻擊訓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소련軍用機의 航跡例	55
〈圖 1-17〉	日本周邊에서의 소련艦艇・軍用機의 行動概要	56
〈圖 1-18〉	中蘇國境兵力配置	57
〈圖 1-19〉	韓半島의 軍事力 對峙	65
〈圖 1-20〉	인도지나의 軍事態勢	70
〈圖 1-21〉	인도洋周邊地域에서의 美・蘇・英・佛의 寄港地	77
〈圖 1-22〉	南太平洋地域의 주요한 나라들의 位置關係	79

〈圖 2-1〉 主要國의 GNP	85
〈圖 2-2〉 防空作戰의 例	100
〈圖 2-3〉 上陸侵攻對處作戰의 例	101
〈圖 2-4〉 對潛艦戰의 例	104
〈圖 2-5〉 海上에서의 防空의 例	117
〈圖 3-1〉 陸上自衛隊 主要裝備의 更新狀況	117
〈圖 3-2〉 基地의 要塞化의 例	124
〈圖 3-3〉 IDDN構想圖	126
〈圖 3-4〉 防衛費에서 차지하는 技術研究本部豫算 비율의 推移	131
〈圖 3-5〉 F-16의 改造의 概要와 適用되는 先進技術	132
〈圖 3-6〉 自衛官의 任用制度	136
〈圖 3-7〉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進척상황	153
〈圖 3-8〉 一般會計歲出豫算中の 비율	154
〈圖 3-9〉 一般會計歲出 主要經費의 추이	154
〈圖 3-10〉 防衛關係費의 기관별내역	155
〈圖 3-11〉 防衛關係費의 용도별내역	156
〈圖 3-12〉 防衛關係費의 경비별내역	156
〈圖 3-13〉 主要國의 兵力比較	157
〈圖 3-14〉 駐日美軍의 주둔을 圓滑하게 하기 위한 施策의 推移	173
〈表 1-1〉 「나토」와 「바르샤바」간의 戰力балан스	31
〈表 2-1〉 “防衛計劃大綱”의 達成狀況	96
〈表 3-1〉 自衛官의 停年年齡	139
〈表 3-2〉 援護施策과 그의 內容	140

〈表 3 - 3〉 平成元年度에 調達하는 主要裝備	147
〈表 3 - 4〉 防衛費의 概要	152
(1) CFE의 動向.....	36
(2) 國防의 基本方針.....	88
(3) 소위 安保에 말려든다는 理論에 대하여	93
(4) 地對空誘導彈 패트리엇	113
(5) 師團의 近代化	114
(6) 音響測定艦	119
(7) 科學技術의 進展과 裝備의 進歩.....	129
(8) 婦人自衛官	137
(9) 防衛費의 國際比較	159
(10) 防衛改革委員會	160
(11) 스위스의 兵役制度.....	184

第 1 部 世界의 軍事情勢

第 1 章 全般的인 軍事情勢

第 1 節 軍事情勢의 기본적인 構造

世界各國이나 UN 등은 자국의 安全保障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國防努力, 紛爭의 調停, 相互協力 등 갖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각지에는 무력분쟁의 위험성을 지닌 政治・經濟體制 및 이데올로기의 相違, 領土問題, 民族, 宗教上的의 대립 등의 분쟁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地域에 따라서는 종종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또 심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科學技術의 눈부신 진보로 核武器와 같은 大量破壞武器나 미사일과 같이 장거리 또는 命中度가 높은 兵器의 出現으로 인해 武力紛爭에서는 서로가 극심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武力紛爭의 미연의 防止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또 많은 나라는 一國의 힘만으로 安全保障을 확보하기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에 集團安全保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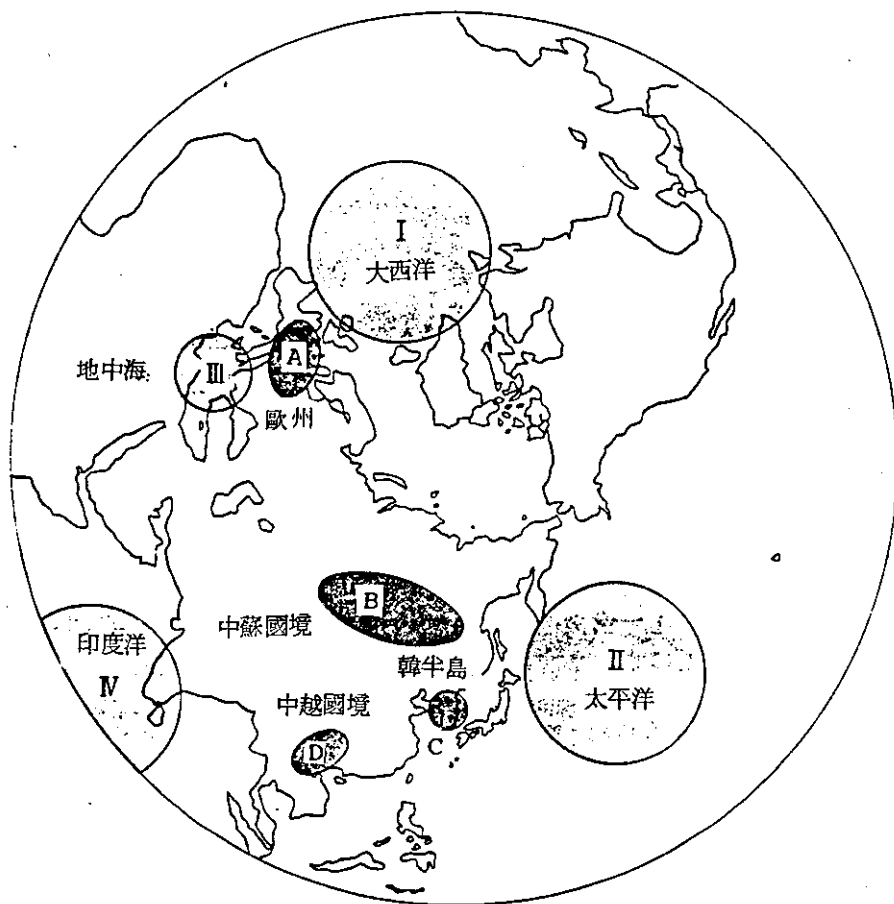
第 2 次大戰終了後 自由와 民主主義를 기조로하는 美國 및 西歐의 많은 나라들은 소련이 보이고 있는 周邊地域에로의 영향력 擴大에 위기감을 갖고, 자국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며, 동시에 地域的인 安定을 確保하려는 目的으로, 美國을 중심으로하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와 같은 抑止와 防衛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였다.

소련은 西方側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항하여 자기 세력권의 결속을 위해서 바르샤바條約機構(WPO) 등의 集團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하였다.

政治・經濟體制 및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또 압도적인 核戰力 및 대규모의 通常戰力을 보유하는 美國과 소련을 中心으로 하는 東西兩陣營間的 政治・軍事的 對峙 現象이 形成되었다. 世界的 軍事情勢는 前述한 바와같은 環境要素를 배경으로 第2次世界大戰後 동서진영의 틀을 基本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한편 아시아 中東 아프리카 中南美 등의 地域에서는 第2次世界大戰以後 殖民地支配로부터 해방되어 독립을 달성한 나라가 많다. 이 지역에서는 領土問題, 民族, 宗教上 대립의 분쟁요인 등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더욱이 이 地域의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東西兩陣營의 對峙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국내외로부터 힘의 영향을 받기 쉬운 狀況에 있다. 이와같은 사정에서 이들 지역에서는 美・蘇를 비롯해서 關係國 및 유엔의 노력에 의해서 地域問題해결을 위한 각종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극심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相互依存關係가 점점 진전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地域紛爭의 해결은 世界的 安定 나아가서는 발전에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다.

〈圖 1-1〉 世界的 軍事力 對峙狀況



地上兵力 및 航空兵力

A : 유럽의 「나토」軍과 「바르샤바」軍

B : 中蘇國境에 있는 소련軍과 中國軍

C : 韓半島의 韓國軍과 北韓軍

D : 中越國境의 中國軍과 베트남軍

海上兵力

- I : 大西洋의 美大西洋艦隊(第2艦隊를 基幹)와 소련艦隊(北洋艦隊 및 발트艦隊)
- II : 太平洋의 美太平洋艦隊(第3 및 第7艦隊를 基幹)와 소련太平洋艦隊
- III : 地中海의 美第6艦隊와 소련 黑海艦隊
- IV : 印度洋의 美第7艦隊와 소련太平洋艦隊

第2節 世界軍事情勢의 기본을 이루는 東西關係

1. 東西關係의 推移

東西關係는 政治·經濟體制와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상위에 따른 對立關係이다. 지금까지 1948年의 베를린危機, 1950年의 韓國戰爭, 1962年의 쿠바危機, 1979年 소련軍의 아프카니스탄侵攻 등 東西間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던 시기가 여러번 있었다.

또 소련은 쿠바危機를 하나의 큰 계기로하여 1960年代 중반기로부터는 대폭적인 軍事力增強을 개시하여 1970年代의 소위 데탕트期에 美國이 國防努力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軍事力을 增強하였다. 그 결과 그의 軍事力의 축적이 증대되는 동시에 核戰力과 通常戰力全般에 걸쳐 近代化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거대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그의 政治的 영향력의 증대에도 努力하여 왔다.

이와같은 소련의 動向에 대해서 美國을 위시한 自由主義諸國은 抑止力을 維持·強化하기 위해서 國防力 강화에 노력하여 왔다.

한편 東西間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대립 또는 과국을 회피하기 위해서 對話·協調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며, 1963年의 부분적 核實驗 禁止條約締結, 1971年의 核戰爭의 危險의 감소 措置에 관한 美·蘇間

의 協定締結, 1972年의 第1次戰略武器制限交渉(SALT I)¹⁾ 합의, 1975年의 유럽安全保障協力會議(CSCE) 最終文書(헬싱키宣言)²⁾ 채택, 1979年의 SALT II合議³⁾, 1987年의 中距離核戰力(INF)條約 署名, 1988年의 아프카니스탄問題에 관한 제네바 合意 등 軍備管理, 軍縮이나 地域問題 등에 관한 對話·協調가 진전한 면도 볼 수가 있다.

이와같이 東西關係는 기본적으로는 對立關係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對話·協調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양측면에 의한 말하자면 一張一緩을 되풀이 하면서 전개되어 오고 있다.

2.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外交

소련경제는 중앙집권적 관리 시스템하에 장기적 정체하여 왔다. 근년에는 石油가격의 저하에 의한 外貨수입의 감소, 생산기술의 근대화의 지연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성장둔화, 농업생산의 정체 등에 의해서 심각한 부진상태에 빠져있다.

이와같은 사정에 의해서 고르바초프政權은 “페레스트로이카”(再建)를 내걸고, 國營企業의 自主性·獨立性의 강화, 農業改革, 選舉制度의 시정을 포함한 “민주화”, “그라스노스트”(情報의 公開)”의 추진 등, 經濟·社會·政治 等, 內政 各방면에 걸친 광범한 改革에 착수하여 정체된 소련經濟의 活性化 및 재건을 하려 하고 있다. 이와같은 手段 및 方法에 의한 改革의 시도는 소련의 탄생이래에 가장 대담하고 야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자신 “經濟改革은 아직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國民經濟는 현재 필요할만한 가속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⁴⁾, 특히 經濟面에서는 거의 불만한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당면한 重大 현안의 하나인 消費物資의 不足問題나 財政赤字의 급증의 문제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 “民主化” 및 “그라스노스트”의 진전에 따라 발트3國, 카자크共和國, 아르메니아共和國, 구르지아共和國 등에서

는 소련政府의 民族政策에 대한 不滿에서 自主性 등을 요구하는 항의운동이나 폭동이 발생하는 등 多民族國家인 소련으로서의 소홀히 할 수 없는 民族問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같이 고르바초프政權은 內政面에서 중대하고 곤란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의 行方은 豫斷할 수가 없는 狀況에 놓여있다.

고르바초프政權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 및 성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당장은 東西間의 對立 競爭의 측면을 최대한으로 抑制하고, 대화·협조의 측면을 추구한다고 한다. 同時에 中國과 양국간의 關係改善를 통해서 自國을 둘러싼 國際環境의 전반적 好轉 및 軍事情勢의 緩和무드의 造成을 무엇보다도 重要한 戰略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때문에 고르바초프政權은 “新思考” 外交를 표방하여 美國과는 戰略核削減交渉, NATO와의 사이에는 軍備管理·軍縮交渉의 적극적 추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철수, 일방적 戰力削減의 표명, 방위적 軍事독트린에의 移行的 강조, 中蘇首腦會議의 개최 및 기타 일련의 정력적 外交活動의 전개 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같은 소련의 動向이 東西關係의 새로운 展開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또 그것이 가령 소련의 軍事的 위협의 실질적 경감이나 解消를 가져오고, 그리고 軍事力을 배경으로 하는 세력확장정책의 확실한 終焉을 진정으로 指向하는 것이라면 西方側의 안전 뿐만 아니라 世界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評價할 수 있을 지의 與否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政權의 意圖表明 등의 말만 갖고는 判斷하기가 곤란하다.

고르바초프書記長에 의해서 표명된 소련軍의 一方的 削減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말 그대로 實施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련의 軍事力은 西方側보다 優位에 있다. 또한 이와같은 삭감표명을 하면서도 계속 核戰力 및 通常戰力 兩面의 質的 強化를 노리고 있다. 또 각종 軍備管理·軍縮提案에 관해서는 西方側의 提案에 대응하는 것으로 되

어가는 것도 있으나, 여전히 애매한 表現이 많이 남아 있다. 西方諸國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重大한 것은 구체적인 軍事能力의 縮小・削滅에 의한 軍事的 위협의 輕減 또는 解消에 있는 이상, 금후에도 소련이 保有하는 軍事力의 實態나 그의 性格 등에 관해서 냉정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동시에 西方諸國이 결속하여 소련에 대해서 보다 낮은 軍事的 水準에서의 東西關係의 安定化를 강력히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美國의 동향

美國은 自由와 民主主義 등의 諸價値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西方諸國을 방위하여 세계의 平和와 安全을 유지한다는 抑止와 防衛를 기본으로 하는 國防政策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美國의 國防努力은 소위 데탕트期라고 하는 1970年代를 통해서 소련과는 대조적으로 억제되었던 것이었다. 소련의 長期에 걸친 현저한 軍事力增強과 그것을 背景으로 하는 아프가니스탄에의 軍事介入 등의 對外進出에 대응해서 美國은 보다 강력한 國防努力의 必要性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1980年代를 통해서 美國은 核戰力과 通常戰力의 전반적인 整備・近代化를 하려고 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INF條約의 締結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근년 막대한 財政收支의 적자를 배경으로 하여 國防豫算을 과거 4년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減少해 온 美國은 계속 安定된 國防努力을 추진해 왔다.

89年 1월에 출범한 부시政權은 여전히 어려운 財政事情下에서 議會와의 합의에 의해서 1990年度의 국방예산 정부안의 前年度對比 實質減少를 받아들였으나, 今後에도 國防力을 유지 강화해갈 것을 밝힘과 동시에 同盟國에 대해서는 계속 共同防衛를 위한 公정한 分擔을 要求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소련·東歐 등과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대화를 통해서 安定된 東西關係의 構築을 위해서 正力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 유럽 諸國의 動向

東歐 諸國中에는 이전부터 經濟活性化를 위해서 여러가지 改革을 해 온 나라가 있는 데, 소련에서 광범한 國內개혁이 개시되자 이에 따라 各國의 사정에 상응해서 여러가지 反應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書記長이 추진하고 있는 “그라스노스트”, “民主化” 등의 政治·社會面에서의 급격한 개혁의 영향을 받아 폴란드나 헝가리에서는 政治的 多元主義와 民主化의 움직임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타의 東歐 諸國은 改革에 대해서 신중한 대응이나 否定的 자세를 보이고 있는등 東歐 各國의 社會主義는 多樣化돼 가고 있다. 소련·東歐의 이러한 움직임이 今後 東西關係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목된다.

한편 西歐 諸國에서는 INF 미사일全廢棄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을 맞아 유럽의 安全保障의 實際에 대해서 再檢討의 必要性이 일어나고 있으며, NATO 內部에서 NATO 核戰力の 實際, 軍備管理·軍縮의 基本方針에 대한 검토등이 추진되는 반면 共同防衛를 위한 負擔과 分擔의 問題를 둘러싼 美·歐關係의 調整, “유럽의 기둥”의 강화를 목표로한 프랑스와 西獨과의 防衛協力の 추진, 西歐聯合(WEC)의 再活性化 등이 시도되고 있다.

5. 금후의 東西關係

미국이나 소련 모두가 近年에 와서 그의 經濟力 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소련은 구조적인 경제부진에 빠져있다. 이와 같은 事情에서 美國에서는 國防費의 실질적 삭감, 對外公約에 관한 여러가지 論議, 西方同盟國에 대한 防衛責任分擔의 확대요청 등의 움직임

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소련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적인 軍事力增強 및 세계적 규모에서의 세력확장의 추구에 여러가지 곤란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同時に 西方의 結束強化에 따른 냉엄한 國際環境을 好轉시키려는데로 指向하고 있으며, 최근 일방적 戰力削減計劃이나 각종 軍備管理・軍縮提案을 表明하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부터의 철수를 단행하였다. 또한 美蘇間에 있어서 보다 낮은 레벨의 軍事的均衡을 목표로 하여 INF條約의 체결, 戰略武器削減交渉 (START)의 계속 등의 움직임 외에 유럽에 있어서의 유럽通常戰力交渉 (CFE)도 하고 있다.

이러한 對話의 측면을 한층 강화하는 미・소 양국의 동향및 이에 관련된 유럽諸國의 動向은 東西關係를 일층 安定化에로 이끌 가능성을 갖는 새로운 전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東西關係는 유동적인 양상을 강하게 나타내며 변화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東西關係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새로운 展開中에서 東西間에 政治・經濟體制 및 이데올로기 등의 상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소 兩國이 보유하는 압도적인 核戰力 및 通常戰力을 중심으로 하여 東西가 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는 現實에는 기본적인 變化가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로부터 東西間에 있어서의 武力紛爭을 抑止하고, 平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최근의 東西關係 安定化의 노력을 한층 더 촉진시킴과 동시에 西方諸國의 結束된 防衛努力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第3節 東西의 軍事的 對峙

1. 美國과 蘇聯

오늘의 美蘇 양국의 세계적인 군사적 對峙의 기본구조는 戰略核戰力 보유에 의한 對峙, 또는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美蘇를 中心으로 한 集

國安全保障體制下에 주로 유럽 및 極東에 있어서의 소련의 戰力集中과 이에 대한 美國戰力の 前方展開라는 形態로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소련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블럭化된 集團安全保障體制인 NATO와 WPO가 東西의 경계를 따라 對峙하고 있다. 소련은 유럽에 있어서의 戰略上的 要地로 되어 있는 中部유럽地域, 특히 東獨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가장 고도의 陸·空軍戰力을 배치함과 동시에 東歐諸國에 인접하는 自國領에 대대적인 戰力을 配置하고 있다. 한편 美國의 陸·空軍戰力은 西獨領內를 중심으로 평시에도 前方配置시켜 有事 때에는 美本土로부터 部隊를 신속히 증강하기로 되어 있다. 더욱이 北美와 유럽의 NATO諸國이 大西洋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美國은 大西洋을 중심으로 하는 海역에 海軍力을 전개하고 있다.

極東에서도 소련은 강력한 陸·空戰力을 中國과의 國境地域이나 沿海地域 등에 배치하고, 소련 최대의 艦隊를 自國 周邊은 물론 太平洋 및 南支那海域 등의 海역에까지 전개함과 동시에 戰力の 근대화를 한층 촉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美國은 日本을 포함한 西太平洋地域에 海·空軍部隊를 주력으로 하는 戰力을 전방전개하여 紛爭을 억제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美本土나 하와이로부터 增援을 받을 태세를 취하고 있다.

(1) 美國 및 蘇聯의 軍事態勢

① 蘇 聯

소련은 軍事力 증강을 國策의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해 왔으며 1985년의 고르바초프書記長 취임후에도 軍事力증강을 위해서는 “모든 努力을 다 할 것이다” (1986年採擇의 「소련共產黨綱領」)라는 方針을 견지하고 있다. 그 結果 오늘에 있어서는 核戰力과 通常戰力の 어느 분야에서도 美國에 충분히 對抗할 수 있는 戰力을 구축하게 되었다.

소련은 이와같은 軍事力을 對外政策遂行의 유효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거대한 軍事力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적 영향력의 增大에 노력

해 왔다. 특히 東南아시아, 中東, 아프리카, 中美 등의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들이 不安定하고 유동적인 점을 利用하여 “民族解放鬪爭支援” 등을 내 걸고, 友好條約締結, 武器輸出, 軍事顧問團의 派遣, 소련의 영향권하에 있는 國家에 軍事要員의 派遣, 海軍力의 주둔 등의 手段을 통해 進出을 기도하면서 그의 政治的 영향력을 擴大해 왔다.

1988年 12月 고르바초프書記長이 UN演說에서도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소련은 자국 軍事독트린의 “防衛的” 성격에로의 移行 및 “合理的 充分性”의 범위내에로의 轉換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폭적인 軍事力증강을 노리고 있는 브레즈네프政權時期에도 소련의 軍事力의 “防衛的” 성격은 종종 언급된 바 있으며, 최근에 있어서도 黨이나 軍의 要人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갖가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히 統一된 설명은 없다.

이로 인해서 軍事독트린의 “防衛的” 성격에의 이행 및 “合理的 充分性”의 원칙에로의 轉換이 금후 소련軍의 規模나 編成 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는 現단계로서는 분명치 않으며, 계속 소련軍의 실제적인 動向을 신중히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美 國

美國은 自由와 民主主義 등의 諸價値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自國 및 自由主義諸國을 방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國防政策으로서 抑止와 防衛의 戰略을 일관하게 유지하고 있다. 美國은 核戰力에서 通常戰力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戰力을 保有함으로써 어떠한 侵略도 미연에 防止할 수 있는 態勢를 整備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령 抑止에 失敗하고 武力紛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에 有効하게 대처하여 美國과 同盟國에게 유리한 형태로 가급적 早期에 종결토록 하고 있다. 또 美國은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美洲諸國間에 集團安全保障條約을 체결하고, 각 지역의 同盟國과 협력하여 地域의 安全 및 自國과 이들 諸國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다.

부시新政權은 소련의 軍事독트린 變更에 관한 主張 등 軍事面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하여, 단순한 말로서만 아니라 명확하게 實證된 長期的인 軍事態勢의 變化가 인정되지 아니하고서는 美國의 戰略이나 戰力構成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종래의 軍事態勢의 유지 강화에 노력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1990年度 부시행정부의 國防豫算案은 財政赤字의 해소를 위해서 議會와의 합의하에 레이건前政權의 豫算案보다 감액 수정하게 되었으나, 兵力의 質, 卽應態勢 및 戰爭持續能力의 유지·확보가 이 修正豫算案의 최우선事項이라 하여 금후에도 軍事態勢의 유지, 강화를 해 나갈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同政權은 美軍의 前方展開와 그의 卽應態勢의 유지를 豫算修正案의 優先事項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美軍의 公約維持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2) 美·蘇의 核戰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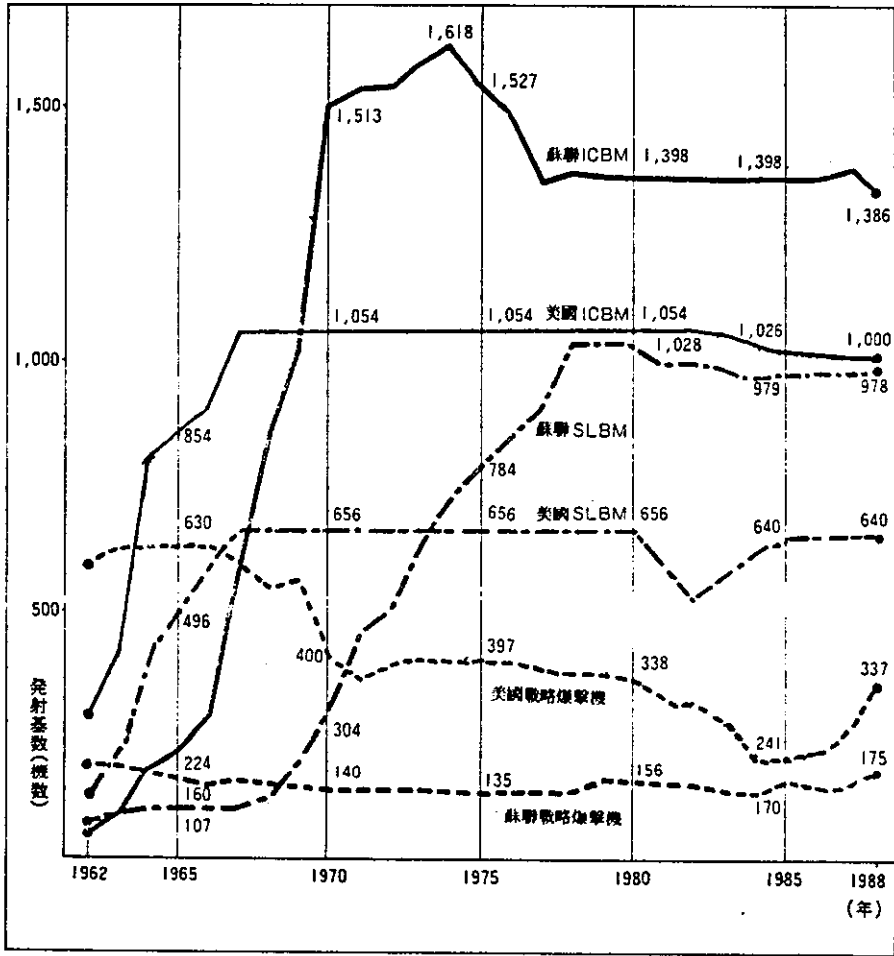
現在의 軍事情勢 즉, 東西關係의 基本을 이루는 것은 美蘇의 核戰力이다. 核戰力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으며, 한번 그것이 使用되면 相互壞滅的인 被害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第2次世界大戰後, 核戰爭이나 그에 비할만한 대규모의 武力紛爭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가장 큰 배경의 하나로서 이와같은 核戰力에 의한 抑止力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美蘇의 核戰力에는 미·소本土를 서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戰略核戰力과 주로 戰域內에서만 사용되는 非戰略核戰力이 있다.

① 戰略核戰力

美·蘇 양국이 보유하는 戰略核戰力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戰略爆擊機등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核戰力에는 각각 長短點이 있기 때문에 美蘇 모두는 이 3개의 기둥을 계속 整備하고 있다.⁵⁾

〈圖 1-2〉 美·蘇 戰略核戰力の 推移



註：資料는 밀리타리 발란스(1988~89) 등에 의함.

㊦ 소련

戰略核戰力の 분야에서 소련은 지금까지 특히 ICBM과 SLBM을 중시하여 그의 증강에 노력하였다.

ICBM은 1960년대 말에, SLBM은 1970년대 후반에 發射基數에 있어서 美國을 능가하게 되었다(第1-2圖 參照).

ICBM에서는 명중율이 높은 複數個別誘導彈頭(MIRV)화된 SS-18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소련은 이론적으로는 SS-18의 일부로도 先制攻擊을 가하여 美國의 ICBM싸이로의 大部分을 破壞할 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殘存性이 높은 路上移動型의 SS-25 및 鐵道移動型인 MIRV塔載의 SS-24의 實戰配置가 進行되어 質적인 면에서는 계속 현저한 개선을 하고 있다. 또 SS-18, SS-24나 SS-25의 후계로서 명중정도나 投射能力이 개선된 신형 ICBM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LBM에 있어서는 보다 射程距離가 길고, 명중율이 높은 SS-N-20이나 SS-N-23을 塔載한 타이퐁級과 델타Ⅳ級 彈道미사일潛水艦(SSBN)의 實戰配置를 促進하고 있다. 그 結果 소련은 바렌츠海나 오호츠크海 등 소련의 海上·航空戰力の 지원을 받는 本土부근의 海域에서 직접 美本土를 공격할 수 있는 能力을 향상시키고 있다.

戰略爆擊機에 있어서는 射程距離 약 3,000 km의 空中發射 巡航미사일(ALCM) AS-15를 塔載할 수 있는 TU-95 베어H기를 약 70機이상 배치하고, 또 超音速戰略爆擊機 블랙 잭을 곧 실전 배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형의 ALCM AS-X-19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戰略防衛분야에서도 소련은 종래부터 활발한 研究開發을 해 오고 있다.

소련은 거의 自國全土를 커버하는 大型 웨이즈드·어레이·레이더網을 구축하여 모스크바周邊에 세계유일의 彈道彈邀擊미사일(ABM)을

배치하여 彈道미사일防衛(BMD)의 강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彈道미사일에 한정적인 攻擊能力을 갖는 地對空미사일의 개발·배치도 촉진하고 있다. 또 소련은 人工衛星을 攻擊할 수 있는 시스템(ASAT)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核戰爭時에 黨·國家指導者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주변 등에 地下 數百米나 되는 地下施設도 整備하고 있다.

⊕ 美 國

戰略核戰力の 분야에서 美國은 소련이 대형 ICBM 등을 增強하여 硬化目標破壞能力을 向上시키고 있는데 대처해서 명중율과 殘存性의 向上 등 核戰力 全般의 近代化를 추진하고 있다.

ICBM에 있어서 높은 명중율을 갖는 신형 ICBM 피스·키퍼의 固定싸이로에 50基의 配置를 完了하였다. 다시금 이를 鐵道移動型으로의 轉換이나 路上移動型의 소형 ICBM의 開發을 계획하고 있다.

SLBM분야에서는 트라이던트 SLBM塔載의 오하이오級 原子力潛水艦을 건조하고, 또한 여기에 앞으로 塔載하게 되는 硬化目標의 파괴에 필요한 높은 命中율을 갖는 트라이던트Ⅱ(D-5) SLBM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戰略爆擊機에 있어서는 B-1B 폭격기 약 100機의 배치를 완료하고, ALCM塔載를 위한 B-52의 改修를 추진하고 있다. 또 1990年代初의 배치를 목표로 하여 스텔스성을 갖는 高度技術爆擊機(ATB)B-2의 개발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스텔스성을 갖고, 보다 命中率이 높으며, 보다 장거리의 新型 巡航미사일(ACM)이나 B-1B, B-2 爆擊機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新型短距離 攻擊미사일(SRAMⅡ)의 개발도 추진중에 있다.

戰略防衛의 분야에서 현재 美國은 계속 SDI研究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장래에 大統領이나 議會 등이 彈道미사일防禦 시스템의

개발 배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必要한 技術 知識을 제공하는 데 있다. 1990年代에는 戰略防衛의 第1段階의 배치를 개시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② 非戰略核戰力

非戰略核戰力에는 中距離爆擊機, 地上發射미사일, 海洋·空中發射미사일 및 戰術核 등 다양한 核전력이 있다. 이 중 射程 500 km에서 5,500 km까지의 地上發射미사일에 대해서는 INF條約에 의해서 폐기되고 있다.

㊦ 소 련

核塔載可能한 射程 300 km以上の AS-4空對地(艦)미사일을 裝備할 수 있는 TV-22M 백 파이어를 現在 약 360機 배치하고 더욱 增強을 계속하고 있다.

또 命中率이 높은 新型 短距離地對地미사일 SS-21도 증가하고 있다. 海洋·空中發射의 新型 장거리 巡航미사일에 있어서 ALCM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AS-15에다 추가로 AS-X-19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LCM으로는 SS-N-21의 아그라級 原子力潛水艦에로의 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다 대형의 S-S-NX-24도 양 커級 改造型 原子力潛水艦 등에 塔載되어 수년 이내에 運用가능하게 될 것이다.

㊧ 美 國

INF미사일 폐기후에도 구주에서는 WFO가 短距離核戰力이나 通常戰力の 분야에서 여전히 優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은 나토의 柔軟反應戰略의 維持強化의 일환으로서 랜스 地對地미사일의 近代化를 포함한 非戰略核戰力の 近代化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 一部の 艦艇에서는 對地用核彈頭 塔載토마호크 巡航미사일의 運用이 가능하게 되었다.

(3) 美蘇의 通常戰力

거대한 파괴력을 갖는 核戰力を 美蘇 양국이 보존함에 따라 모든 紛爭의 抑止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通常戰力の 意義는 한층 크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科學技術의 進歩에 의해서 通常戰力の 개선이 크게 향상되어가는 경향에 있다.

美蘇의 通常戰力の 構成과 展開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련은 유러시아大陸의 거의 中央에 위치하여 다수의 나라와 國境을 接하는 大陸國家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大規模의 地上軍을 갖게 되었다. 한편 對外 同盟關係에 대한 依存度가 적기 때문에 본래 海上戰力에 의거하는 바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소련은 地上 및 航空戰力の 量的 우세의 유지와 질적 개선에 더하여 海上戰力에 대해서도 대형의 新銳艦의 도입 등 質量 兩面으로 현저하게 증강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美國은 구주와 극동을 중심으로 하는 主要地域에 戰力을 前方配置함과 동시에 戰略機動性을 중시한 部隊를 美本土에 대기시키고, 유사시에는 太平洋이나 大西洋을 경유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 抑止를 하려고 한다. 이에 더하여 美國은 海外貿易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美國 및 同盟國의 利益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씨레인이 큰 役割을 하고 있다.

(1) 소 련

① 地上戰力

소련은 유러시아大陸에 걸쳐 北歐로부터 極東까지 12個國과 아주 긴 國境을 접하고 있는 大陸國家이며 전통적으로 대규모의 地上軍을 保有하고 있다. 현재는 동구등 自國領土밖에 總計 212個師團 約 200萬名, 戰車 約 57,000대를 배치하여 구주, 극동, 중동방면의 3地域에 戰力을 집중하고 있다.

근년에는 양적인 增強에다 T-72, T-80 등의 新型戰車, 自走砲, 攻擊헬리콥터 등에 의한 火力, 機動力의 向上이나, 地對空미사일 등에 의한 戰場防空能力의 向上 등 질적 向上이 현저하게 되었다. 또 空挺師團, 空中攻擊旅團을 합해서 다수의 輸送機를 갖는 空軍輸送部隊는 원격지에의 신속한 戰力投入能力의 면에서도 주목된다. 또한 敵의 후방 깊숙히 잠입하여, 적의 軍事施設의 정찰, 파괴 등을 주임무로 하는 特殊任務部隊(스페즈나즈)를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 소련은 化學·生物戰能力을 지금까지 일관해서 증시해 왔으며, 오염된 환경하에서의 作戰遂行能力뿐 아니라, 化學·生物兵器의 사용 능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련은 1989年 1月 化學兵器의 폐기의 개시를 발표하였으나, 폐기완료시기나 폐기량 등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② 海上戰力

소련海軍은 沿岸防衛型에서 外洋型의 海軍으로 成長하기 위해 과거 4半世紀 以上の 기간을 일관해서 증강해 왔다.

소련海軍은 北洋, 발트, 黑海, 太平洋의 4個艦隊와 카스피小艦隊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력은 艦艇 약 3,080隻(그 중 潛水艦 약 360隻), 약 765萬톤, TU-22M 백 파이어를 포함한 作戰機 약 970機, 海兵 약 1萬7千名에 달하고 있다.

그 任務는 평시에는 주로 駐屯에 의한 政治, 軍事的 영향력의 行使, 유사시에는 소련에게 戰略的으로 중요한 海域의 確保, 自由主義諸國의 海上交通의 방해 또는 저지, 地上部隊 등에 대한 지원 등이다.

소련은 이와같은 任務遂行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미 4隻의 키에프級 航空母艦을 취역시켰다. 또 黑海沿岸의 니코라에프造船所에서는 다수의 航空機가 塔載可能한 트빌리시級 新型航母의 1番艦 도색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곧 海上試驗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트빌리시級

2番艦도 동조선소에서 작년에 진수하였다. 키에프級 航母는 排水量 (滿載) 37,100 톤으로 보이나, 트빌리시級 航母는 排水量 60,000萬 톤으로 추정되어 주목을 끈다.

또한 키에프級 原子力미사일巡洋艦, 슬라바級 미사일巡洋艦 등의 艦艇과 靜肅化 등에서 질적 향상을 보게 된 아쿠라級, 시에라級 등의 原子力潛水艦의 착실한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

③ 航空戰力

소련의 航空戰力은 作戰機 약 9,380 機로서 大規模이며 다양하다. 그리고 신속 運用의 柔軟性を 높임에 의해서 作戰遂行能力을 향상시키고 있다.

航空機의 증강은 질적면에서 현저하다. 航續能力, 機動性, 低空度高速侵攻能力, 塔載能力, 電子戰能力에 우수한 MIG-23/-27 후록거, S U-24 펜서 등의 전투기나 폭격기의 증강으로 航空優勢獲得能力, 對地·對艦攻擊能力 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또 MIG-29 폴그람, MIG-31 폭스하운드, SU-27 프랑카 등의 록다운(下方目標探知), 슈트다운(下方目標攻擊)能力이 특히 우수한 第4世代 기종의 전투기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저공탐지능력, 조기경계능력, 戰鬥指揮·官制能力에 우수한 1L-76 메인스티空中警戒管制機(AWACS) 및 新型공중급유기 미다스의 배치가 계속되고 있다.

(2) 美 國

① 地上戰力

美國의 地上戰力은 陸軍 18 個師團 약 77 萬名, 海兵隊 3 個師團 약 20 萬名을 보유하고 있으며, 美本土外에 NATO 諸國(4 個師團), 韓國(1 個師團)등에 戰力을 전방전개하고 있다.

특히 NATO정면에 展開된 在歐美軍은 바르샤바軍의 대규모 機甲部

隊에 대항하기 위해서 M-1 에이브람즈戰車, M-2/M-3 브랏드레 裝甲步兵戰車, AH-64 아파치武裝헬리콥터의 배치 등 對裝甲能力과 戰場機動能力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세계각지의 여러事態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戰略機動性이 훌륭한 師團에로의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② 海上戰力

美國은 15個航母戰團그룹과 4個戰艦戰團그룹을 基幹으로 하는 600隻을 保有하는 海軍의 建造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1988年 10月 4번째의 戰艦 위스콘신이 재취역하고, 또 航母 에이브라함 링컨의 취역이 1989년말에, 항모 조지 워싱턴의 진수가 1989年 9월에 예정되어있다. 또 우수한 防空能力을 갖는 이지스·시스템⁶⁾을 장비한 타이콘데로가級 미사일巡洋艦이나 아레이 버그級 미사일驅逐艦의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國防豫算의 제약으로 인한 艦艇建造計劃의 연기나 航母를 포함한 艦艇의 早期退役 등으로 艦艇數는 당분간 600隻에는 달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일부의 艦艇은 對艦用, 對地用의 通常彈頭塔載 토마호크巡航미사일이 운용가능하게 되었다.

美海軍은 大西洋에 第2, 地中海에 第6, 西太平洋 및 인도洋에 第7, 東太平洋에 第3의 艦隊를 전개하고 있다.

③ 航空戰力

美國의 航空戰力은 作戰機 5,260機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航空優勢가 空中, 海上 및 地上 戰鬪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이分野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F-15, F-16, F/A-18 등의 高性能 戰鬪機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고성능 전술전투기(ATF)를 1993年부터 조달할 계획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작년 스텔스성을 갖는 F-117 A 전투기의 보유를 공표하였다.

美空軍은 37個戰術戰鬪 航空團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第9, 第12空軍을 美本土에, 第3(英國), 第16(스페인), 第17空軍(西獨)을 유럽에, 第5(日本), 第7(韓國), 第13空軍(필리핀)을 아시아·太平洋에 配置하고 있다.

④ 其 他

미국은 戰力の 前方展開와 緊急展開를 可能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통합軍인 輸送軍 밑에 海·空輸送能力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重裝備 등을 사전에 集積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陸上 施設에 備蓄을 함과 동시에 事前 集積船을 유럽주변해역, 또는 印度洋이나 西太平洋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최근 세계각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테러, 반란, 내전 등의 “低強度紛爭(LIC:Low Intensity Conflict)”이 第3世界國家의 정치, 경제, 사회적 不安定을 초래케하여 소련의 영향력 擴大 機會로 이용되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低強度紛爭이 國際兵器移轉의 증대에 상응하여 自由主義諸國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아, 紛爭抑止뿐 아니라 이것들과 실제로 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美國은 陸, 海, 空軍의 약 4萬名으로 이루어지는 特殊行動軍(SOC)을 편성하는등 對處手段을 강화하고 있다.

2. 나토와 바르샤바

(1) 개 관

유럽지역은 第2次世界大戰後 東西兩陣營의 전형적인 대치지역으로 되고 있으며, 나토와 바르샤바가 中部유럽을 中心으로 하여 노르웨이

北端에서 터키의 東쪽 國境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戰力을 갖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 地域은 紛爭이 발생하게 되면 世界大戰으로 확산될 매우 중요한 地域이다.

대치의 狀況을 보면 卽應性이 높은 部隊가 나토와 바르샤바의 경계를 끼고 고밀도로 대치하고 있어서, 軍事的 對峙가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지역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토는 전통적으로 領土占領能力이 우세한 바르샤바가 서구라과의 防禦能力이 充分치 못한 점을 이용해서 侵略을 한다면 이의 지지를 위해서 通常戰力, 非戰略核戰力, 戰略核戰力을 有機的으로 정비하여 바르샤바의 攻擊에 대해 유연하게 對處하고자 하는 柔軟反應戰略을 취하고 있다. 즉, 나토는 西獨領內에 地上戰力과 航空戰力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바르샤바軍의 공격시에는 가능한한 東西獨國境線부근에서 이를 阻止한다는 前方防禦態勢를 갖추고 있는 바, 狀況에 따라 단계별로 核兵器使用도 不辭한다는 態度를 보여 侵略을 抑止하고자 한다.

또 바르샤바군의 增強 補給이 바르샤바諸國에 이르는 육로에 의존하고 있는 데 비해서 北美大陸으로부터 유럽의 나토에의 增強補給은 약 6,000 km의 大西洋을 사이에 두고 행하여지기 때문에 나토와 바르샤바간의 海軍力의 역할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바르샤바의 動向

1988年 12月 소련은 유럽의 자국영토와 東歐에 駐屯하고 있는 군대의 一部削減計劃을 발표한데 이어, 東歐 5個國도 1989年 1月 戰力의 削減計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다고 해도 바르샤바는 傳統的인 양적 우위에다가 질적 강화를 계속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通常戰力에서는 나토에 대한 優位는 기본적으로 아무 變化가 없는 것이다.

核戰力에 있어서는 INF條約에 의해서 SS-20 등이 폐기되어 가고 있으나, 소련은 短距離核戰力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TU-22M 백 파이어의 增強, 師團에 배치하고 있는 후로그 미사일의 SS-21 예로의 更新을 계속하고 있다.

通常戰力에서 나토와 바르샤바의 양적인 軍事발란스는 “第1-1表”에서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分野에서 바르샤바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地上戰力에서는 바르샤바의 中核이 되는 東歐駐屯 소련軍(戰車師團 16個, 自動車化狙擊師團 14個)에 T-80戰車 등의 최신장비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등 근년에 와서 질적 강화가 눈에 띈 정도이다. 또 소련軍은 바르샤바主力의 攻擊時에 戰車を 主體로 하는 고도의 기동성을 가진 軍團規模의 作戰機動그룹(OMG)을 運用하여 나토의 增援部隊의 到着以前에 核을 使用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西歐

〈表 1-1〉 나토와 바르샤바의 戰力발란스

	區 分		나 토	바 르 샤 바
	陸 上 戰 力	師 團 數	平 時	105 1/3
戰 時			141 1/3	214 2/3
主 力 戰 車 數			22,200	53,000
	火 砲 門 數		10,600	36,000
航 空 戰 力	爆 擊 機		350	888
	攻 擊 機		2,865	2,330
	戰 闘 機 / 邀 擊 機		1,178	4,432

- 註 1. 資料는 мили타리·발란스(1988-89)에 의함.
 2. 太西洋으로부터 우랄山脈까지의 兵力을 對象으로 함.
 3. 나토에는 프랑스軍 및 스페인軍을 포함함.
 4. 航空戰力에는 海軍航空機를 포함하지 아니함.

를 점령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海上戰力은 소련의 北洋, 발트, 黑海의 3個의 함대를 主力으로 하고 있다. 潛水艦分野에서의 量的 優位에다 近年에는 大型水上艦과 新型原子力잠수함의 導入 등에 의해서 對潛戰能力, 對水上戰能力이나 海上交通破壞能力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航空戰力은 量的 優위에다 最新銳機의 배치로 航空優勢를 유지하며 對地對艦 공격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新型 地對空미사일의 배치로 防空能力을 強化시키고 있다.

(3) 나토의 動向

1988年 발효한 INF 條約에 의해서 地上發射 中距離미사일을 폐기하게 되고, 이로인해 通常戰力の 比重이 相對적으로 높아짐과 同時に 短距離核戰力(SNF)과 通常戰力에서 소련側의 優位가 한층 돋보이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나토는 금후에도 柔軟反應戰略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核戰力과 通常戰力の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通常戰力은 INF 조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紛爭의 抑止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종전보다 이 分野에서의 整備의 重要性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通常戰力改善計劃(CDI)⁷⁾을 추진하는 외에 敵後續部隊攻擊構想(FOFA)⁸⁾을 채용하여 이 構想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新技術의 도입으로 장비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核戰力の 근대화는 1983年 나토國防相會議에서의 결정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⁹⁾최근 西獨領內에 배치되어 있는 美國의 랜스 短距離미사일의 근대화에 관해 나토內에서 各種의 論議가 있었으나, 1989年 5月の 나토首腦會議에서 1992年の 東西關係의 狀況, CFE交涉 및 SNF交涉의 進전상황 등을 감안하여 後續미사일의 필요여부를 決定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나토는 後方防衛態勢를 갖추기 위해 美國을 비롯한 同盟國軍 약 35

萬名 以上을 西獨領內에 平時에도 주둔시키고 있다. 유사시에는 美國은 동원결정후 10 일이내에 陸軍 6 個師團, 空軍 60 個戰術戰鬪飛行隊 및 1 個海兵機動展開旅團(MEB) 등을 증강하기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장비, 탄약, 자재 등의 事前配置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平時 戰時에 同盟國軍을 받아들여 支援토록 하기 위한 協定 들이 나토加盟國間에 추진되고 있으며, 人的, 物的으로 駐屯軍을 지원할 태세에 있다.

海上戰力은 同盟關係에 있는 北美와 유럽이 大西洋을 사이에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토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토의 海軍力은 美國의 第2艦隊 第6艦隊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2艦隊는 노르웨이海, 北海, 北大西洋 등 나토의 북쪽海域에 전개되어 바르샤바의 침략을 억지함과 동시에 大西洋全般, 카리브海 등의 海域에도 전개되어 海上交通路의 안전확보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또 第6艦隊는 地中海에 전개하여 나토 남쪽에 대한 바르샤바의 침략을 억지함과 동시에 美國과 中東의 同盟 友好國의 利益을 지키고 있다.

航空戰力은 약 4,400 機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F-15, F-16, F-18, 트네드 등의 高性能機가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駐屯 美空軍의 F-16 基地問題는 작년 5 月의 나토防衛計劃委員會(DPC)에 서 이탈리아로 이전하는 문제와 이전 및 이전경비의 나토國 共同負擔이 합의되었고, 작년 6 月 이탈리아政府도 이것을 승인하여 나토의 航空戰力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 나토의 유럽諸國은 유럽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美國의 公約과 더불어 유럽諸國 自身에 의한 防衛努力을 추진하고 있다. 나토 軍事機構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는 美·英·佛·西獨의 4 個國 條約에 따라 軍隊를 西獨에 駐屯시키고 있으며 同時에 작년 10 月에 는 西獨과 合同旅團司令部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事實들이 유럽정면

의 軍事발란스 유지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럽聯合(WEU)은 1987年 西歐各國의 防衛努力의 重要성을 강조한 강령을 채택하고, 1989年11月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새로 加盟하는 등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第4節 軍備管理·軍縮의 動向

美國을 비롯한 自由主義諸國은 安全을 확보하기 위해서 防衛體制의 改善 強化에 노력함과 同時에 他面에서는 東西間의 軍事발란스를 보다 낮은 水準으로 유지한다는 目標下에 소련중심의 社會主義國과 각종 交渉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東西間의 軍備管理, 軍縮交渉으로는 美·蘇 양국간 交渉이나 歐洲에서의 交渉이 있다.

또 유엔이나 제네바軍縮會議 등에서는 東西兩陣營以外的 나라들을 포함한 多國間의 軍縮審議 交渉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1. 美·蘇間의 軍備管理 및 軍縮交渉

(1) 戰略核, 宇宙·防禦兵器

戰略核削減交渉(START)에 관해서는 1987年 12月의 美·蘇首腦會談을 통해서

- ① 戰略核武器의 50%를 削減한다.
- ② 그중 戰略核運搬手段數의 上限을 1,600基(機)로 하고, 彈頭數의 上限을 6,000發로 한다.
- ③ 重爆擊機塔載의 ALCM의 計算方式에 대해 검토한다.
- ④ 이 밖에도 SLCM의 配置制限에 대해서 서로 수락가능한 解決方案을 모색한다 등에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移動式 ICBM이나 SLBM의 規制方法, 檢證方法, SDI規制와 關聯된 問題 등에 대해서 兩國間에는 아직 의견의 차이가 있다.

또 宇宙·防衛武器分野에서 소련은 여전히 SDI 沮止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BM條約은 미해결의 問題로 남아있다.

또한 미국은 1983年 7月以來 소련 그라스노야르스크의 大型레이더 ABM制限條約違反을 問題로 삼아 왔으며, 특히 작년 8月부터 앞으로의 戰略武器에 관한 軍備管理協定을 체결하는 前提條件으로서 소련에게 그의 撤去를 요구하고 있다.

(2) INF (中距離核戰力)

1988年6月 INF條約이 발효하여 美國의 퍼싱Ⅱ, GLCM, 소련의 SS-20 등의 장거리 INF (射程 1,000km ~ 5,500km)는 3年以內(1991年 5月末까지)에, 그리고 퍼싱 Ia, SS-12, SS-23 등의 단거리 INF (射程 500km ~ 1,000km)에 대해서는 1年半以內(1989年 11月末까지)에 완전 폐기하기로 되어 있으며, 88年 7月부터 서로 査察팀을 받아들여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

2. 유럽에서의 軍備管理, 軍縮交渉

89年 1월에, 1986年 11月부터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던 歐洲安全保障·協力會議(CSCE) 第3次 홀로·앞會議가 最終合意文書를 채택하고 종료하였다. 이 최종 合意文書에 따라 CSCE의 범위내에서 “歐洲通常戰力交渉(CFE)”과 “信賴·安全造成措置交渉(CSBM)”의 두 가지 交渉이 금년 3月부터 새로이 개시되었다. 지금까지 歐洲에서의 通常戰力の 軍備管理 및 軍縮에 관해서는 통상전력군비관리교섭의 예비교섭, 信賴造成措置에 관해서는 1986년에 終了된 歐洲軍縮會議(CDE)의 今後의 方向에 대한 協議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새로운 두 가지 交渉의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이러한 問題들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CFE개시가 승意됨에 따라 1973年부터 15年以上이나 계속된 中歐相互均衡兵力削減交渉(MBFR)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금년 2월에 끝났다.

(1) 유럽通常戰力交渉(CFE)

CFE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通常戰力均衡의 확립, 戰力不均衡의 제거, 奇襲 및 大規模攻擊能力의 제거에 의한 유럽의 안전과 안전보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CFE의 참가국과 대상지역은 MBFR(나토측 12個國, 바르샤바측 7個國이 參加하여 中部유럽을 對象으로 하여왔다.) 보다 크게 확대하여 參加國은 나토와 바르샤바의 全加盟國 23個國, 교섭대상지역은 大西洋으로부터 우랄에 이르기까지 유럽參加國의 領土로 하고 있다.

또 交渉의 대상으로 되는 戰力은 兵器 장비를 포함한 通常戰力이며, 核兵器 海上戰力 化學兵器 등은 제외되고 있다.

(2) 信賴・安全造成措置交渉(CSBM)

CDE의 스톡홀름최종합의문서에 의한 信賴・安全造成措置(일정한 군사활동의 사업보고 및 감시 등)의 성과에 따라 새로운 포괄적 信賴・安全造成措置를 취하기 위해 CSCE全參加國이 CFE와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다.

(1) 歐洲通常戰力交渉(CFE)의 動向

1. 바르샤바 및 나토의 第1 라운드 제안골자

(1) 바르샤바의 提案

第1段階(1991以前~1994年)에서: 兵力과 通常兵器를 나토, 바르샤바 雙方은 현재의 최저수준을 10~15% 하향하는 동시에 공

통의 상한까지 삭감. 그리고 동서국경지대에 낮은 軍事레벨의 지대를 설정.

第2段階(1994~97年)에서 다시 雙方 軍事力을 25% 삭감.

第3段階(1997~2000年)에서 雙方 戰力에 엄밀한 방위적 성격을 부여

其他 海軍力에 대해서는 CFE에 포함시킬 것을 示唆. 그리고 戰術核武器의 削減에 관해서 개별교섭의 개시를 제안

(2) 나토의 提案

① 戰車, 野砲, 裝甲兵力輸送車에 관해서

㉠ 나토·바르샤바의 보유총수의 上限

㉡ 各國마다 보유수의 上限

㉢ 外國駐屯部隊의 보유수 上限

㉣ 지역적 配置數의 上限

을 설정함.

② 海軍力은 交渉의 對象外, 核兵器는 交渉테마가 아니라는 뜻을 주장함.

2. 第2라운드이후의 動向

(1) 바르샤바는 第2라운드에서 1997년까지(第2段階)는 거의 前述한 나토提案과 같은 형태로 상한선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나토提案에는 없는 兵力 戰鬪航空機 戰鬪用헬리콥터도 삭감의 對象으로 똑같이 제안하고 있다.

(2) 이에 대해서 나토는 5월의 나토首腦會議에서

① 美·蘇의 유럽駐屯部隊의 삭감

② 지상배치작전기 헬리콥터를 교섭대상으로 추가

③ 交渉의 合意・實行에 관한 단기 타임테이블의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시 美大統領 提案을 다시 검토한 후에 CFE에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3) CFE는 東西兩陣營間의 제안이 서로 접근을 보여주는 데서 금 후 신전해 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하나 日本으로서는 歐洲軍縮의 極東地域에 대한 영향등, 앞으로도 CFE의 動向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3. 유엔 등에서의 多國間 軍縮審議 및 交渉

(1) 유엔의 軍縮審議

유엔에서의 軍縮問題審議는 1978 年の 제 1 회군축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 오직 總會 第 1 委員會, 유엔軍縮委員會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5 月과 6 月에는 第 3 回 유엔군축특별총회가 열렸다.

(2) 제네바軍縮會議(CD)

제네바軍縮會議는 구체적인 군축조치에 관해 교섭을 하는 유일한 多國間交渉機關이다. 1988 年 봄・여름 兩會期에서 전년과 같이 핵실험금지, 화학무기금지, 우주군비경쟁금지, 핵군비경쟁정지, 핵군축 등의 8 개의 議題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란・이라크紛爭에서 化學武器의 대규모사용 등을 배경으로 하여 금년 1 月 파리에서 149 個國이 참가하여 화학무기금지에 관한 國際會議가 열려 1925 年 제네바議定書의 재확인, 현재 제네바軍縮會議에서 하고 있는 化學武器 全面禁止條約 작성작업의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 註 1) SALT I (第1次戰略武器制限交渉) : 1969年 11월부터 開始되어, 1972年 5월에 “ABM시스템의 制限에 관한 美蘇間條約”, “戰略攻擊武器의 制限에 관한 일련의 措置에 대한 美蘇間의 暫定協定” 및 關聯 議定書 등이 조인되고, ABM시스템의 設置場所·數, ABM 發射基地數의 제한이나 ICBM·SLBM의 發射基數, SSBN隻數의 上限설정 등이 定하여졌다. “戰略攻擊武器의 제한에 관한 일련의 措置에 대한 美蘇間의 暫定協定”은 1977年 10월에 失効하였으나 失効前의 同年 9月 美蘇 어느쪽도 同協定을 遵守할 것이라고 聲明하여 現在까지 有効한 것으로 간주된다.
- 2) 유럽 安全保障·協力會議最終文書(헬싱키宣言) : 1972年 11月 유럽 安全保障·協力會議(CSCE)의 예비교섭이, 그리고 1973年 7月에는 第1 라운드가 헬싱키에서 개최되고, 1975年 8月 CSCE참가 35個國의 頂上에 의해서 最終文書(헬싱키宣言)에 서명하였다. 本文書는 “유럽 安全保障에 관한 問題”(소위 第1 바스켓트), “經濟·科學·技術 및 環境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소위 第2 바스켓트), “人道 및 其他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소위 第3 바스켓트), “會議結果의 檢討措置” 등으로 되어 있다.
- 3) SALT II (第2次戰略武器制限交渉) : 1972年 11월부터 開始되어 1979年 6월에 戰略核運搬手段(ICBM, SLBM이나 戰略爆擊機 등)의 總數나 MIRV化된 이들 운반수단의 상한을 정한 “戰略攻擊武器의 制限에 관한 美蘇間條約” 및 同議定書가 서명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軍事개입을 계기로 하여 미국에서 批准을 못 얻게되자 발효하지 못하였다.
- 4) 소련 國家統計委員會發表, 프라우다, 1989年 1月 22日
- 5) 戰略核戰力の 특징 : ICBM은 일반적으로 명중율이 높고, 投射重量도 크며, 即時對應이 可能하나 배치장소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脆弱性이 있고, 또 SLBM은 生存能力이 높으며, 第2擊戰力으로 最適이기는 하나 명중율에는 難點이 있다. 戰略爆擊機는 발진후라도 目標任務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과 각종 核彈頭를 搭載하여 反復使用이 가능하다는 것 등 운용의 유연성이 있으나 防空시스템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脆弱性을 갖고 있다.

6) 이지스 시스템 (AEGIS SYSTEM)

最近의 航空威脅의 증대에 대응, 함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目標의 탐색 탐지로부터 정보처리 (目標追尾, 威脅의 평가, 무기의 선정 등), 攻擊에 이르기까지 高性能레이다 및 컴퓨터에 의해서 自動處理되는 對空미사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兵器 및 戰鬥시스템.

이 시스템에 의해서 卽 高能力, 同時多目標對處能力, 電子戰能力 등이 各別히 향상되고 있다.

7) 通常戰力 改善計劃 (CDI)

1984年 나토의 DPC (防衛計劃委員會)에서 나토 通常戰力の 缺陷分野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한 計劃 作業이 指示되어 1985年 DPC에 報告되어 승낙되었다. 具體的으로는 다음 7가지 분야에 관해서 改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彈藥備蓄의 촉진
- 인프라스트라추어基金 지출에 의한 航空機用 헬터의 건설
- 新規技術의 계속적 추구
- 航空機用 敵·我 識別裝置의 개발촉진
- 資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各種計劃 調整의 改善
- 長期計劃立案의 중시
- 그리스, 포르투갈 및 터키等の 近代化

8) 敵後續部隊 攻擊構想 (FOFA)

敵의 後續部隊가 최전선으로 增援되는 것을 最新式 通常兵器에 의한 後方 攻擊으로 신속하게 沮止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장 戰術核兵器를 使用하지 아니하고, 通常戰力으로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바르샤바의 공격을 격퇴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現在 有人飛行機를 제외하고는 後續部隊攻擊을 위한 적절한 目標捕捉 手段과 充分한 射程距離, 정밀 通常兵器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新技術에 의해 다음과 같은 兵器는 개발가능할 것이다.

- 精密誘導兵器

- 裝甲上部攻擊用的 誘導 散布彈
- 개량된 監視 · 目標捕捉 · 情報수집처리 배포시스템
- 航空機塔載 地上目標用 長距離레이더

9) 1983年의 國防相會議 決定

소위 몽떼페로決定. 캐나다의 몽떼페로에서 열린 나토의 NPG (核計劃그룹)會合에서의 決定. 이 會合에서 最少限의 필요 核抑止力의 유지를 위해 1,400 個의 核彈頭 削減과 核戰力의 近代化 方針이 명확하게 되었다.

第2章 日本周邊의 軍事情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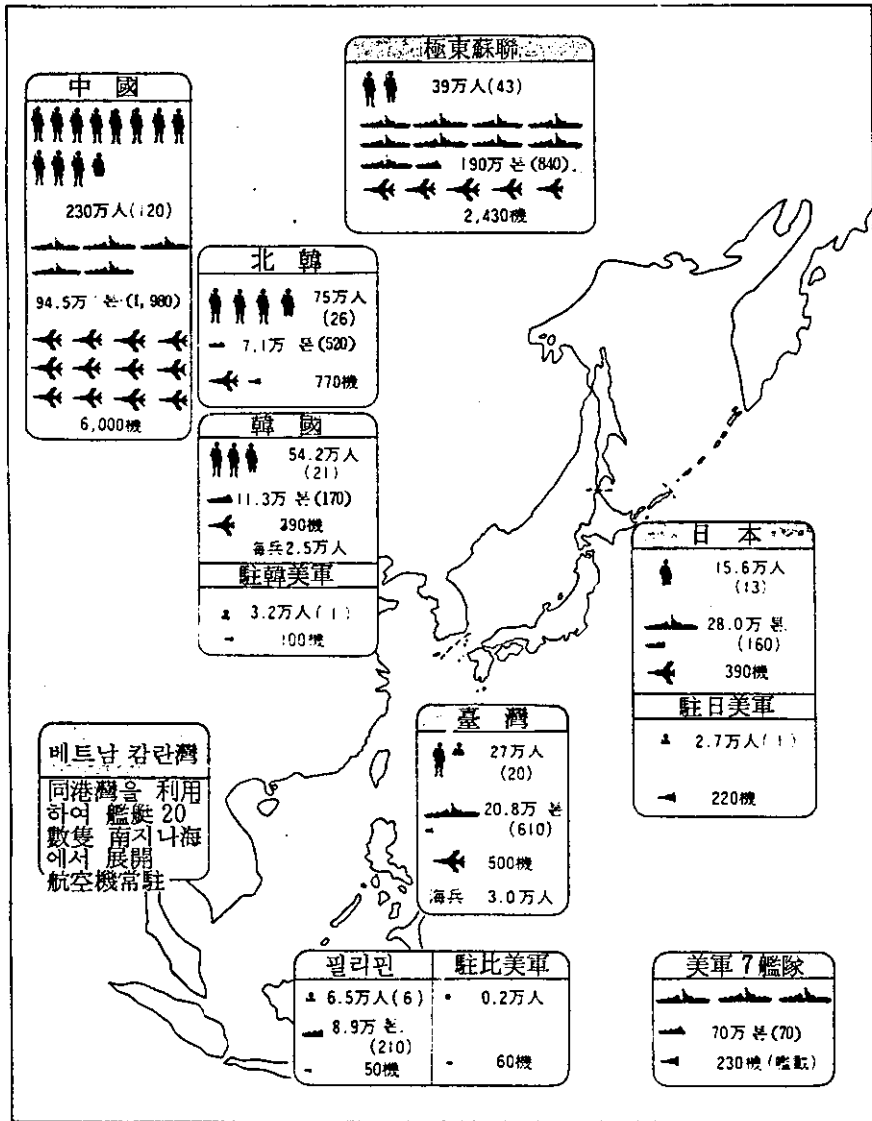
第1節 日本 주변지역의 特性

日本 周邊地域은 소련과 中國의 大陸, 감차카半島와 韓半島, 日本을 포함한 大小의 섬들, 이들에 에워싸인 東海, 오호쯔크海, 東支那海 등의 海域, 이들 海域으로 부터 태평양으로 통하는 海峽 등 갖가지 地形이 교차되어 있다. 日本은 아시아大陸의 東部に 근접한 태평양에 활(弓)모양으로 뻗친 列島이며, 아시아大陸으로부터 오호쯔크海, 東海, 東支那海 등을 거쳐 태평양으로 進出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상에 있어 戰略적으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日本周邊에는 大陸國家인 소련과 中國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美國이 자리잡고 있는 등 政治·經濟體制, 이데올로기, 歷史, 文化 등의 면에서 各各 特色을 갖는 나라들이 있다. 美國과 소련은 태평양을 끼고 軍事적으로 대치하고, 또 이 地域의 많은 나라들은 나토나 바르샤바와 같은 多國間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아니고, 美國이나 소련과 2國間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東西兩陣營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고 광대한 국토에 막대한 人口와 軍사력을 갖고 있는 中國이 있다. 이들 나라들은 복잡한 대립과 협조의 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日本周邊의 軍事情勢는 다음과 같은 軍事的對峙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圖 1-3〉 日本周邊의 兵力配置狀況 (概數)



註 1. 資料는 밀리타리·발란스 (1988~'89) 등에 의함 (日本은 昭和 63年 末實勢力)
 2. 各國駐屯 美軍兵力數는 육군 및 해병대의 중수를 나타냄.
 3. 캄란灣 소련軍의 兵力은 極東소련兵力에 포함된 수임.
 4. 作戰機에 있어 소련의 極東, 중국 및 각국주둔미군은 해병과 海兵隊機를 포함함.
 5. ()는 師團數 또는 艦艇의 隻數를 나타냄.

1. 美蘇의 군사적 對峙

아시아대륙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 소련은 대규모의 陸·海·空戰力을 展開하고, 美國은 海·空部隊을 主體로 하는 戰力을 展開하고 있다. 美·蘇兩國은 日本 등의 島嶼部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에서 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다. 소련은 소련極東地域의 重要性 增大, 미국과 中國에의 對峙, 발전하는 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1960년대중반부터 계속 陸·海·空軍力 全般에 걸쳐 增強을 해 왔다. 말하자면 近年 소련은 沿海地域과 오후쓰크海方面 등에 重點을 둔 戰力의 強化를 해 온 結果, 日本에 近접한 地域에서 美蘇兩國이 強力하게 對峙하는 상황이 되었다.

2. 中蘇國境에서의 軍事的 對峙

긴 地上國境을 끼고 있는 中國과 소련은 1960年代 對立의 격화를 계기로 國境地域에 地上軍 중심의 막대한 軍事力을 배치하여 對峙해 오고 있다.

1989年5月, 30年만에 中蘇首腦會談이 개최되어, 거기서 양국은 “中蘇 國境地域의 軍事力을 兩國의 정상적인 善隣關係에 알맞는 최저 수준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에 동의하고, 또 國境地域에서 신뢰를 강화하고, 安定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에 同意” 하는 내용의 共同커뮤니케를 발표한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中·蘇간에는 관계 개선이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동향에 따라서 中蘇 國境에서의 軍事的 對峙狀況에도 변화가 생길 可能性이 있다.

3.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緊張

韓半島에는 소련 지원을 받는 北韓의 攻擊으로 발발된 한국전쟁이래 南·北韓間에는 軍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韓半島는 韓國과 北韓이 合計 약 120萬名의 地上軍이 비무장지대(DMZ)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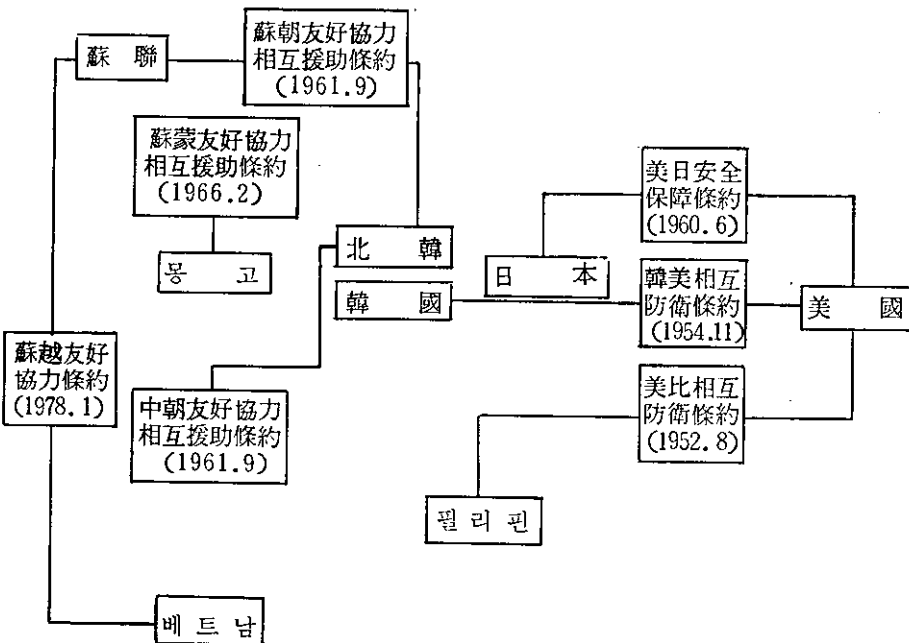
이에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美·中·蘇 3個國의 힘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4. 中越國境에서의 軍事的 對峙

中國과 베트남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軍事介入을 계기로 1979年 2~3月에 軍事衝突을 한 以來 中國軍 약 20 個師團을 基幹으로 하는 약 30 萬名이 國境을 끼고 군사적 대치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中蘇關係의 개선을 배경으로 캄보디아問題에 관한 中越間의 對話 등이 있어 國境에서의 軍事的 對峙에는 긴장완화의 전망이 보이나 캄보디아 問題 以外에 南沙群島領有問題 등도 있어 양국간에는 여전히 緊張이 계속되고 있다.

<圖 1-4> 日本周邊의 集團安全保障條約들



第2節 極東소련軍의 軍事態勢와 動向

1. 전반적인 軍事態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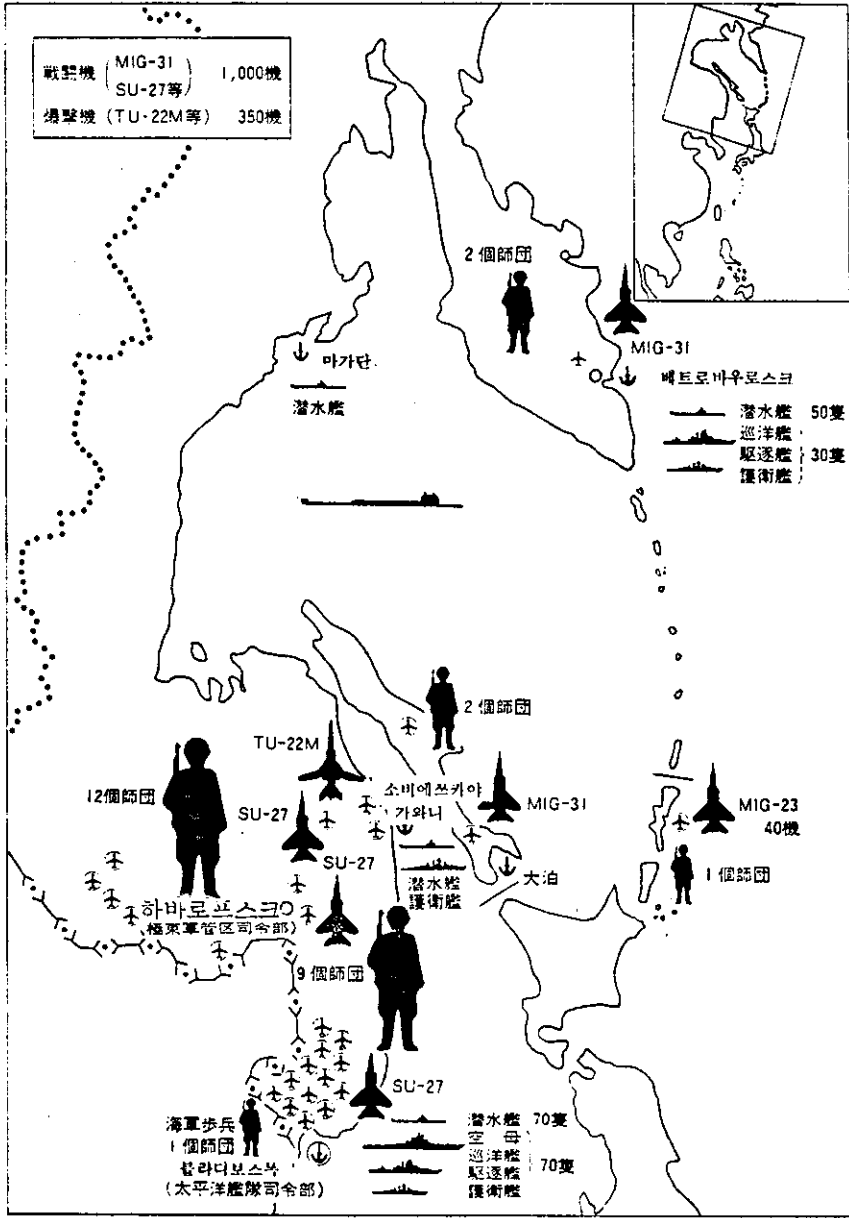
소련은 1960年代 격화된 중소대립을 계기로 極東地域에서 地上軍 중심의 현저한 軍事力 增強을 開始하고, 그 후에도 아시아·太平洋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로 海·空軍力の 현저한 증강을 하는 등 계속해서 質量에서 軍事力을 증강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소련極東軍은 核戰力 및 通常戰力에서 소련全體의 1/4~1/3에 상당하는 戰力을 보유하게 되었다.

소련極東軍의 배치 전개상황을 考察해보면 1978年의 北方領土에의 地上軍再配置에서 보는 바와 같이 沿海地域, 사할린, 오흐츠크海, 캄차카半島 등 日本에 근접한 地域에 중점적으로 배치 전개되어 있다. 그 結果 이 地域에는 소련極東軍의 地上·航空戰力 전체중 師團의 約6割, 戰鬥機의 約6割(第4世代 戰鬥機는 약8할), 폭격기의 약8할이 배치되는 외에 소련 최대의 艦隊인 太平洋艦隊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주요 거점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와같이 오늘날 이 地域에 소련極東軍의 태반이 배치 전개되어 있다.

소련極東軍의 증강에 따라 日本周邊에서 함정과 군용기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되었다.

소련은 極東方面에 대해서도 최근 각종의 軍備管理·軍縮提案이나 戰力의 一方的 削減 등의 발표를 하고 있다. 금년 5月 中國을 방문한 고르바초프書記長은 今後 2個年內에 兵力 12萬名, 師團 12個, 航空聯隊 11個, 함정 16隻 등의 전력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

〈圖 1-5〉 日本에 近접한 지역의 蘇聯軍 配置



이 發表는 1988年12月 유엔에서의 一方的 戰力削減發表에 따라 極東方面에 대해서도 약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內容은 여전히 애매하고 불분명한 점이 많으며, 총체적으로 막연한 것이다. 예컨대, 이 발표에서는 兵力의 內譯, 對象師團의 配置狀況, 地上 및 航空과 海上戰力の 구체적 내용 등은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유럽方面의 일방적 삭감발표에서 언급되고 있는 戰車, 砲, 作戰機 등의 數値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艦艇에 대해서는 艦種, 톤수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 戰力削減 등을 실시할 경우 2年後의 소련 極東軍의 戰力規模, 配置 展開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後述하는 바와 같이 1985年에 고르바초프政權이 탄생한 후에도 老朽裝備의 폐기 등의 부분적 삭감이 이루어지는 反面에 SLCM塔載原子力潛水艦이나 신형구축함의 증강, 다수의 第4世代 戰鬥機의 추가배치 등 海·空을 중심으로한 장비의 질적 강화가 계속되어 전반적인 戰力の 재편·합리화 및 근대화가 촉진되고 있다.

여러차례 발표한 바와 같이 削減이 실시되었다 해도 極東方面에서 소련軍의 軍事的 壓力이 근본적으로 감소한다는 데에는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老朽裝備의 폐기 등으로 소련 極東軍의 재편·합리화가 한층 촉진되어 戰力の 근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日本周邊에서 활발한 활동이 계속되어 온 結果, 최근에는 오호츠크海方面의 함대 연습이나 日本 레이다 싸이드에 대한 공격훈련의 협의가 있는 飛行 등 日本에 근접한 海空域에서 함정이나 軍用機의 실전적인 活動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소련 極東軍의 動向은 日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일 뿐 아니라 이 地域의 軍事情勢를 험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1) 戰略核戰力에 있어서는 소련의 모든 戰略미사일의 1/4~1/3에 해당하는 ICBM이나 SLBM 등이 極東地域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BM과 戰略爆擊機가 시베리아鐵道변을 中心으로, 그리고 SLBM을 搭載한 델타Ⅲ級 탄도미사일탐재 原子力潛水艦 등이 오호츠크海를 中心으로한 海域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ICBM이나 SLBM 등은 SS-18, SS-N-18 등으로 근대화되고 있다. 그리고 핵탄두장비의 空中發射 巡航미사일 AS-15를 탐재할 수 있는 新型의 TU-95 배어H 폭격기도 배치되어 있다.

(2) 非戰略核戰力에 있어서는 백·파이어 등의 中距離폭격기, 해양·공중발사 巡航미사일, 戰術核 등의 다양한 核戰力이 배치되어 있다. 백·파이어는 약 4,000km의 행동반경을 갖는 폭격기로서, AS-4 空對地(艦)미사일도 탐재 가능하며 현재 바이칼湖 서쪽과 사할린對岸地域에 약 85機 배치되어 이 地域의 地上目標나 日本周邊海域의 씨·레인 등에 대한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고 있다. 그밖에 地上軍部隊에는 핵장비 가능한 후로그, SS-1 스킵 등 단거리彈道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SS-N-21 해양발사 巡航미사일을 탐재할 수 있는 아크라級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이 배치되었다. 한편 SS-20 등의 INF미사일은 INF條約에 따라 廢棄가 進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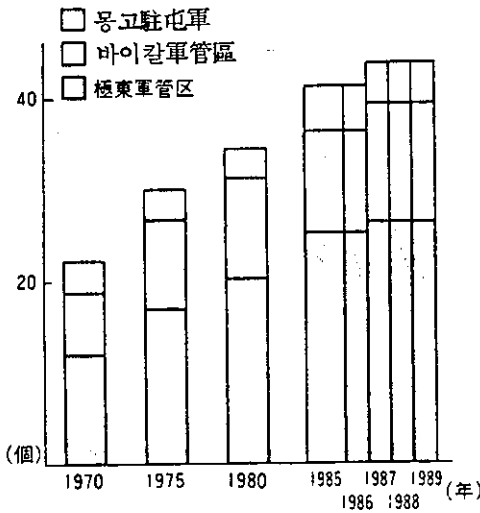
(3) 地上戰力은 1965년 이래 確實히 증강되어 현재는 소련의 全地上兵力 212個師團, 약 200萬名中 43個師團 약 39萬名이 極東地域(大體로 바이칼湖 以東)에 배치되어 있다.

또 質적인 면에서도 T-72 戰車, 장갑보병전투차, 지대지(공)미사일, 다연발로켓 등이 증강되어 火力, 機動力, 防禦力, 戰場防空能力外에 化學戰수행능력까지 향상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MI-24 등의 武裝헬리콥터 1個聯隊가 사할린에 배치되어 對地攻擊能力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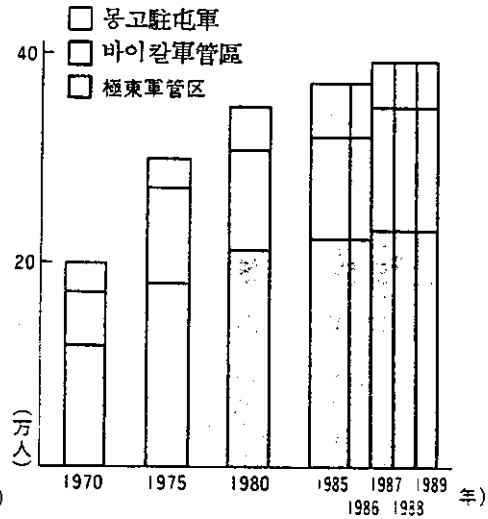
(4) 海上戰力은 오늘날 소련의 모든 主要艦艇 약 285隻과 潛水艦 약

140隻(그중 原子力 잠수함 약 75隻)의 약 100萬톤을 갖는 소련 최대의 太平洋艦隊가 전개되고 있다.²⁾

〈圖 I-6〉 極東소련地上兵력의推移(師團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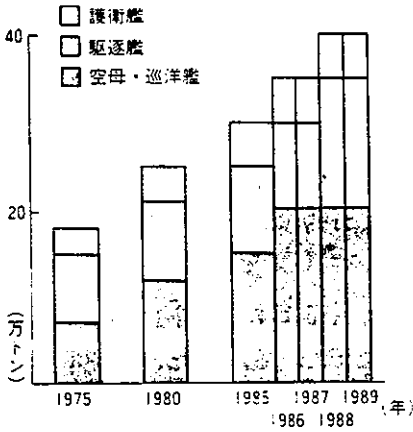
〈圖 I-7〉 極東소련地上兵력의推移(兵員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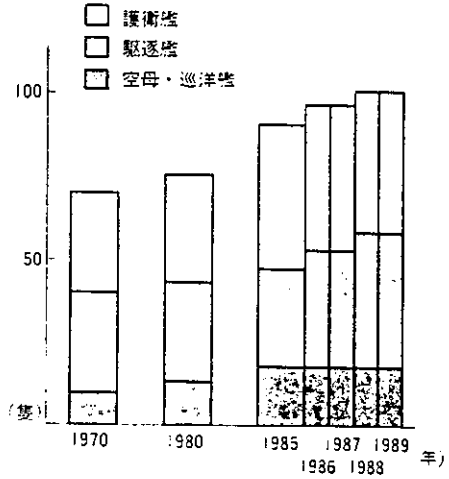
近年에는 소브레멘누이級이나 우다로이級 구축함의 증강에 의한 對潛・對艦・對空能力의 향상, 射程 3,000 km의 해양발사 巡航미사일 SS-N-21을 탑재한 아그라級 공격형 原子力潛水艦의 증강에 의한 對地・對艦 공격능력의 향상 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太平洋艦隊는 와인・로고프級 등 揚陸艦艇을 배치할 뿐 아니라 소련유일의 海兵師團을 갖고 그의 裝備를 현대화하는 등 수륙양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밖에 軍用으로 전용가능한 라쉬船³⁾이나 룰 톨船⁴⁾ 등의 商船이 증강되고 있다.

또한 작년 소련은 지난 5年間に 太平洋艦隊를 57隻 감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老朽艦이 아니면 掃海艇 등 소형함정이기 때문에 同艦隊의 실질적 戰力を 감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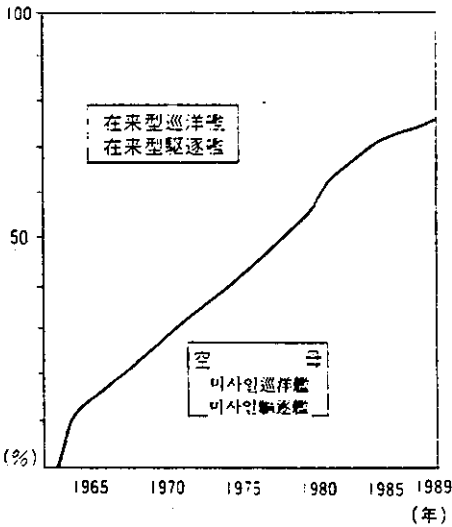
〈圖1-8〉 소련極東 海上兵力의 推移(主要艦艇噸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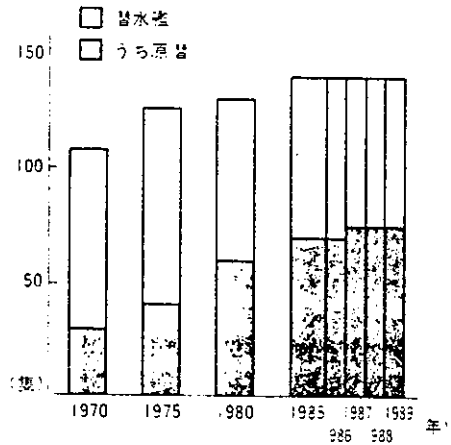
〈圖1-9〉 소련極東 海上兵力의 推移(主要艦艇隻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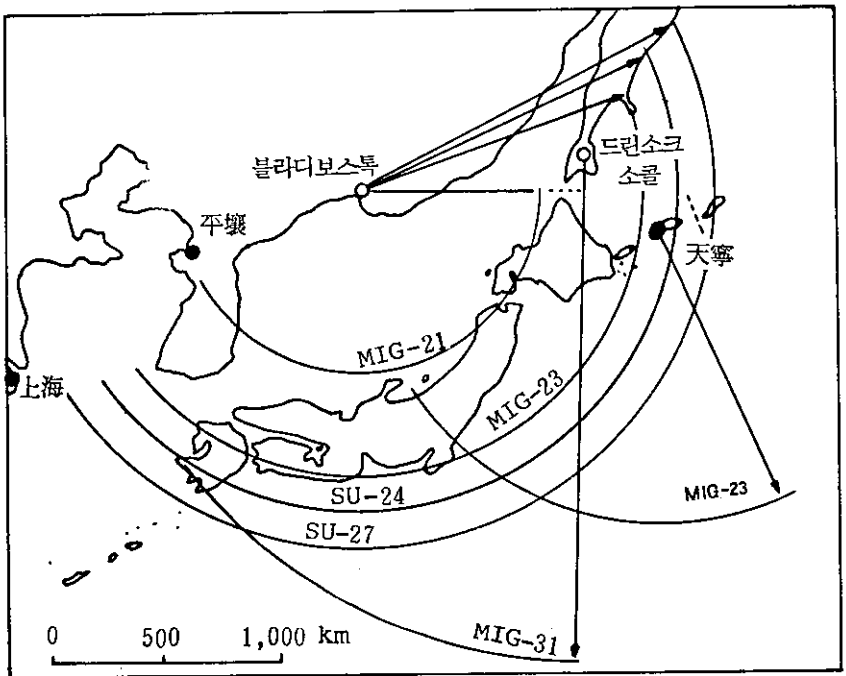
〈圖1-10〉 소련極東 艦艇近代化推 移(主要 水上戰用艦艇의 미사일裝備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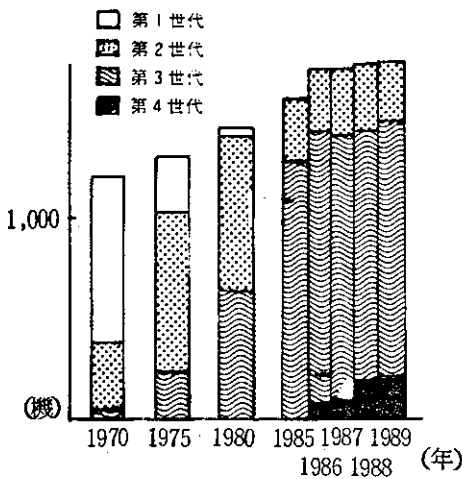
〈圖1-11〉 소련極東 海上兵力의 推移(潜水艦隻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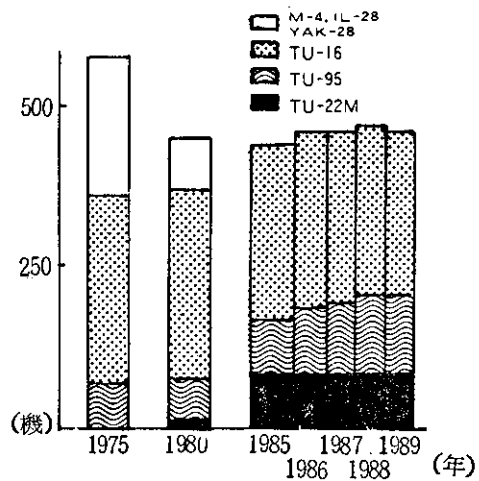
〈圖 1-12〉 소련戰闘機의 行動半徑(例)



〈圖 1-13〉 소련極東 航空兵力의 추이(戰闘機)



〈圖 1-14〉 소련極東 航空兵力의 추이(爆撃機)



(5) 航空戰力은 착실히 증강되고 있다. 現在 소련의 모든 作戰機의 1/4에 해당하는 약 2,430機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戰鬥機의 약 7割이 MIG-23/27 후로가, SU-24 첸사 등 第3世代⁵⁾ 航空機, 約 1割이 후로그프트, SU-27 프랑커 등 第4世代 航空機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속 第4世代 航空機가 증강되고 있다. 소련 전투기는 世代가 바뀔에 따라 第1-12圖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반적으로 行動半徑이 증대하고 탑재능력도 향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第4世代 戰鬥機의 증강에 따라 오호츠크해나 東海 등의 方面에 대한 공격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더우기 최근 소련은 太平洋에 있는 航空機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기 위해 신형 OTH레이더⁶⁾를 극동에서 시험 운용중에 있다.

2. 北方領土의 소련軍

소련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日本의 고유영토인 北方領土中國後・擇捉 兩島와 色丹島에 1978년 이래 地上軍部隊를 재배치하고 있으며, 現在 그 규모는 師團規模로 추정된다. 이 地域들에는 소련軍 師團이 통상보유하는 戰車, 裝甲車, 各種火砲나 대공미사일, 對地攻擊用 武裝헬리콥터 M1-24 하인드 등과 그 밖에 소련軍 師團이 통상보유하지 않는 장거리의 130 mm 加農砲가 배치되고 훈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擇捉島 天寧飛行場에는 1983년에 배치가 개시된 MIG-23 후록 戰鬥機가 현재 約 40機가 配置되어 있다.

소련이 北方領土에 이와같은 軍事力을 배치・전개하고 있는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즉, 군사적으로는 北方領土가 오호츠크해로의 접근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주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同 海域에 전개되어 있는 텔타級들이 SSBN의 殘存性 確保 등을 목적으로한 오호츠크해의 軍事的 聖域化, 同 海域의 대부분이 소련領土임을 이 한 사

실상의 內海化를 목표로한 前進據點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北方領土를 군사력에 의해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를 밝히면서 不法占據라는 기정사실을 부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3. 日本周邊에서의 演習・行動

日本周邊에서는 전반적으로 연습・행동이 여전히 활발하며, 특히 합정이나 군용기의 활동이 實戰的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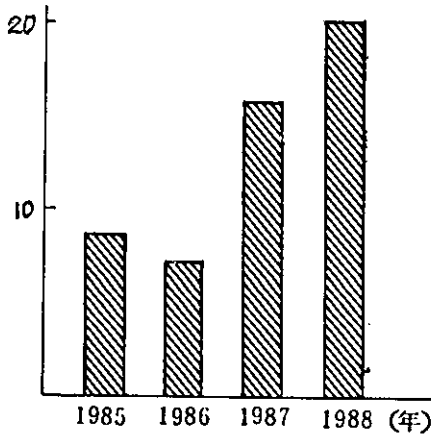
地上軍은 대규모 연습이 1987년 이래 증가하고 있으며(第1-15圖參照), 결국 사할린이나 北方領土 주변에서는 오후쓰크海方面 戰力の 강화에 따라 상륙연습을 포함한 대규모의 綜合演習이 실시되고 있다.

艦艇에 있어서 작년 4月 키에프級 航母, 칼라級 巡洋艦을 포함한 6척이 輪島沿岸을 항행하면서 연습을 실시하였다는 것, 작년 7月 키에프級 원자력 미사일 巡洋艦 “푸른제”, 칼라級 미사일 巡洋艦을 포함한 9隻이 宗谷海峽을 통과하여 오후쓰크海에로 진출하여 對酒, 對空, 對艦 등의 훈련을 포함한 연습을 하였다는 것, 작년 10月 킨다級 미사일 巡洋艦, 그레스타II級 미사일 巡洋艦, 스펀돌프級 輕巡洋艦 등 5척이 札文島北西를 항행하면서 연습을 실시하였다는 것 등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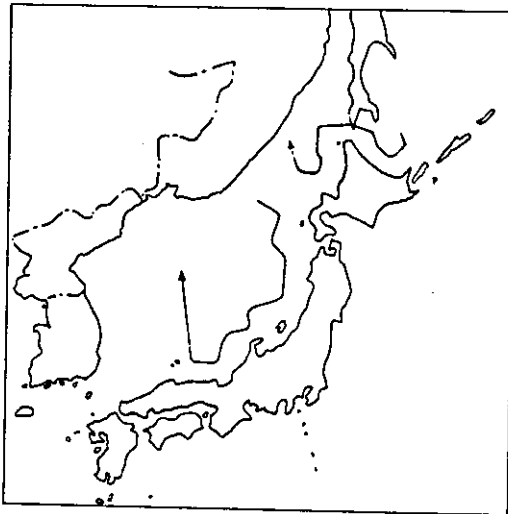
1987年 오키나와 영공침범에 이어, 금년 4月 북해도 札文島沿岸의 영공침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련 軍用機의 행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이번의 침범사례는 札文島附近에서 深夜 실전 훈련을 되풀이 하던 끝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航空自衛隊의 레이더 싸이드에 대한 공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련 軍用機의 비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예년에 없이 北海道의 오후쓰크海쪽의 레이더 싸이드에 대한 비행이 포함되어 있다(第1-16圖參照). 또한 MIG-31이나 SU-27 등의 第4世代航空機의 증강에 따라 그의 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최근에는 太平洋上에까지 진출하는 장거리요격훈련과 空中警戒管制機

메인스타가 合同 공격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소련軍用機의 행동에 대해서는 결국 實戰的이고 攻擊的인 활동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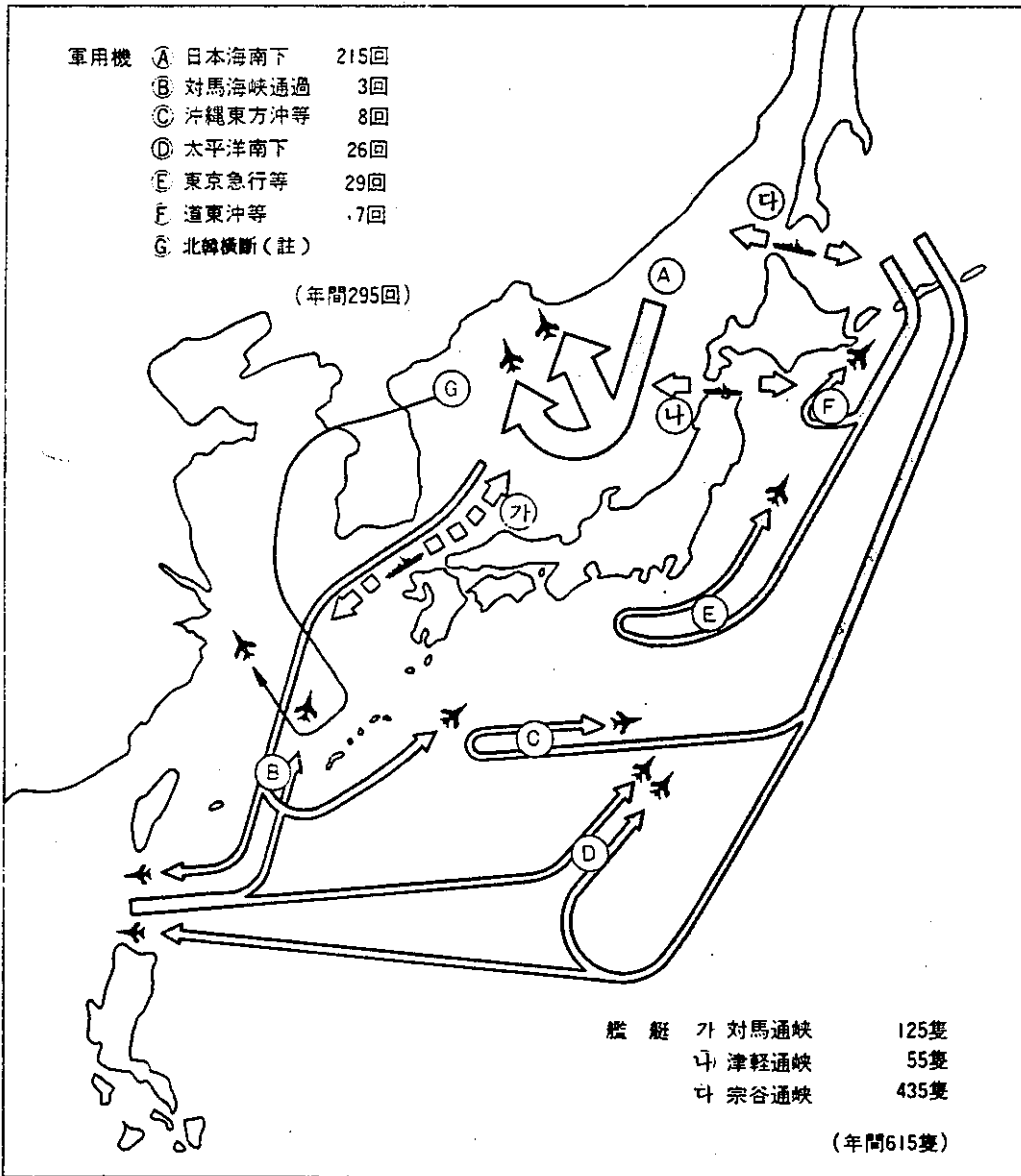
〈圖 1-15〉 소련地上軍의 대규모 演習·訓練回數의 추이



〈圖 1-16〉 레이더 사이트에 대한 攻擊訓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련軍用機 航跡의 例



〈圖 1-17〉 日本周邊에서의 소련艦艇・軍用機の 行動概要



註 1) 척수 및 回數는 과거 5년간의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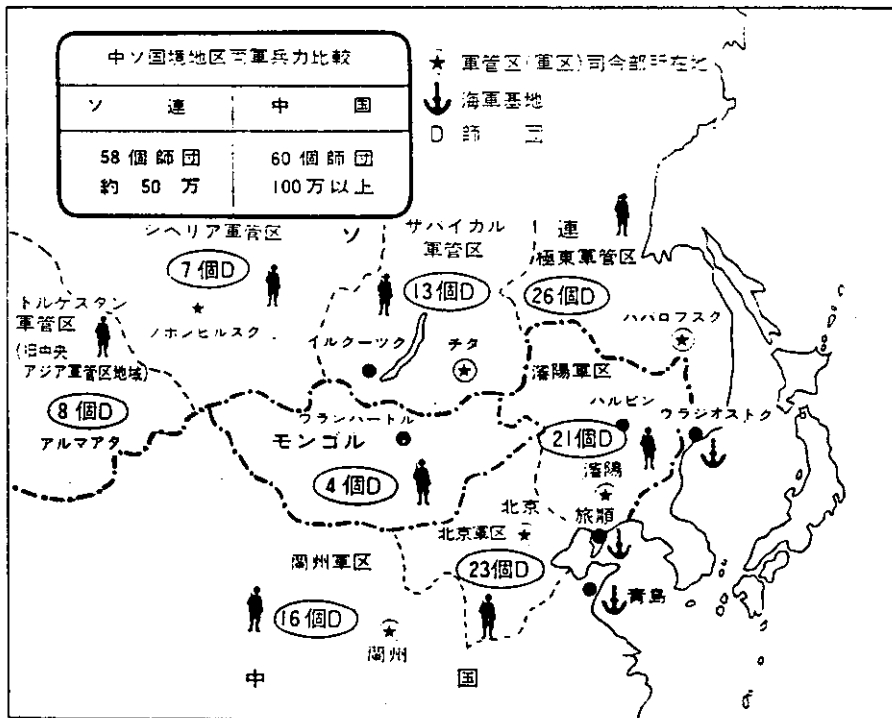
2) ㉢ 북한항단에 대해서는 1985년에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년평균 비행回數는 8회임.

4. 中蘇國境의 配置狀況

中蘇間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지난 5月, 30年만에 中蘇首腦會談이 열린後, 경제 文化분야에서의 交流 進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근 에 關係 개선의 움직임이 새삼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會談時에 소련은 蒙古駐屯軍의 75% 철수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소련 “極東部”의 병력 삭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中蘇國境부근의 병력배치상황을 보면 '87年 1個師團을 포함한 一部 소련軍兵力이 蒙古領으로부터 그에 隣接한 軍管區에로의 이동 및 人員削減, 組織, 機構의 간소화에 따른 削減以外에는 현재로서는 큰 變化를 찾아볼 수 없으며, 兩國의 기본적인 軍事的對峙는 여전히

<圖 1-18> 中 소國境 兵力配置



註) 중래의 中央아시아 軍管區는 트로케스탄군관구에 합병흡수됨.

계속되고 있다.

대치하는 中蘇 兩國軍의 戰力밸런스는 <圖18-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兵力數는 中國軍이 소련軍에 비해 약 2 배의 勢力이기는 하나, 火力, 機動力, 對航空戰力 등에 있어서는 소련軍이 우세하여, 종합적으로는 소련軍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陸軍을 中心으로 하는 中國軍은 소련極東軍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第 3 節 太平洋地域의 美軍 軍事態勢와 動向

1. 전반적인 軍事態勢

태평양국가의 側面을 이루고 있는 美國은 從來부터 日本을 위시한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해 왔다. 근년에는 東아시아 및 太平洋地域은 이미 유럽보다도 美國에게는 최대의 무역상대지역으로 되는등 이 地域의 평화와 안정이 美國으로서는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

美國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陸軍·海軍·空軍·海兵隊의 綜合軍인 太平洋軍과 戰略空軍 部隊 등을 배치함과 동시에 日本을 비롯한 몇 개의 地域國家들과 安全保障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이 地域의 紛爭을 억제하고 美國의 同盟國 利益을 지키는 政策을 취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유사시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對應하고 美國 抑止力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평양군에 하의 해·공군부대를 주체로 하는 戰力의 一部를 西太平洋이나 印度洋에 前方展開시킴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戰力을 하와이나 美本土로부터 增援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美太平洋軍은 하와이에 司令部를 두고, 태평양과 印度洋을 담당하고 있다. 陸軍은 2개사단 약 5 만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韓國과 하와이에

各各 1個師團이 배치되어 있다.

海軍은 하와이에 司令部를 둔 태평양함대하에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담당하는 第7艦隊와 東太平洋이나 베링海 등을 담당하는 第3艦隊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兩艦隊는 주요함정 약180척, 약170萬톤을 갖고 美本土의 西海岸, 하와이, 필리핀, 日本, 데이고, 가르시아, 구암 등의 기지를 주요거점으로 하여 전개되어 있다.

해병대는 2個海兵 機動展開部隊 약 9萬名, 작전기 약 270機로 구성되어 美本土의 서해안과 日本에 各各 1個海兵 機動展開部隊가 배치되고 있다.

空軍은 第5空軍이 日本, 第7空軍이 韓國, 第13空軍이 필리핀에 各各 배치되고 있으며 작전기 약 330機를 보유하고 있다.

2. 日本周邊의 軍事態勢

(1) 配置 및 展開狀況

陸軍은 韓國에 제 2보병사단, 제 19支援코만드 등 약 3萬1千名, 日本에 第9軍團司令部要員 약 2,100名등 이 地域에 合計約 3萬4千名을 배치하고 있다.

海軍은 日本, 필리핀, 구암을 主要거점으로 하고있으며, 그 戰力은 航母 3隻을 포함해서 함정 약 70隻, 작전기 약 260機, 병력 약 4萬名등이다. 작전부대인 第7艦隊는 서태평양이나 인도양에 전개되고 있는 海軍과 海兵隊의 대부분을 예하에 두고, 平時에는 존재과시의 維持, 유사시에 海上교통의 안전확보, 沿岸地域에 대한 航空攻撃, 強襲上陸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空軍은 第5空軍이 F-15, F-16을 보유하고 있는 2個航空團을 日本에, 第7空軍이 F-4, F-16, A-10을 보유하는 2個航空團을 韓國에, 第13空軍이 F-4를 보유한 1個航空團을 필리핀에 各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戰略空軍이 B-52, KC-135를 보유한 1個

航空團을 구암島에, KC-135를 보유한 1個航空團을 日本에 각각 배치하고 있다. 이들의 空軍勢力은 약 310機에다 兵力은 約 4萬 1千名이다.

해병대는 日本에 제 3해병사단과 F/A-18, A-6 등을 보유한 第 1海兵航空團을 배치하고 海上병력과 필리핀駐屯兵力을 포함해 約 2萬 9千名에 作戰機 約 60機를 전개시키고 있다.

(2) 最近의 動向

美國은 최근 소련極東軍의 증강과 그의 활동의 활발화에 對應해서 戰力の 증강과 근대화, 戰力の 유연한 운용을 통해서 이 地域의 軍事 밸런스를 유지하고 美國 抑止力의 신뢰성 유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日本周邊 美軍의 최근동향은 다음과 같다.

陸軍에서는 駐韓美軍의 AH-1S 무장헬리콥터의 증강, 駐韓美第 2步兵 師團의 화력, 기동력 등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海軍에서는 니미 쓰級 原子力航母, 타이콘데로가級 이지스순양함이 배치되고, 또 航母 미드웨이 的 塔載機가 F/A-18로 갱신되었다. 空軍에서는 三澤에 F-16 비행대 2個가 배치되고, 또 駐韓美軍의 F-4가 F-16으로 갱신중이다. 海兵隊는 岩國에 F/A-18 비행대 2個가 배치되고 또 AV-8 B해리어의 비행대가 배치 되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第 3海兵 機動展開部隊에 개량된 호크 미사일 및 輕裝甲步兵戰鬪車가 배치되는 등 화력과 기동력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주장비 등을 적 재한 事前集積船이 서태평양에도 배치되어 있다.

第 4 節 中國의 軍事力

1. 개 관

中國은 최근 중소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

적으로 소련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여 強力한 화력 및 기동력을 갖는 소련軍에 대항하기 위해 종래의 광대한 國土와 막대한 人口를 이용한 게릴라戰주체의 “人民戰爭”의 형태로 부터 各軍·兵種의 協同運用에 따른 통합작전능력과 적응능력을 주시하는 정규전 주체의 형태로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中國은 대폭적인 병력삭감과 조직·기구의 간소화에 의한 편성·運用의 效率化, 장비의 근대화 및 연구개발의 강화, 幹部의 低齡化와 幹部教育의 충실화, 各軍種·兵種間의 협동훈련의 강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작년에는 23年만에 階級制度를 부활시켰다.

또 이와같은 軍近代化·정규화의 노력과 병행해서 예비병력에 대해서도 整備가 진행되고 있으며, 豫備役師團의 整備나 大學 등의 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義務化하는 등 유사시의 동원태세 확립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비의 근대화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西方을 中心으로 한 外國으로부터 기술도입을 도모하는 한편 第3世界에로의 武器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당면한 경제건설이 最重要課題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國防費가 한정되어 있어, 장비의 근대화등 급속한 近代化는 곤란한 狀況에 있다.

더우기 금년 6月 中國當局이 北京에서 학생·시민의 민주화요구운동을 무력으로 제압한 것을 계기로 各國으로부터 對中國 批判의 소리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서방주요국가가 2國間 關係 및 기타 고위급접촉을 정지하는 등 中國의 對外關係에 여러가지 惡影響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건설이나 장비의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5月の 중소首腦會談에서 國境地域 軍事力을 兩國의 정상적인 선린관계에 알맞는 최저수준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중소關係의 개선이 中國軍의 근대화에 주는 영향에 대해

금후에도 계속 주목되고 있다.

2. 軍事態勢

中國의 군사력은 核戰力外에 陸·海·空軍으로 이루어지는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부대 및 民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核戰力에서는 抑止力を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發言權 획득을 위해 195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인 개발노력을 계속해 왔다. 현재 소련유럽부나 美本土를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보유하는 외에 소련극동지역이나 아시아地域을 사정거리에 두는 IRBM(中距離彈道미사일)과 MRBM(準中距離彈道미사일)을 합해서 100기 이상, 中距離爆擊機(TU-16)를 약 120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SLBM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는 SSBN으로부터의 水中發射實驗에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또한 戰術核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등 核戰力の 충실과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다.

(2) 陸軍은 總兵力이 約 230萬名으로 규모에 있어서 세계최대이지만 총체적인 화력과 기동력은 부족하다. 최근에는 소수정예화로 軍의 근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0萬名이상의 兵力을 감축하고 종래의 11個軍區를 7個軍區로 재편성하였다. 또한 統合作戰能力的 향상을 위해 보병사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軍(軍團)을 步兵,砲兵,裝甲兵 등의 各兵種을 중합하여 “集團軍”으로 개편하고 있다.

(3) 海軍은 北海, 東海, 南海의 3個함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함정 약 1,980척(그중 잠수함 약 110척)에 約 94萬 5千톤, 작전기 약 89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함정의 대부분은 구식이고 또 소형이기는 하나 헬리콥터 탑재가능으로 보이는 護衛艦의 건조, 新型미사일搭載등 근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서태평양에서 海軍演習을 하는 외에도 南沙群島와 西沙群島에서

의 활동거점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이들 海域에서의 존재를 강화하는 등 海洋에서의 활동범위를 확대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空軍은 作戰機를 약 5,160機 보유하고 있으나 소련의 第1, 第2 世代 항공기를 모델로한 구세대에 속하는 것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F-8 등의 新型機의 개발외에 搭載電子機器의 갱신으로 性能의 向上에 노력하는 등 航空機를 근대화하고 있다.

3. 美·中關係

1979年의 美·中國교정상화이후 兩國은 臺灣問題를 안고 있으면서도 관계발전에 노력해 왔으며, 今年 1월에 취임한 부시美大統領이 다음달 中國을 방문하는 등 兩國間의 교류는 전반적으로 확대해 왔다.

軍事關係에서도 美國은 防衛的이거나 美國과 그의 同盟國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일정한 무기와 기술지원을 中國에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魚雷와 CH-47 D헬리콥터의 매각이 성립되는 등 中國軍의 近代化에 대한 美國의 協力이 추진되었다. 또 작년 9月の 미국방장관의 訪中, 동년 11月の 中國공군대표단의 訪美, 금년 4月の 中國해군연습함의 하와이기항, 금년 5月の 미해군함정의 上海寄港 등 교류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금년 6月 中國當局이 北京에서 學生 市民의 민주화요구운동을 무력으로 제압한 데 대하여 美國은 유감을 나타내고 中國으로의 무기수출 정지, 美中 軍指導者間의 교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금후의 美中關係는 유동적 요소가 짊어져 가고 있다.

第5節 韓半島의 軍事情勢

1. 概 觀

韓半島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의 유지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全域의 平和와 安定에 重要하다. 이러한 韓半島에 韓國과 北韓의 약 120萬名의 地上軍이 非武裝地帶(DMZ)를 사이에 두고 對峙하는 등 軍事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韓國은 근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가운데 사상최다의 國家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작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내고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社會主義諸國과 관계를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다. 한편 北韓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부진상태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가운데 韓國과 北韓은 작년 8月 약 2년 8개월만에 대화를 재개하였지만 雙方의 意圖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現在 對話의 진전은 없으며, 40년이상 지속된 分斷은 兩者의 사이를 크게 멀어지게 하였다.

2. 北 韓

(1) 北韓의 軍事力

北韓은 1962년 이래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소위 4대군사노선에 따라 軍事力을 증강하여 왔다. 특히 1970년대 이래 軍事力의 증강에는 현저한 것이 있다. 현재 北韓은 계속 GDP의 약 20~25%를 투입하여 軍事力을 증강 또는 근대화하고 있으며, 航空機나 미사일의 國產能力도 갖게 되었다.

北韓軍의 勢力을 보면 陸軍이 戰車 約 3,500 대를 포함해서 26 個師團 約 75 萬名, 海軍이 잠수함 21 척, 미사일高速艇 32 척을 주축으로 약 250 척에 약 7 만 1 천톤, 空軍이 작전기 약 770 기를 갖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化學武器도 보유하고 있다.

陸軍은 1970 년대 후반이후 현저하게 증강되어 兵力數에서는 韓國병력수의 약 1.4 배에 달한다. 그리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機動力과 火力에서 韓國에 비해 양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그 主力은 DMZ 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또 최근에는 일부부대의 機械化, 機甲化에로의 개편을 하여 전방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海軍은 總톤수나 구축함 등의 척수에 있어서 韓國보다 열세이며, 또 運用海域이 동서로 二分되어 있어서 運用의 유연성을 잃는 면도 있다. 그러나 잠수함, 미사일高速艇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륙용 주정, 초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沿岸에서의 작전행동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다.

空軍은 작전기數에서 韓國에 대해 우위에 있으나 대개는 구형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신예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다. 그 밖에 다수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거의가 低空侵入에 적합한機種들이다. 그리고 韓國軍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型의 美製헬리콥터가 제 3 국을 경유하여 다수 도입되고 있다. 北韓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정규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陸軍과 특수부대의 증강에 상응해서 海軍은 미제트형을 포함한 潛水艦을, 空軍은 소형수송기나 헬리콥터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한 準軍隊인 勞農赤衛隊도 韓國의 향토예비군에 비해 장비수준이나 訓練강도가 매우 높다.

(2) 北韓과 소련의 軍事協力

北韓은 최근 소련과의 군사관계를 긴밀화시키고 있으며, 소련으로부터

터 MIG-23, 對地攻擊能力이 우수한 SU-25, 제공능력이 훌륭한 MIG-29 등의 전투기, SA-5로 보이는 地對空미사일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소련군용기의 동지나해 진출과 베트남 캄란灣 왕복비행을 위한 北韓上空通過를 허용하고 있다. 금년 1월에 지금까지 확인된 최대규모의 소련軍用機가 北韓상공을 통과하였다.

軍事 交流로는 각종기념일에 軍事代表團이 상호방문 하는 외에 작년 5월에 소련 미사일驅逐艦 2척의 元山訪問, 88年 7월에 北韓艦艇의 블라디보스토크訪問이 있었다. 그리고 88年 10월에는 東海에서 1986年이래 세번째로 兩國海軍의 합동연습이 실시된 바 있다.

3. 韓 國

韓國은 전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총 1,029萬名이 사는 首都 서울이 DMZ로부터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긴 海岸線과 많은 島嶼群을 갖고 있어서 방위상의 약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韓國은 北韓의 군사력증강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계속 국방에 노력을 기울여 매년 GNP의 약 5~6%를 국방비로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국방력강화에 눈부신 진전을 이루었다.

陸軍은 병력 21個師團 약 54萬名으로 그 대부분이 DMZ와 서울사이에서 여러개의 前線으로 배치되어 서울을 방위하고 있다. 그리고 AH-1S武裝헬리콥터 등을 美國으로부터 구입할 뿐 아니라 최초로 國產 88式戰車의 배치를 개시하는 등 화력과 기동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海軍은 해병대 2개사단과 1개여단을 합해서 약 170척, 약 11만톤의 艦艇을 보유하고 있다. 함정의 주력은 驅逐艦이지만 미사일高速艇도 증강하고 있다.

空軍은 F-4, F-5를 主力으로 하고 있으며, 1986年부터 도입하고 있는 F-16을 포함해 약 390기의 작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

고 奇襲攻擊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기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우기 매년 수차례 향토예비군과 정규군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향토예비군의 훈련상태를 향상시키고 있다.

4. 駐韓美軍

美國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현재 제 2 보병사단, 제 7 공군 중심의 약 4萬 4千名을 배치하고, 韓國軍과 더불어 “韓美聯合司令部”를 설치하고 있다. 駐韓美軍은 제 2 보병사단의 화력과 기동력의 향상, 防空能力의 향상, C³I (指揮, 統制, 通信 및 情報)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韓美兩國은 한반도에서의 불의의事態에 대비할 수 있는 共同防衛能力을 높이기 위해 1976년부터 매년 한·미합동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규모로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駐韓美軍의 존재와 미국의 對韓코미트먼트는 韓國의 국방 노력과 함께 韓半島의 군사발란스를 유지하고, 韓半島에서의 大規模 무력분쟁의 발생을 억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東北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第 6 節 東南아시아의 軍事情勢

1. 지역적 特性

東南아시아는 말라카海峽, 南支那海,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近海를 포함해서 太平洋과 印度洋을 잇는 교통상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소련 지원을 받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軍事介入, 坎란灣을 거점으로 하는 소련의 軍事行動 등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ASEAN 諸國의 경제발전과 결속의 강화, 베트남軍의 금년 9월까지의 캄보디아 철수표명 등, 이 地域 情勢에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ASEAN 諸國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결속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SEAN 諸國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일본에게는 아주 중요한 近隣諸國이며, 이들 諸國의 평화와 안정은 日本의 안전에도 중요한 것이다.

2. 地域의 주요 紛爭狀況

(1) 캄보디아紛爭

1978年 12月 軍事介入을 한 소련의 支援下에 수립된 “행·삼린政權”의 베트남이, 유엔등으로부터 캄보디아 철수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대규모의 兵力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反베트남勢力인 民主캄보디아聯合政府 3派가 캄보디아 各地에서 베트남軍에 대항하는 게릴라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이 紛爭은 금년으로 11년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캄보디아 問題의 “包括的 政治解決”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재작년말부터 民主캄보디아측의 시아누크와 “행·삼린政權”측의 훈센首相 사이에 회담도 진행되고, 또 ASEAN 諸國을 포함하는 자카르타비공식협의회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問題에 利害를 달리는 중·소간의 대화도 개시되고 있다. 이와같은 對話를 통해 일부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정부의 형태나 국제감시기구의 설치 등에 관해서 各國, 各派간에 立場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은 작년 6월 캄보디아주둔병력의 제 7차부분철수(베트남측발표에 의하면 5萬名)를 개시한 것 같으며, 금년 4월에는 금년 9월말까지 캄보디아로부터 완전철수할 것을 발표하였다.

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3. 이 地域에서의 소련의 動向

소련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행·삼권政權”에 대해 군사원조를 하고 軍事顧問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베트남의 캄란灣 海·空軍施設을 사용하고 있다.

소련은 캄란灣에 전투함정과 잠수함 등을 기항시킬 뿐만 아니라 同港灣을 이용하여 남지나海에 20여척의 함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은 캄란灣에 TU-95 베어나 TU-16 바자, MIG-23 후로거 등을 배치하여 周邊海域의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캄란灣에 통신·정보수집시설과 보급시설을 두어 소련으로서는 중요한 해외 군사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와같이 소련은 캄란灣의 이용으로 소련·太平洋艦隊 運用의 柔軟性 확보 및 東南아시아地域에서의 계속적 駐屯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美國, ASEAN 諸國의 動向

(1) 美 國

美國은 베트남으로부터 철수이후,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 軍事力을 상주시키지 않고 있으나, 經濟軍事援助에 의해서 ASEAN 諸國과 협의·우호관계를 확보하면서 安定의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주둔 美海·空軍의 存在, 타이에 있는 戰時豫備儲蓄, 타이 등과의 공동연습,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航母戰鬥그룹의 駐屯 등에 의해서 이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2) ASEAN 諸國

ASEAN 諸國은 각각 자국의 국방노력을 계속하며 2國間의 합동군사연습을 하기도 하고, 말라카海峽의 공동방위를 협의하는 등 域內諸

國間 방위협력을 추진하며 經濟 文化交流 등을 통한 域內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 선진민주주의제국과의 협력관계 增進에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은 中東에서 太平洋으로 가는 石油와 같은 주요물자의 해상 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필리핀에는 美軍의 수빅海軍基地나 클라크空軍基地가 있어서 이 나라와 이 地域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美·필리핀軍事基地協定이 이루어져 작년 10月 美國의 對比援助 증액(연간액 베이스로 從前의 약 2.7倍)을 合意하였다. 그러나 1991年이후의 美比軍事基地協定의 형태에 관해서는 미정이며, 이 協定의 期限인 1991年 9월경에 새로운 美·比間의 교섭이 있을 예정이다.

註1) 今年 5月 소련은 야조프國防相의 프라우다紙 인터뷰 形式으로 極東의 소련軍 戰力에 관한 데이터를 처음으로 公開하였으나, 이것은 極東地域 소련軍의 區分이 의욕적이고 또 비합리적이라는 것, 兵力의 內譯 등이 아직 분명치 않고 極東에서의 소련軍 實態把握이 곤란하다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소련 太平洋艦隊 함정 약 840 隻, 約 190 萬톤

3) 라쉬船(LASH:Lighter Aboard Ship):거룻배(lighter)를 적재하는 배. 대형크레인을 장치하여 안벽에 접안하지 아니하고도 海上에서 거룻배를 싣고 내린다. 그러므로 항만시설이 불충분한 곳에서 이용된다.

4) 롤 롤船(Roll on/Roll off):컨테이너나 화물을 트럭 또는 트레일러 등의 運搬裝置에 싣고, 岸壁에서 運搬裝置로 船積도 하고 그대로 짐을 내리기도 하는 荷役方式을 취하는 배로서 船首 또는 船尾에 개폐식 문이 있다.

이 방법은 商船에서는 카 웨리에 많이 使用되고 있다. 軍用으로는 揚陸艦에서도 사용되며 艦艇을 岸壁에 접안하여 戰車 등을 직접 적재하고 적당한 상륙지에 착안하여 艦首의 문을 열고 揚陸한다. 또 海上에

서 수륙양용의 車輛 등을 직접 발진시키는 것도(Roll on/Float off)이 있다.

5) 第1世代: MIG-17, MIG-19 등

第2世代: MIG-21, MIG-25, SU-7 등

第3世代: MIG-23/27, SU-24 등

第4世代: MIG-31, SU-25, SU-27 등

6) OTH 레이더: 短波帶電波가 電離層에서 반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水平線 너머의 航空機, 艦船 등의 目標을 탐지·追尾하는 레이더. 일반적으로 그 탐지범위는 約 1,000 km-3,000 km, 폭은 約 60 度の 범위에 걸친다.

第3章 기타地域의 軍事情勢

第1節 中東 및 印度洋地域

1. 이 地域의 特性

中東·印度洋地域에는 석유수송루트를 비롯해서 海洋通商으로 번영해 온 日本과 自由主義諸國에게 중요한 海上交通로와 스웨즈運河, 호르무즈海峽 등 海上交通의 要衝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이 지역은 세계의 交通上 要域으로 되고 있다.

특히 페르시아灣(아라비아灣) 지대는 세계 原油매장량의 6割이상과 세계석유수송량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大產油地帶이며, 일본등 自由主義諸國은 석유공급의 많은 부분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第1-2表 參照).

때문에 이 地域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海上交通의 안전확보는 일본을 비롯한 自由主義諸國이나 제3세계 나라들의 생존과 번영에 극히 중요하다.

한편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제2차세계대전후에 식민지로부터獨立하여 영토, 민족, 종교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얼켜서 國內外的으로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더우기 이를 地域諸國에로의 彈道미사일등 高度兵器의 擴散은 이 地域의 불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이 地域의 主要 紛爭狀況

(1) 이란·이락紛爭의 停戰

1980年 9월에 본격화한 이란·이락紛爭은 약 8년을 경과하며 장기·소모전의 樣相을 보여 왔으나 작년이후 이란의 死傷者增大와 武器·彈藥부족 등으로 인해 地上戰鬥에서 이락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같은 전투의 추이를 배경으로하여 이란은 이미 이락이 受諾을 표명한 바 있는 이란·이락紛爭의 즉시정전을 요구하는 UN 安保理決議 598號를 수락하여, 작년 8月 20日에 양국간 停戰이 발효되었다.

現在 유엔事務總長주재하에 직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샷트르아랍川의 浚濬, 양군의 철병, 포로 교환 등의 문제가 국경문제에 일켜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교섭은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의 소련軍의 철수

작년 4月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나지부라政權), 美國 및 소련 사이에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소련軍의 撤收,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間의 相互 內政不干涉과 불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서가 서명되었다. 소련軍은 이 합의문서에 따라 작년 5月부터 철수를 開始하여 今年 2月 15日 철수를 완료하였다. 소련軍의 철수는 수차에 걸쳐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등,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國家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으로서도 군사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고, 또 군사개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부터의 탈피, 對西方 이미지 改善으로 國內經濟 再建에 필요한 西方諸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서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련軍 철수후 나지부라政權은 政府의 체제강화를 추진하여 정권유

지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은 철수후에도 同政權에게 武器供與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정부세력은 소련 철수후인 2월 18일에 파키스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同時에 주요도시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켜 나지부라政權에 대해 壓力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로는 紛爭이 조기에 해결될 전망이 어둡다.

(3) 아랍·이스라엘間的 紛爭

이스라엘이 占領하고 있는 요르단강 西岸과 가자地區에는 1987년 이래 팔레스타인인의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아랍諸國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에 PLO 아라파트의장이 이스라엘의 생존권 승인, 테러포기 등을 明確히 밝힌 것을 받아들여, PLO와 美國間에 처음으로 직접대화가 개시되고 있다. 이것은 中東平和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PLO를 承認하지 않아서, 금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레바논에서는 國內各派간의 대립에다, 關係國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혼미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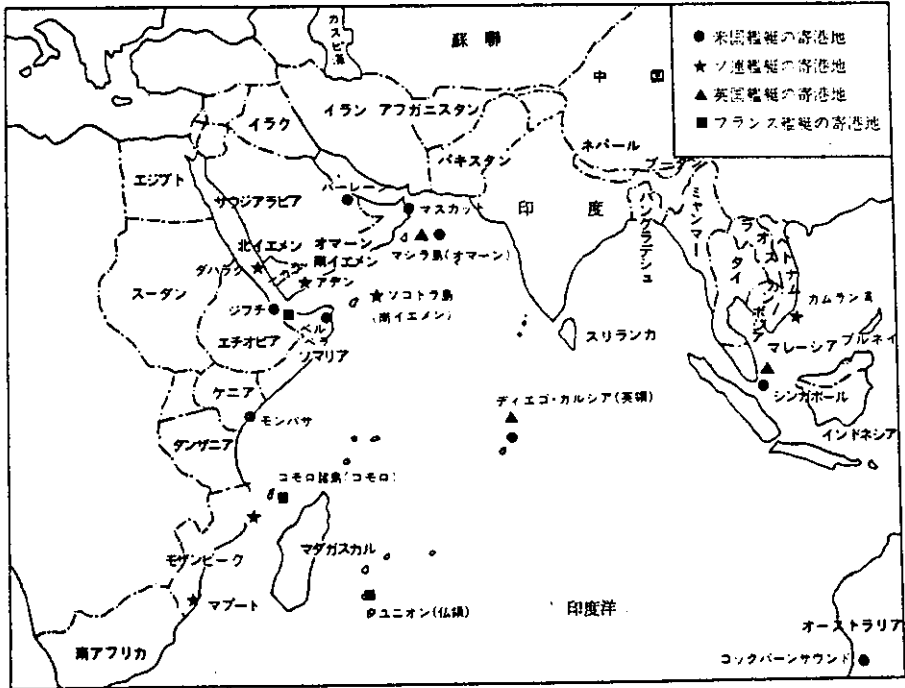
3. 美國과 소련의 動向

(1) 소련의 動向

소련은 아프카니스탄의 나지부라政權에 대한 軍事援助를 계속하면서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남예멘 등에게 武器의 供與와 軍事顧問團을 派遣하였다. 또한 소련영향하에 있는 第3國의 군사요원을 이 지역에 파견하는 등의 수단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군사시설 등을 획득하여 왔다.

소련海軍은 인도洋에 주로 태평양함대에서 分離된 약 20척의 艦艇을

〈圖 1 - 21〉 인도洋周邊地域の 美・蘇・英・佛의 寄港地



항시 전개시키고 있다. 소련艦艇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된 港灣, 停泊地는 〈圖 1 - 21〉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이것들은 페르시아灣(아라비아灣)에서 인도洋을 거쳐 일본, 유럽, 미국에 이르는 석유수송루트를 위협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더우기 소련이 인도에 대해 작년 1月 원자력잠수함(차리 1級)을 대역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2) 美國의 動向

美國은 中東・인도양지역을 美國과 동맹국의 이익과 안전보장에 중요한 지역의 하나로 보고 있다.

美國은 港灣諸國의 안정과 이 지역으로부터 石油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인도洋에 第7艦隊의 주둔을 維持하고, 페르시아灣(아라비아灣) 방면에는 중동통합 임무부대를 배치하고 航母를 포함한 다수의 艦艇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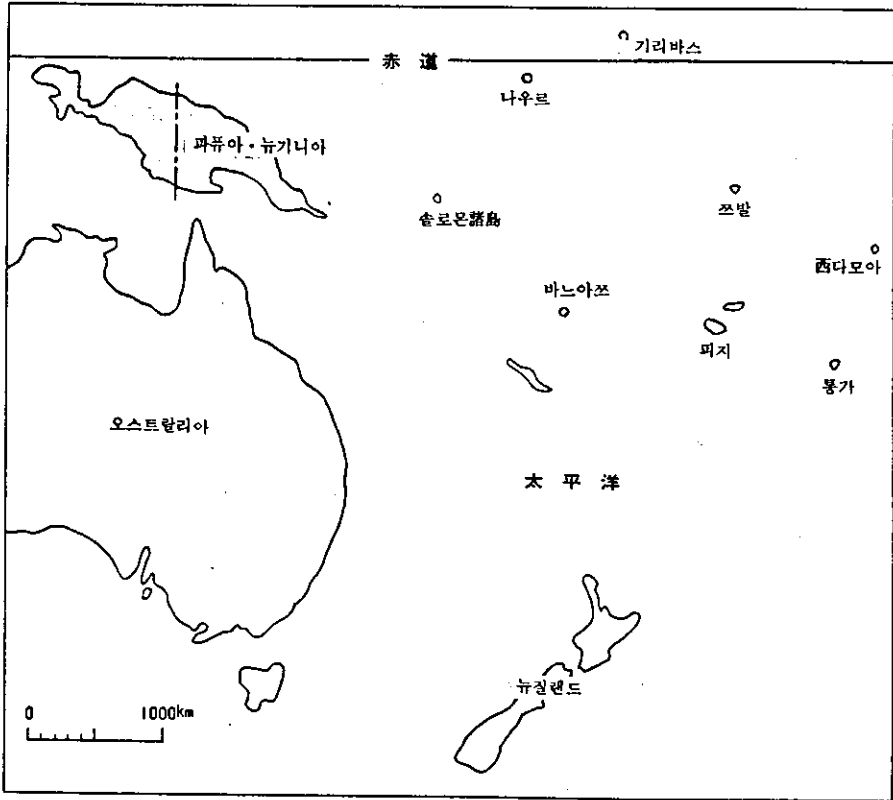
그러나 페르시아灣(아라비아灣)은 소련領으로부터는 약 900 km 밖에 안되지만 美國 東海岸으로부터는 최단의 지중해·스에즈運河를 經由하더라도 약 15,000 km나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또한 海·空 輸送能力의 강화, 디에고·가르시아에의 資材의 事前集積과 해군지원시설의 유지, 中央軍(CENTCOM)의 설치, 케냐, 소말리아, 오만, 모로코 등과 긴급시 통과나 시설이용을 위한 협정 등을 맺어 유사시 이 지역의 作戰遂行能力을 향상시키고 있다

第2節 其他 地域

南太平洋地域은 풍부한 식료, 광물자원들이 존재하고, 또 日本등 自由主義諸國과 政治·經濟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地域이기에, 이 地域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日本을 비롯한 自由主義諸國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는 美國과 ANZUS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오스트랄리아는 조약에 따라 미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사시설을 공동사용하며 공동연습을 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와는 상이한 核政策으로 인해 美國艦艇의 뉴질랜드寄港이 問題되어, 1986년 7월 美國은 뉴질랜드에 대한 방위의무의 이행을 정지한다고 공표하였다. 소련은 1985년에 키리바트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래, 南太平洋地域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피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와도 어업교섭을 신청하고 있으며, 작년 2월 아우루共和國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이 지역 各國과의 국교

〈圖 1 - 22〉 南太平洋地域의 주요한 나라들의 位置關係



수립에도 적극적이다. 美國은 군사원조·경제원조 등에 대해서 이 地域 諸國과의 협력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지역안정의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地域은 크롬, 망간 등 稀少金屬資源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또 주요한 해상교통로가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해상교통의 안전확보는 일본을 비롯한 自由主義諸國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아프리카 諸國의 대부분은 제 2 차세계대전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로서 식량

부족 등의 경제적 곤란에다 部族對立 등의 요인들이 일켜 西사하라, 차드 등에서는 地域紛爭이 계속되고 있다. 차드에서는 1987년 9월에 停戰이 성립되었으나, 여전히 분쟁의 쫓점이 된 아오즈地區 領有問題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앙골라에서는 작년 12월에 包括平和協定이 서명되어 금년 1월부터 쿠바軍의 철수가 개시되었으며, 더우기 6월에는 앙골라大統領과 UNITA議長 사이에 정전에 합의를 보았다.

中南美地域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광대한 지역이다. 특히 中美·카리브海地域은 美國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파나마運河 등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美國에 있어서 전략상 극히 중요한 지역이다. 더우기 카리브海는 自由主義諸國의 중요 해상교통로로 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美軍의 전개, 來援과도 관련하여 그 안전의 유지는 미국이 외의 自由主義諸國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 이 地域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심각한 인플레이 등 곤란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등의 紛爭에 관해서는 금년 2월 엘살바도르의 中美5個國 대통령회담에서 유엔이 관여하는 형식의 평화안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또한 니카라과에서는 작년 3월 暫定停戰合意가 成立한 후, 본격적인 停戰交渉은 결렬되었지만 정전상태는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第 2 部 日本의 防衛政策

第 4 章 日本의 安全保障

第 1 節 安全保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1. 安全保障의 중요성

(1) 현재 세계에는 160여개 국가가 있다. 이들 國家는 국제사회에서 각각 자국의 發展과 繁榮을 위해 政治, 經濟, 文化 등에서 相互交流活動을 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것은 국가가 안전한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충분히 추구될 수 있는 데, 때로는 외부 침략에 의해 국가의 독립과 평화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냉엄한 역사적 事實도 인정해야 한다.

한편 오늘의 국제사회에는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世界的 機構는 없다.

이 때문에 각국은 國家의 安全保障을 중시하고 國力과 事情에 상응한 安全保障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2) 오늘날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로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이 제 2차세계대전후의 폐허속에서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國民의 英智와 努力의 결정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배경에는 武力紛爭이 끝치지 않는 냉엄한 국제환경속에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는 일

없이 安全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다. 오늘의 자유롭고 활력있는 國民生活은 좋은 傳統을 물려받으며 독자의 문화를 키우고 國民의 행복을 증진하는 基盤인 것이다. 이를 금후에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日本은 앞으로도 安全을 확보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相互依存關係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日本은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큰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한층 공헌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日本의 안전보장확보는 일본이 이러한 국제적 공헌을 하기 위한 전제라 할 것이다.

2. 外交分野에서의 努力

國家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外交의 노력은 극히 중요하다. 外交에 의해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만들고, 內政諸施策에 의해서 國內의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화를 이루고 침략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나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대하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깊어가고, 국제협조의 필요성이나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관련이 깊어감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努力은 그 중요성이 늘어가고 있다.

日本은 외교면에서 對美관계를 基軸으로 한 西方諸國과의 협조를 위해서 나, 보다 낮은 군사적 수준에서의 동서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美·蘇간이나 유럽에서의 軍備管理·軍縮交渉에 공헌하며 동시에 동구와 광범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中東,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의 發展途上國의 안정과 발전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데서 世界에 공헌하는 일본이라는 입장에서 최근 發展途上國의 自助努力에 대해 많은 협력을 해 온 것이다. 또한 國際社會의 발전과 평화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유엔 등을 통해서도 日本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政府는 작년 5월 분쟁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에의 적극적 참가,

요원의 파견, 자금협력 등 平和를 위한 協力構造의 확립, 국제문화교류의 강화, 정부개발원조(ODA)의 확충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일본의 “國際協力構想”을 밝혔다.

그 밖에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國家를 지키고자 하는 기개를 充實하게 하기 위한 안전보장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내政面에서 諸般 努力을 하고 있다.

3. 防衛分野에서의 努力

國家의 安全을 확보함에 있어서 외교적 노력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실력을 갖고 감행하는 침략을 반드시 유효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다. 또 만일 침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반격하여 이것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침략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만일 침략을 받았을 경우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방위분야의 노력을 평소부터 추진해 둘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외교 분야의 노력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第1部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美國과 소련의 강력한 軍事力을 중심으로 한 동서의 集團安全保障체제의 대치구조에 의해 핵전쟁이나 대규모 무력분쟁이 억제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美國을 중심으로 한 自由主義諸國은 자국의 안전확보는 물론 자국이 속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유지강화에 여하히 공헌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방위분야에 큰 努力을 해 왔다.

日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스로 적절한 규모의 방위력 정비를 하는 한편 美國과의 安全保障體制를 견지하면서 그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이 일본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第2節 自由主義諸國의 一員으로서 日本의 役割

오늘날 日本의 번영과 발전은 국민의 노력에다, 일본이 일관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통의 가치관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諸國의 一員으로 關係各國과 우호와 협조를 해 온데에 기인한다.

그 배경으로서는

(1) 東西兩陣營間 힘의 均衡을 背景으로 東西間에 핵전쟁이나 대규모의 무력분쟁이 억지되었다는 것.

(2) IMF, GATT 등 自由主義經濟를 유지하며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機構가 존재하여 機能해 왔다는 것.

(3) OECD나 선진국수녀회의와 같은 자유주의 선진국가의 政策協調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존재하여 機能해 왔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일본이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機構안에서 美國등 自由主義諸國과의 우호와 협조에 의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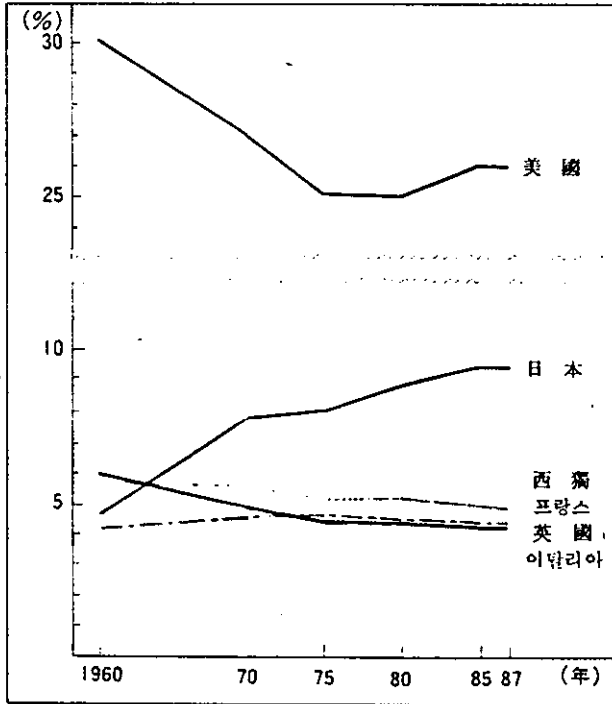
美國은 강력한 군사력과 經濟力을 기초로 하여 여전히 國際 社會에서 中心的인 존재이기는 하나 최근에 同國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재정사정하에서 同盟諸國의 방위를 위해 과다한 지출을 떠맡고 있다는 인식이 國內에 퍼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경제에 힘을 기울여 온 同盟諸國에 대해 世界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 나라 역량에 상응하는 貢獻을 하며 보다 공평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論議가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自由主義諸國中 미국 다음의 經濟力을 갖게 된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알맞는 역할을 자주적 판단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나 평화국가의 입장을 견지하는 日本에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비군사적으로 더욱 기여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日本이 이상과 같은 국제적 공헌을 하는 데는 우선 自國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日本은 어디까지나 日本의 自衛를 위한 防衛力の整備에 努力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努力은 日本의 安全을 보다 確實하게 할 뿐 아니라 美·日安全保障體制의 信賴性的의 維持強化에도 관련되고, 결과적으로 東西兩陣營間的 軍事발란스面に 있어서 自由主義諸國의 安全保障의 維持에도 공헌하고, 아시아 나아가서는 世界의 平和와 安全에 공헌하게 된다.

<圖 2-1 > 主要國의 GNP



註) 자료는 美國中央情報局의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8에 의함.

第 5 章 日本防衛政策의 基本과 防衛 計劃의 大綱

第 1 節 防衛政策의 基本

1. 헌법과 自衛權

(1) 日本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여 오로지 平和國家의 건설을 목표로 노력을 거듭해 왔다. 항구적 평화는 日本國民의 염원이며, 이 평화주의의 이상을 내 건 日本헌법은 第 9 條에 戰爭포기, 戰力不保有 및 交戰權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원래 日本이 독립국가인 이상 이 規定이 主權國家로서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異論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같이 일본의 자위권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行使를 보장하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實力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解釋하고 있다. 나아가 專守防衛를 일본방위의 기본방침으로 하여 實力組織으로서 자위대를 보유하고 그 整備를 추진하며 운용해 왔다.

(3) 헌법 제규정중 전쟁의 방지 등을 정한 憲法 第 9 條의 취지에 대한 政府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日本이 憲法上的의 제약하에서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위력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自衛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실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그때 그때의 국제정세 또는 군사기술 수준 및 기타 제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면을 갖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憲法 第 9 條 第 2 項의 “戰力”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일본이 보유하는 전체의 실력에 관한 문제인 것이며, 自衛隊가 보유하는 개개의 병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유함으로써 일본이 보유하는 실력全體가 이 한도를 넘게 되는 거의 여부에 따라 保有의 如否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병기중에서도 성능상 相對國에게 對稱적 파괴를 주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소위 攻擊用兵器를 보유하는 것은 곧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가령 ICBM, 장거리전략폭격기, 혹은 공격형항모를 自衛隊가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자위권 발동에 관해서는 소위 自衛權發動의 3요건, 즉 日本에 대한 긴박불응의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따로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實力行使에 그칠 수 있을 때의 3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③ 日本이 자위권 행사로서 일본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實力을 행사할 수 있는 地理的 範圍은 반드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言及할 수는 없다. 그러나 武力行使의 목적으로 무장한 부대를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소위 해외파병은 일반적으로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 국제법상 國家는 집단적 자위권 즉, 自國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外國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實力을 갖고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이 국제법상 이와같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당연하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⑤ 憲法 第9條 第2項은 “나라의 交戰權은 이것을 認定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日本을 自衛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는 交戰권의 행사와는 별개의 것이다.

2. 國防의 基本方針

(1) 일본의 방위정책은 昭和32年 5月の 國防會議 및 閣議에서 결정한 “國防의 基本方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2) 國防의 基本方針

國防의 목적은 직접 또는 간접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侵略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基本方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유엔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법의 준수로 세계평화의 실현을 기한다.

②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③ 國力, 國情에 따라 自衛에 필요한 한도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④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래 유엔이 유효하게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美國과의 安全保障體制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처한다.

그리고 昭和 62 年 1 月の 閣議決定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본은 평화헌법에 專守防衛에 철저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게 되는 군사대국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美日安保體制를 견지하면서 文民統制를 확보하고 非核三原則을 지키면서 절도있는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다.

(2) 專守防衛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防衛力行使의 형태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自衛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한다는 등 憲法精神에 따른 수동적인 방위전략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3) 非核三原則이란 핵병기를 갖지 않으며, 만들지도 않고, 도입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核武器의 제조 보유는 원자력 기본법의 규정상으로도 금지되어 있거니와 일본은 昭和 51 年 6 月 核武器不擴散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非核武器國으로서 核武器를 제조하지 않고 취득도 하지 않는다는 義務를 지고 있다.

(4) 또 文民統制(시빌리언 콘트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자위대는 국민의 의사에 存立基礎를 두는 것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정비·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구헌법하의 체제와는 전혀 다르며 엄격한 시빌리언 콘트롤下에 놓이게 된다.

시빌리언 콘트롤의 실태를 확실적인 것으로 할 수는 없으나 현재 구미등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시빌리언 콘트롤이란 民主主義政治를 전제로 한 군사에 대한 政治優先 또는 軍事에 대한 民主主義的인 政治統制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終戰까지의 경위에 대한 반성도 있어, 다른 民主主義諸國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시빌리언 콘트롤의 諸制度를 채용하였다.

우선 자위대는 국민의 대표인 國會의 콘트롤을 받고 있다. 자위대의 정원, 조직, 예산 등의 중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의결되고 防衛出動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자위대의 諸問題는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內閣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결정하고 政令의 制定 혹은 방위에 관한 중요한 방침이나 계획을 결정한다. 內閣을 구성하는 내각총리대신과 기타 국무대신은 헌법상 文民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자위대에 대한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자위대의 業務를 통괄하는 防衛廳長官도 문민인 국무대신으로 총당한다.

內閣에는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 및 중대긴급사태의 대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機關으로서 安全保障會議을 두고 있다.

또한 防衛廳長官이 자위대를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政務次官 및 事務次官이 장관을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며, 기본방침의 책정에서 소위 文官인 參事官이 보좌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自衛隊를 민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빌리언·콘트롤제도가 日本에서도 정비되고 있다.

더욱이 시빌리언·콘트롤 제도가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政治·行政 兩面에서 운영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국민전체의 자위에 대한 깊은 관심과 隊員자신의 시빌리언·콘트롤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행동이 필요하다.

3. 防衛政策의 二大支柱 — 自衛隊와 美·日安全保障體制

일본 국방의 목적은 국방의 基本方針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접 또는 간접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배제하고, 이로써 民主主義를 基調로 하는 日本의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自衛隊를 보유하고 美日安全保障體制를 견지하고 있다.

防衛政策은 이러한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은 防衛政策의 基本에 따라 그리고 關係法令에 따라 다른 政策과의 協調·調和를 하면서 책정 실시되고 있다.

(1) 自衛隊

자위대는 自衛隊法上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직접침략 또는 간접침략에 대해서 일본을 방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필요에 따라 公共秩序의 유지에도 임한다” 라고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출동”, “치안출동”, “해상의 警備行動”, “災害派遣”, “地震防災派遣”, “領空侵犯에 대한 조치” 등의 행동을 자위대법이 정하는 요건과 수속에 따라 실시한다.

自衛隊는 주로 여하히 하면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방위력으로 정비하고, 여하히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

(2) 美·日安全保障體制

일본이 핵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全面戰爭이나 통상병기에 의한 침

략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事態에 대처할 수 있는 態勢를 독자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日本은 스스로 적절한 규모의 防衛力을 보유함과 동시에 美國과의 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하여 日本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제 5 조에서 “各 締結國은 일본의 施政下에 있는 영역에 대한 武力攻撃을 自國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自國의 헌법규정 및 수속에 따라 공통의 危險에 대처하도록 행동함을 선언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美·日兩國이 공동대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일본방위의무를 중핵으로 하는 美·日安全保障體制로 인해, 日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武力攻撃은 자위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과도 직접 대결할 가능성을 갖는 것이 되며, 侵略國은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침략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또한 同條約은 제 6 조에서 “日本의 안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美合衆國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이 日本에서 施設 및 區域의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規定하고, 同條에 따라 미국은 그의 군대를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 駐日美軍의 존재는 일본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의 안전을 確保하는데 필요불가결한 美日安全保障體制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施設·區域의 제공에 의한 駐日美軍運用體制의 원활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각종연구, 공동훈련, 공동연구개발 등 제반 美日防衛協力을 중심으로 한 美日相互協力에 의해서 美日安全保障體制의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3) 소위 安保에 말려든다는 理論에 대하여

日本이 美日安全保障體制下에서 방위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日本이 美國의 戰略에 끌리어 美國과 第 3 國사이의 戰爭에 말려드는 結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意見이 일부에 있다. 이 點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① 세계각지에서 지역적인 武力紛爭이 그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 東西間에는 압도적인 核·通常戰力を 갖고 있는 미소 양국이 중심이 된 힘의 균형에 의해서 대규모 무력분쟁이 크게 억지되어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安全保障을 생각할 경우에는 미소간의 억지가 잘 機能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軍事構造를 인식함과 동시에 미소의 전세계적인 군사 대치속에서 日本이 미소의 쌍방에게 지리적으로 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②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이 미소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抑止體制로부터 떨어져서 단독으로 그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자유와 民主主義 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美國과 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하고, 美國이 갖는 거대한 抑止力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금후에 보다 더욱 유효하게 機能시켜가는 것이 일본으로서 취해야 할 최선의 길일 것이다.

③ 이것을 위해 日本은 스스로 방위력의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각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와 같은 노력이 美日安全保障體制의 신뢰성을 높이며, 일본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는 힘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武力紛爭이 그치지 않는 국제사회속에서 일본이 美日安全保障體制下에서 外部로부터 침략이나 위협을 받는 일없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룩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④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미소간에 戰爭 發生의 가능성이 높는데 美日安全保障體制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위협하다는 論議는 오늘의 국제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第2節 防衛計劃의 大綱

일본은 昭和 33 年度 이래 3 年 또는 5 年을 간격으로 防衛力整備計劃을 4 차에 걸쳐 책정하고, 방위력의 충실한 정비에 노력해 왔다. 제 4 차방위력정비계획이 昭和 51 年度에 종료함에 따라 昭和 51 年 10 月 “防衛計劃의 大綱”(“大綱”:資料 10 參照)이 國防會議 및 閣議에서 결정되었다.

1. “大綱”이 前提로 하고 있는 國際情勢

“大綱”은 安定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國際情勢 및 일본주변의 국제정치구조와 국내제정세가 당분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前提하에 이 國際情勢의 기본적 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核 相互抑止를 포함한 군사균형이나 제반 국제관계안정화의 노력으로 東西間에 전면적 군사충돌 또는 大規模 武力紛爭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

② 일본주변에 있어서는 한정적인 武力紛爭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大國間의 균형관계와 美日安全保障體制의 存在가 국제관계의 안정유지와 日本에 대한 본격적 침략의 방지에 계속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防衛의 構想

“大綱”은 전술한 국제정세 등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서 論하게 되는 일본이 보유하여야 할 防衛力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으로 “防衛의 構想”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 우선 일본의 방위는 美日安全保障體制하에서 어떠한 형태의 침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위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침략을 미연

에 방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것을 위해 일본 스스로 적절한 防衛力을 보유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만일 침략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美國의 協力を 받아서 침략을 조기에 물리칠 것 등도 규정하고 있다.

3. 日本이 보유해야 할 방위력

“大綱”은 일본이 평시에 보유해야 할 防衛力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① 防衛上 필요한 각종의 機能을 구비하고, 後方支援體制를 포함해서 그의 조직 및 배치가 均衡이 잡혀야 할 것.

② 평시에도 충분한 警戒態勢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

③ 한정적이고 소규모적인 침략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

④ 情勢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防衛力의 태세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원활하게 이를 갖추 수 있도록 배려가 된 基盤이 있어야 할 것.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日本 防衛力이 구비해야 할 “防衛態勢” 및 이 態勢를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陸上, 海上 및 航空自衛隊의 體制”를 밝히고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한정적이고 소규모적인 침략”이란 전면전쟁이나 대규모 무력분쟁에까지 이르지 않는 侵略, 즉 한정적인 侵略中 소규모적인 것을 말한다. 規模, 形態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곤란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침략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準備없이 일으키고, 또 단기간내에 既定事實化할 것을 노리고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 따라서 보유해야 할 防衛力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大綱”의 別表에서, “大綱”수립시에 있어서 裝備體系를 전제로 한 各自衛隊 基幹部隊의 중장비 등을 들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大綱”은 방위력의 정비에 있어서 방위의 態勢와 육상·해상 및 항공자위대의 體制를 정비하고, “外國의 기술동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질적인 충실향상을 유지함을 기본으로 하고”, 또 “그 구체적 實施에 있어서는 그 때 그 때에 있어서의 經濟·財政事情 등을 감안하며 나라의 다른 施策들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表 2-1〉 “防衛計劃의 大綱”의 達成狀況

區 分		單 位	“防衛計劃의 大綱”	元年度 完成時	中 期 計 劃 完成時	
陸 上 自 衛 隊	自衛官定數	萬 名	18	18	18	
	基 幹 部 隊	平時地域配置하는 部隊	사 단	12	12	12
			혼성단	2	2	2
		機動運用部隊	기갑사단	1	1	1
			특과단	1	1	1
			공정단	1	1	1
			교도단	1	1	1
	헬리콥터 단	1	1	1		
低空域 防空用 地對空誘 導彈部隊	고사특 과 群	8	8	8		

第 5 章 日本防衛政策의 基本과 防衛計劃의 大綱

區 分		單 位	“防衛計劃의 大綱”	元年度 完成時	中 期 計 劃 完成時		
海 上 自 衛 隊	基 幹 部 隊	對潛艦艇部隊 (機動運用)	호위대群	4	4	4	
		對潛艦艇部隊 (地方隊)	대	10	10	10	
		潛水艦部隊	대	6	6	6	
		掃海部隊	소해대群	2	2	2	
		陸上對潛機部隊	대	16	14	16	
	主 要 裝 備	對潛水上艦艇	척	約 60	61	62	
		潛水艦	척	16	15	16	
		作戰用航空機	기	約 220	194	214	
	航 空 自 衛 隊	基 幹 部 隊	航空警戒管理部隊	경계群	28	28	28
			邀擊戰鬥機部隊	비행대	10	10	10
支援戰鬥機部隊			비행대	3	3	3	
航空偵察部隊			비행대	1	1	1	
航空輸送部隊			비행대	3	3	3	
警戒飛行部隊			비행대	1	1	1	
高空域防空用地對空誘導 彈部隊			고사群	6	6	6	
主 要 裝 備		作戰用航空機	기	約 430	414	415	

註：中期計劃完成時는 計劃作成時의 豫想임.

第3節 防衛力の 구체적 기능

“防衛計劃의 大綱”(이하 “大綱”)의 別表에서 日本이 保有하여 할 各自衛隊의 基幹部隊, 主要整備 등 구체적 규모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전절에서는 “大綱”에 명시된 防衛力整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防衛力の 구체적 기능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일본에 대한 침략의 규모나 양태는 그 때 그 때의 國際軍事情勢나 일본의 방위태세, 침략국의 의도에 따라 여러가지 있겠으나, 日本의 地理的 特性 등에 의해 판단해 보면 그 중요한 형태로서는 다음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① 육·해·공전력에 의한 上陸攻擊
- ② 해·공전력에 의한 領域에의 攻擊
- ③ 해·공전력에 의한 해상교통의 방해
- ④ 이들의 複合

이로 인하여 自衛隊에는 주로 防空, 上陸侵攻對處 및 해상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各機能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美日安全保障條約에 따라 미군이 자위대와 공동으로 日本의 방위에 임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 防空을 위한 機能

日本에 대한 침략이 일어날 경우, 우선 航空機에 대한 기습공격이 개시되고, 이 항공공격은 침략이 계속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防空作戰은 항공자위대를 주체로 하는 전반적인 防空과 陸·海·空 各自衛隊가 각각 그의 基地나 部隊들을 지키므로써 防空作戰 전체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개별적인 防空과 구분된다.

전반적인 防空이란 적항공기의 침공에 즉각 대응해서 所要의 部隊가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본토로부터 먼 空域에서 요격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① 航空警戒管理部隊는 전국 28개소에 설치된 레이다사이드 에서 日本의 거의 全空域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警戒飛行部隊는 早期警戒機¹⁾를 갖고 地上레이다의 사각지대가 되는 低空域을 감시함으로써 침공해 오는 적기를 되도록 조기에 발견한다.

② 다음으로 航空警戒管理部隊는 자동경계 관제조직 (벤티 시스템)을 갖고 목표의 식별, 전투기·지대공유도탄부대에 목표를 알리고 요격관제를 신속히 한다.

③ 이 요격관제들을 받은 요격전투기부대²⁾와 지대공유도탄부대(高空域防空用 및 低空域防空用)등이 목표를 요격한다.

이러한 작전을 실시하여 敵에게 航空優勢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민과 국토의 피해를 방지하며, 방위작전전반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敵이 항공공격을 계속하지 못하게 한다.

2. 上陸侵攻對處를 위한 機能

上陸侵攻은 침략국이 영토의 점령등을 목적으로 수송기, 揚陸함정등에 지상부대를 실어서 상대국의 국토에 착륙 혹은 상륙시켜 침략하는 공격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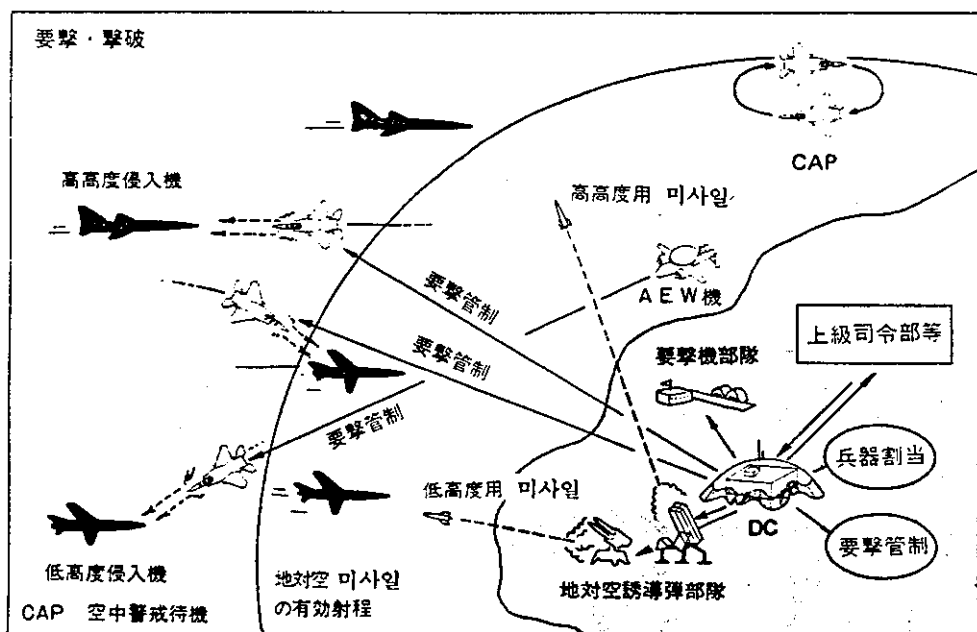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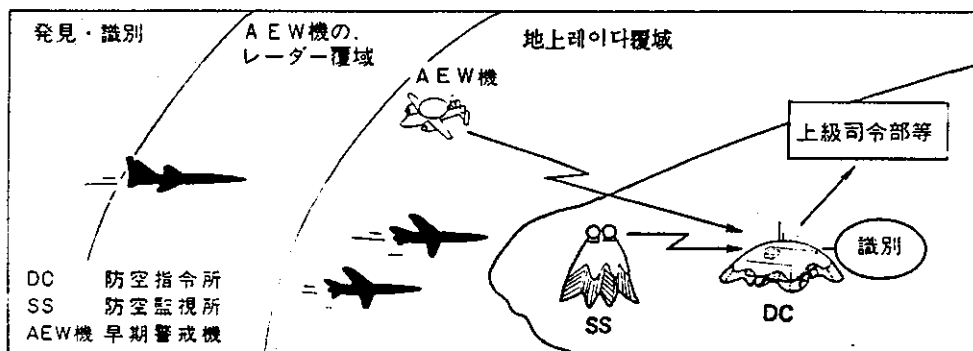
이 상륙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에는 陸·海·空 各自衛隊가 협동해서 행하는

① 海上에서의 대처

② 海岸·着陸地域에서의 대처

〈圖 2-2〉

防空作戰의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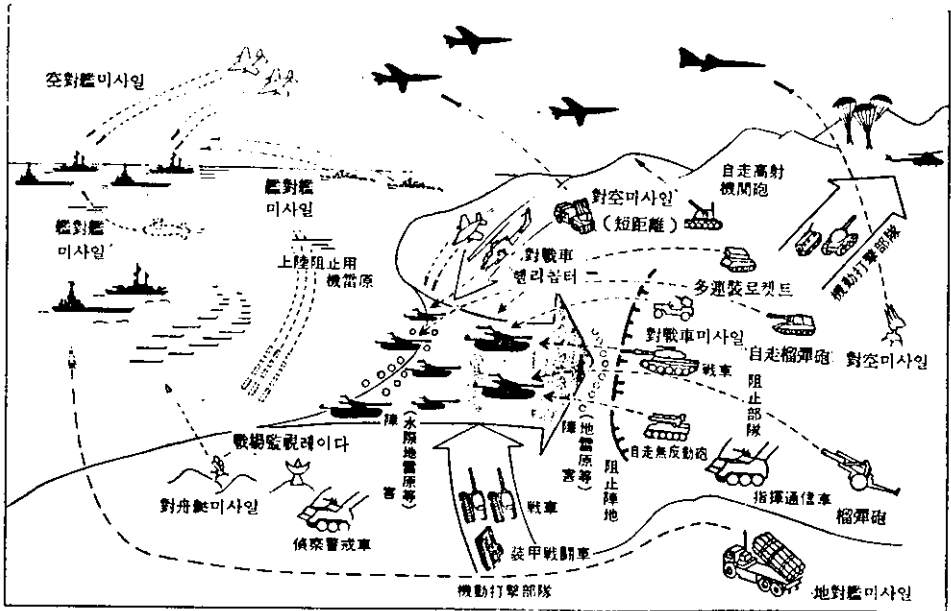
→ 情報・指示の流れ

③ 内陸에서의 對處 등으로 구분된다.

海上 또는 上陸時에는 침공해 오는 지상부대가 海空兵力에 幷호되기

는 하겠으나, 아직은 조직적인 힘은 발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자위대는 이와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국토에 전화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圖 2-3> 上陸侵攻對處作戰의 例



註：警戒監視用裝備：戰場監視레이다, 경찰경계차들
 對海上火力：지대함·공대함·함대함미사일·對舟艇미사일들.
 對地火力：야전포들 (유탄포, 自走榴彈砲, 迫擊砲, 다연장로켓트등), 대전차화기들 (대전차미사일, 무반동포, 대전차헬리콥터들)
 裝甲機動打擊力：전차, 장갑전투차들, 對空火力：對空미사일, 대공기관포들
 指導通信：지휘통신차, 지휘통신기들.

록 전방에서 대처하여 침공부대를 조기에 격파하도록 노력한다.

① 海上에서의 대처

침공부대에 대한 항정부대의 공격, 지원전투기부대에 의한 航空沮止³⁾, 地對艦誘導彈에 의한 요격 등 여러가지 作戰을 함으로써 해상에서 격파하여 침공병력을 살상시키는데 노력한다.

② 海洋 着陸地域에서의 대처

상륙해 오는 적에 대해서 해상자위대는 機雷敷設戰을 하여 그 행동을 방해·저지한다. 陸上自衛隊는 해양 가까운 지역에 배치된 部隊의 火力을 가지고 敵을 해안에서 저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적이 상륙해 왔을 경우에는 사단⁴⁾을 주축으로 하는 主要部隊에 의해 적을 격파시켜 日本국토에서 몰아낸다.

적의 空艇攻撃⁵⁾이나 해리본攻撃⁶⁾에 대해서는 육·공자위대가 방공작전을 한다. 지상에 착륙된 경우에는 주로 육상자위대의 화력과 기동타격력에 의해 격파시킨다.

③ 內陸에서의 대처

만일 적을 조기에 격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로 육상자위대가 내륙부에서 지구전을 하며, 이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부대를 집결시켜서 반격하여 침략을 배제한다.

④ 이러한 각단계의 작전이 실시되는 동안, 해상자위대는 艦艇部隊들을 이용하여 적의 증원이나 후방보급로를 차단하며 航空自衛隊는 支援戰鬥機部隊로 하여금 항공저지와 陸·海作戰을 직접지원토록 한다.

以上の 作戰을 실시하여 侵攻部隊의 早期擊破에 노력한다. 만일 격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占領을 既定事實로 하지 못하도록 끌어서 이 사이에 태세를 정비하여 반격함으로써 침략을 배제한다.

3. 해상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機能

자원, 에너지 및 식량등 생존에 필요한 많은 主要資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日本으로서는 해상교통의 안전확보는 생존기반의 확보나 續戰能力과 미군의 來援基盤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日本에 대한 해상교통의 방해로는 적이 潛水艦, 航空機 등을 使用해서 일본주변을 항행하는 선박을 공격하기도 하고 항공기, 함정에 의한 공격이나 기뢰 부설에 의한 항만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방해에 대처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自衛隊는 적의 다양한 수단 方法의 공격에 대응해서 哨戒, 護衛, 防空, 港灣과 해협등을 지키는 등 각종 작전을 수행한다.

① 주변해역에서는 對潛機部隊(固定翼對潛哨戒機)에 의한 광역哨戒, 護衛艦部隊에 의한 선박항행 지역의 초계를 먼바다에서 전개하여 일본선박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의 함정을 제압한다. 필요에 따라 護衛艦部隊나 對潛機部隊는 선박을 호위한다. 초계나 호위를 하는데 해상자위대는 위협의 형태에 따른 對潛戰, 對水上戰, 防空戰을 전개하게 된다.

② 沿岸海域의 선박 출입이 많은 주요항만부근 등에서 掃海部隊, 對潛機部隊(주로 回轉翼對潛哨戒機), 護衛艦部隊 등이 항만의 방비를 한다. 이들 작전을 위해 對潛機, 對機雷戰들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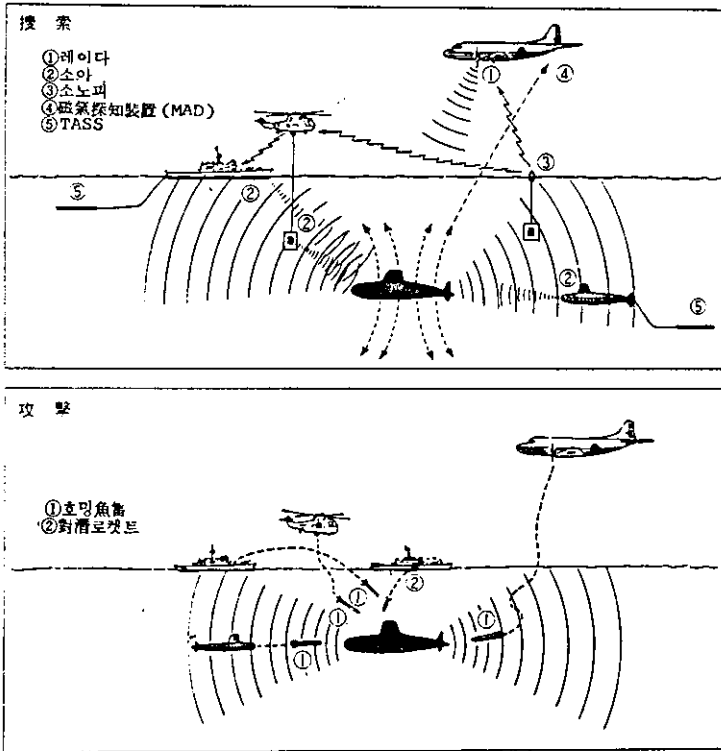
주요 해협에서는 이곳을 통과하려고 하는 적의 잠수함, 함정에 대해 호위함부대, 잠수함부대, 대잠기부대가 - 경우에 따라서는 陸·空自衛隊와 協同하여 - 해협통과를 저지한다. 이 作戰을 위해 對潛機, 對水上戰, 기뢰부설전 등을 한다.

또한 바다위의 防空은 호위함부대가 防空戰을 하여, 항행하는 선박들을 防護하는 외에도 방공자위대가 그 능력 범위내에서 방공작전을

한다.

이상의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진출을 저지하며 그 병력을 감소시키고, 적의 작전을 방해하는 등의 累積效果를 거두어 해상교통의 안전확보를 기도한다.

〈圖 2-4〉 海上에서의 防空의 例



註 : IR 레고이 : 赤外線을 방사함으로써 赤外線追尾미사일을 달 수 있다.

차프 : 레이더전파를 반사하여 항공기 함정 미사일들의 레이더에 假目標을 주는 알미늄箔들의 細片.

第 4 節 美日安全保障體制의 信賴性 確保

美日安全保障體制의 신뢰성 유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美日兩國은 모든 기회를 통해 끊임없는 대화를 함으로써 상호신뢰와 협조관계를 확립하며 美日의 防衛協力下에 각자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同體制가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美國政府 關係者와의 협의(第 3 部 第 8 章 第 1 節 參照)이외에 다음에서 論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1. 美日防衛協力— “美日防衛協력을 위한 指針”

(1) “指針”의 작성

美日安全保障條約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조약에 따라 유사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美日間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관련 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軍事面을 포함한 美日間의 협력형태에 관해서 研究・協議를 위해 美日安全保障協議委員會의 하부기구로 설치된 防衛協力小委員會에서 研究協議를 거듭한 끝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 “美日防衛協력을 위한 指針”(“指針”資料 15 參照)이 작성되었다. 이 “指針”은 昭和 53 年 11 월에 개최된 제 17 회 미일안전보장 협의 위원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았다.

“指針”은 금후 해야할 연구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外務大臣 및 防衛廳長官이 處理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내용이 미일방위협력의 형태에 관한 것이기에 시빌리언・콘트롤의 확보라는 면도 고려하여 昭和 53 年 11 月 개최회의에서 심의를 거쳤다. 또 閣議에 자료를 배포하여 所管大臣인 外務大臣 및 防衛廳長官이 發言하여 경위와 내용을 보고하였다. 동시에 防衛廳長官으로부터 “이 지

침에 따라 자위대가 미군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 작전계획의 연구작업에 대해서는 防衛廳長官이 책임을 지고 하고 싶다”는 뜻의 발언이 승낙을 받았다.

(2) “指針”의 前提條件

“指針”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① 군사협약에 관한 제문제, 일본헌법상의 제약에 관한 제문제 및 非核3原則은 연구·협약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② 연구·협약의 결론은 美日安全保障協議委員會에 보고하고 취급은 미일양국정부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그 결론은 양국정부의 입법, 예산 내지는 행정상의 조치를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指針”의 概要

“指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개 前 文

이 지침은 미일안전보장조약 및 그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일양국이 갖고 있는 권리 및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指針”이 기술하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편의제공 및 지원의 실시는 일본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내)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태세

① 日本은 자위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방위력을 보유하고, 또 시설·구역의 안정적 효과적 사용을 확보한다.

미국은 核抑止力을 보유함과 동시에 卽應部隊를 전방전개하며 지원할 수 있는 기타의 병력을 보유한다.

② 공동의 對處行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본방위를 위한 공동작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한다.

③ 작전정보 및 후방지원의 사항에 대해 공통의 實施要領을 연구한다.

④ 일본방위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교환한다.

⑤ 필요한 공동연습 및 공동훈련을 실시한다.

⑥ 보급, 수송, 정비, 시설 등 후방지원의 각기능에 관해서 연구한다.

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의 대외행동

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의 염려가 있을 경우

a.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자위대와 미군간에 調整機構를 개설한다.

b. 作戰準備에 관해서 공통의 준비단계를 미리 정해놓고,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선택된 준비단계에 따라 각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전준비를 실시한다.

②. 日本에 대한 무력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

a. 일본은 원칙상, 한정적이고 소규모적침략을 독자적으로 排除하고, 침략의 규모, 형태로 보아 자력으로 배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미국의 협력을 기다려 이것을 배제한다.

b. 自衛隊는 주로 일본 영역 및 그 주변의 海空域에서 방위작전을 하고, 미군은 자위대가 하는 작전을 지원하고 또 자위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기능을 보완하는 작전을 실시한다.

c. 자위대 및 미군은 긴밀한 협력하에 각각의 지휘계통에 따라서 행동한다.

d. 자위대 및 미군은 긴밀한 협력하에 정보활동을 실시한다.

e. 自衛隊 및 美軍은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후방지원활동을 실시한다.

라. 일본이외의 極東지역 사태로부터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의 美日兩國間の 협력

兩國政府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협의한다. 그리고 兩國政府는 안전보장조약과 기타 관계규정 및 일본의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편의제공의 형태에 대해서도 미리 서로 연구한다.

第5節 其他의 諸施策

1. 有事法制

일본이 유사시에 필요한 법제로서는 자위대의 행동에 관한 법제, 미군의 행동에 관한 법제, 자위대 및 미군의 행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키 위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종래에 해 온 유사법제의 연구는 이 중 자위대의 행동에 관한 법제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시빌리언·콘트롤의 원칙에 따라 昭和52年 8月 福田首相의 승인을 받아 三原防衛廳長官의 지시에 의해 개시되고 그 기본적인 생각은 昭和53年 9月の 見解에서 밝히고 있다. 이 見解에서論하는 바와 같이 自衛隊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해서 자위출동의 명령을 받는 事態에서의 자위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法制는 現行의 自衛隊法에 의해서 그의 骨幹은 整備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法制上的 불비한 점은 없는지, 불비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事項인가 등의 문제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防衛廳長官의 法令(第1分類)에 대해 昭和56年 4月に 그 문제점을 모아서 공표하고, 계속 다른 省廳所管의 法令(第2分類)에 대해 防衛廳의 입장에서 추려낸 關係法令 條文의 해석, 유사시의 適用關係등을 關係省廳에 조회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昭和59年 10月に 그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공표하였으며, 이것들의 分類에 관한 問題點의 整

리는 대개 종료된 것으로 생각된다(資料 19, 20 參照).

더욱이 所管省廳이 분명치 않은 사항에 관한 法令(第 3 分類)으로서는 가령 유사시 住民의 保護, 避難 또는 誘導를 적절히 행하는 措置, 민간선박과 민간항공기의 航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措置, 電波의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措置, 소위 제네바 4 條約에 따른 捕虜收容所의 설치등 포로취급의 國內法制化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政府全體가 취급해야 할 성격의 문제로서 개개의 구체적 검토사항에 대한 擔當省廳을 어디로 하는가 하는 금후의 과제에 대해서 內閣安全保障室이 여러가지 조정을 하고 있다.

2. 民間防衛

日本이 만약 침략을 받았을 경우 國民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國民의 防災나 救護, 避難 등을 위해 정부, 지방 공공단체와 國民이 일체가 되어 民間防衛體制를 확립할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民間防衛에 관한 노력은 또한 國民의 강한 防衛意思의 표현이기도 하고, 침략의 억지와 관련한 나라의 안전을 확보함에 주요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歐洲諸國에서는 제 2 차세계대전에서 市民의 死亡者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他國으로부터 武力攻撃을 받았을 경우에 이들의 被害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생겨날 것을 예상하여 民間防衛에 관한 노력을 해 왔다. 이들 나라에서는 관계 정부기구의 설치, 관계法律의 制定, 조직의 편성, 대피소를 건설하는 등 民間防衛體制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諸國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활단체의 계획지도하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평소부터 대피훈련 등의 民間防衛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活動은 결과적으로 平時에 돌발하는 天災地變 등에 대처하는 데도 크게 도움

이 된다(第4部 第3章 參照).

日本에서는 현재 民間防衛에 관해서는 불만한 것이 없다. 금후 국민의 콘센서스를 얻어 가면서 政府全體가 넓은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야 할 것이다.

-
- 註 1. 早期警戒機 :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중으로부터 침공기를 경계감시 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航空機.
2. 邀擊戰鬥機 : 내습하는 적의 항공기를 맞이하여 공격하면서 공대공미사일이나 기관포에 의해서 격추하는 것을 주임무로하는 戰鬥機.
3. 航空阻止 : 주로 支援戰鬥機에 의해서 해상에서는 艦船攻擊을 하며 침공 병력을 격파(해상격파)시키고, 또 상륙한 部隊에 대해서는 적의 후방 연락선, 자재집적소, 교통요로 등에 대한 항공공격을 하여 침공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말한다.
4. 師團 : 陸上戰鬥에 필요한 각종의 기능을 갖추고, 일정기간 독립된 전투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작전부대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5. 空挺攻擊 : 육상부대가 항공부대와 통합하여 항공기로 공중을 機動, 降下 또는 着陸하여 행하는 공격이며, 통상 특정지역을 확보하여 그 후의 지상 작전을 위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6. 해리봉攻擊 : 지상전투부대가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공중을 機動하고, 착륙해서 행하는 공격이며, 상대방의 弱點을 급습하기도 하고 재빨리 지형상의 요점을 확보하는 등 무력부대의 지상전투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第3部 日本防衛의 現況과 課題

第6章 自衛隊의 現況과 課題

第1節 主要作戰에 관한 防衛力의 개요

自衛隊는 “防衛計劃의 大綱”이 정한 방위력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여 中期防衛力整備計劃(第2章 第1節 參照)에 따른 防衛力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그 중 本節에서는 자위대의 주요한 작전인 防空, 上陸侵攻對策, 海上交通 安全確保의 各作戰에 관한 방위력 및 그것들의 능력발휘를 위한 태세·기능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한다.

1. 防空能力

근년의 항공기는 비행성능, 搭載電子機器나 미사일 등의 성능이 향상되어 그 공격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또한 레이더 사이드나 地對空誘導彈部隊에 대해 電波妨害를 하면서 超低高度나 高高度에서 高速으로 침입하기도 하고 원거리로부터 空對空미사일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등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邀擊戰鬥機, 地對空미사일(SAM) 등 裝備의 충실화, 근대화를 기하여 防空能力을 향상시키고 있다.

(1) 警戒監視·邀擊管制能力

航空自衛隊는 警戒監視·邀擊管制能力의 충실·향상을 위해서 新設

지 시스템의 운용을 작년도부터 개시하고 동시에 早期警戒機 E-2C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형의 固定式 3次元레이더裝置 및 이동식 경계감시시스템의 정비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다.

(2) 邀撃能力

① 邀撃戰鬥機

요격전투기는 성능향상이 뚜렷한 新銳機에 의한 침공에 대해서도 氣象이나 주야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비행성능이나 裝備를 갖추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航空自衛隊는 F-15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말현재 5個飛行隊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F-4EJ는 작년도말현재 5個飛行隊를 보유하고 있으나 防衛力の 정비·운용의 効率化·合理化를 위한 견지에서 그의 계속보유책을 채택하고 계속보유에 따른 상대적인 戰鬥能力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점차 改修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항공기의 侵入能力이 크게 향상된 데 대한 對處方案의 하나로서 邀撃戰鬥機가 사전에 공중초계·대기하는 空中警戒待機(CAP)가 있다. 이 경우 공중급유기를 사용하면 邀撃戰鬥機의 待機時間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효과도 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서는 空中給油機의 성능, 운용구상 등 空中給油機能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地對空誘導彈

주요지역의 방공화력으로서 航空自衛隊는 나이키J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後繼시스템인 패트리엇 시스템에로의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 陸上自衛隊는 호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점차 개량해 가고 있다.

③ 基地들의 防空火器

航空自衛隊는 항공기지나 레이더 사이트의 防空을 위한 장치로서 短 SAM, 휴대 SAM, 대공기관포 등의 警비를 추진하고 있다. 海上自衛隊는 기지의 防空用으로서 금년도 같은 短 SAM 등의 警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상에서 이동하는 부대나 艦船을 航空攻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警비에 대해서는 이 節의 第 2, 第 3 項에서 논하기로 한다.

(4) 地對空유도탄 페트리옛트

航空自衛隊는 금년 3월 教導高射隊(兵松)의 지대공유도탄 나이키를 페트리옛트로 개량하였다. 페트리옛트는 超低高度에서 高高度까지의 목표에 대해서 대처가능할 뿐 아니라 複合誘導方式을 채용하여 장거리에서의 유도정밀도, 동시 다목표 對處能力, ECM 對處能力, 기동성 등이 훌륭한 미사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美國, 西獨, 네델란드, 이탈리아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 着·上陸 侵攻對處能力

근년 外國에서는 지상부대의 戰車, 火砲들의 질적 향상이 현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대를 수송하는 함선이나 항공기는 搭載量이 늘어나는 등, 海上 및 航空輸送能力도 증대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이 부대들을 호위하는 艦艇에 미사일을 장비하게 되어 엄호하는 전투기의 성능도 향상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분야에서의 능력향상으로 인해 查 상륙부대는 광범한 上陸正面 뿐 아니라 空艇·해리폰部隊를 이용하여 내륙깊숙히까지 동시에 공격작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自衛隊는 海上에서의 對處能力의 강화나 日本의 지리적 특성에 알맞는 師團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등, 着·上陸侵攻對處能力의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海上에서의 對處能力

航空自衛隊는 防空을 함에 있어서 항공저지와 육·해작전의 직접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전투기부대로서 F-1 部隊를 3個飛行隊 保有하고 있다. 이 F-1의 攻擊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對艦船攻擊用으로 空對艦誘導彈 (ASM-1)이나 爆彈用誘導裝置의 整備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작년도부터 새로운 空對艦미사일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또한 F-1의 後續機로 次期支援戰鬥機 (FS-X)의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있다(第4章 및 第3章 第4節 參照).

육상자위대는 海上·海岸에서의 打撃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88式地對艦誘導彈 (SSM-1)의 整備를 추진하고 있다.

海上自衛隊는 해상 저지를 위한 함정 및 비행기의 對水上戰 能力의 整備를 추진하고 있다.(第3項 參照).

(2) 陸上에서의 對處能力

① 師團

師團의 근대화는 昭和 62年이래 北海島의 師團부터 시작하였으나, 금년도는 東北, 九州의 師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5) 師團의 近代化

육상자위력의 中核인 師團의 편성은 昭和 36 ~ 37年度에 개편된 것으로서 그 후 4半世紀間 그 테두리안에서 장비의 근대화를 하여왔으나, 최근 外國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단의 편성·장비의 近代化를 해 왔다.

이 때문에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例컨대 北海道의 師團에 대해서는 戰車, 自走火砲를 주체로 전투력을 충실히 하고, 本州등의 師團에 대해서는 對戰車火器 등을 주체로 기동력을 중시한 충실을 기하는 등, 현행의 정원내에서 편성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① 青函以北의 師團은 裝甲機動打撃力을 강화하기 위해 戰車大隊에 戰車를 증강함.
- ② 對戰車火力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차부대 등에 대전차유도탄발사장치를 증강함.
- ③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普通科 聯隊를 자동차화. 그리고 특히 北海道의 師團에게는 1 個普通科 聯隊를 裝甲化함.
- ④ 師團의 對空戰鬪機能을 강화하기 위해 高射特科大隊를 特科 聯隊로부터 독립시킴.
- ⑤ 化學防禦機能을 정비하기 위해서 화학방어소대를 新編함.
- ⑥ 後方支援機能의 일원화를 위해서 후방지원연대를 新編함.

② 主要陸上 戰鬪能力

가. 對地火力

야전포나 박격포들은 원거리에서 광범위하게 敵部隊를 사격하고 격파할 뿐만 아니라 敵에 접근하여 전투하는 부대의 행동을 직접 지원한다. 현재 야전포의 근대화를 위해서 203 mm 自走榴彈砲, 155 mm 榴彈砲 FH70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차, 장갑차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戰車와 더불어 對戰車火力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79式 舟艇對戰車誘導彈發射裝置, 87式對戰車誘導彈發射裝置, 87 mm 無反動砲의 정비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넓은 正面에서 신속히 空中機動하여 상공으로부터 전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對戰車誘導彈(TOW)과 空對地로켓트(ASR) 장비와 對戰車헬리콥터 AH-1S의 정비를 하고 있다.

나. 裝甲機動打撃力

장갑기동타격력의 중심인 戰車의 정비는 지금까지 61式戰車(90 mm 砲塔載)로부터 점차 74式戰車(105 mm 砲塔載機)로의 更新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을 더욱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新戰車(120 mm 砲塔載機)

를 개발중이다. 또 금년도 戰車에 붙어서 乘車한 채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裝甲戰鬪車의 정비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다.

다. 對空火力

넓은 범위에서 對空防禦網을 구성하여 航空攻擊에 대처하기 위한 中距離 對空火器로서 호크의 개량을, 단거리의 對空火器로서 短SAM, 携帶SAM, 自走高射機關砲를 장비하며 동시에 신 개인휴대SAM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라. 機動力

대기태세에 있는 陸上自衛隊는 18萬名の 세력으로 長大한 상륙가능한 正面으로부터의 침공이나 後方지역으로의 空挺·헤리본에 의한 침공에 대처하기 위해 戰鬪力을 신속히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동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점차 각종의 헬리콥터, 수송용 트럭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3) 作戰 全般을 통해서 필요한 能力

① 航空偵察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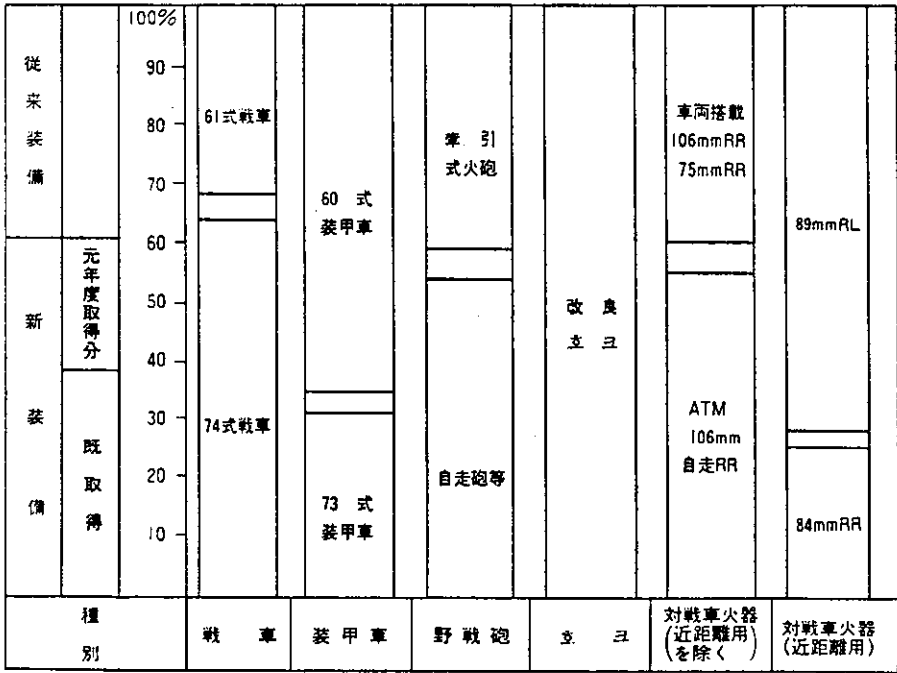
항공자위대는 航空偵察部隊로서 RF-4E部隊인 1개비행대를 갖고 있으나, 수적으로 不足하다. 이 때문에 現在 邀擊戰鬪機 F-4EJ의 일부를 偵察機로 전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改修試驗(1種)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육상자위대는 陸上 作戰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連絡偵察機나 觀測헬리콥터 등을 보유할 뿐 아니라 무인정찰기의 정비도 추진중에 있다.

② 輸送能力

육상자위대는 普通科聯隊와 같은 전투부대의 공중기동이나 보급원의 수송을 위해 헬리콥터團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수송헬리콥터 CH-47J를 정비하고 있다.

< 圖 3 - 1 > 陸上自衛隊의 主要裝備의 更新狀況



註 1. 野戰砲의 元年度 取得分 및 自走砲 등에는 155 mm 榴彈砲 FH 70 을 포함함.

2. RR : 無反動砲, ATM : 對戰車미사일, RL : 로켓트發射筒

海上自衛隊는 현재 輸送艦艇 9 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해상수송능력의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航空自衛隊는 수송기 C-1 및 C-130 H로 이루어진 3 個輸送航空隊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행장과 各基地 사이를 잇는 수송능력의 향상을 위해 輸送헬리콥터 CH-47J의 정비를 추진중에 있다.

3. 海上交通의 安全確保能力

(1) 對潛戰能力

근년 外國의 잠수함은 在來型에 대한 原子力推進型의 비율이 증대하고 高速持速力, 隱密性, 航續性, 搜索能力, 通信能力 등이 向上되었다. 그리고 對艦미사일(USM)장비의 일반화, 어뢰의 고성능화에다 기뢰부설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다 깊이, 보다 조용히 潛航이 가능하게 되는 등 고성능화의 경향에 있다. 이 때문에 해상자위대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의 充實・近代化에 노력하고 있다.

① 對潛海上艦艇

對潛海上艦艇에서는 기동성있게 운용하는 護衛隊群의 능력향상을 위해 對潛헬리콥터나 종합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장비하는 호위함의 정비를 주로 추진해 왔다. 현재는 연안해역의 경계・방비를 목적으로 하는 艦艇部隊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종래부터 장비하고 있는 소나에다 광역의 수색이 가능한 泳航式의 팻시브(聽音)방식의 소나(TASS)의 호위함에로의 장비를 추진하고 있다.

② 對潛航空機

固定翼對潛哨戒哨는 넓은 해역에서 잠수함을 수색하고, 이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격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으로써 對潛戰에는 不可缺한 것이다. 현재 海上自衛隊는 P-2J의 老朽化에 따라 고성능 잠수함에 대처할 수 있는 P-3C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對潛헬리콥터 부분에서는 작년도부터 HSS-2B의 後續機로서 수색능력, 정보의 교환・처리능력 등이 우월한 SH-60J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③ 潛水艦

잠수함은 잡음의 低減과 수중행동능력의 向上으로 隱密性의 향상,

잠수함용 TASS의 장비로 수색능력의 향상, 컴퓨터搭載로 情報處理能力의 향상 등에 노력하고 있다.

④ 其他

근년, 潛水艦의 靜肅化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對潛戰에 관한 각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對潛戰(ASW)센타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 음향정보수집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음향측정함의 정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高速 深深度潛航의 고성능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對潛用短魚雷 G-RX4의 개발도 착수하기로 하였다(第4節 參照).

(6) 音響測定艦

對潛戰(ASW)에서는 팻시브(聽音式)음향센서를 갖고 수색, 얻어진 음향신호를 카타로그 데이터와 비교조회하면서 수행하는 잠수함의 識別이 특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평소부터 潛水艦들의 음향신호들을 수집 분석하여 카타로그화하여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잠수함의 靜肅化로 인해 이와같은 情報의 수집 분석이 매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發生音의 변화로 기존의 음향 카다로그 데이터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音響情報收集能力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海上自衛隊가 금년도부터 정비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는 음향측정함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艦艇으로서 고성능의 聽音裝置(SUR TASS)를 泳航시켜 잠수함들의 음향정보를 보다 광역에 걸쳐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이 情報는 昭和 63年度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對潛戰(ASW)센타에서 분석하여 카다로그화 한다.

(2) 防空能力

근년 항공기는 속도나 航續距離 등의 비행성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空對艦미사일 (ASM)을 장비하여 함정이 장비하고 있는 艦對空 미사일 (SAM)의 사정권밖에서 함선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對艦미사일 (USM)등도 하늘로부터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자위대는 지휘관리시스템이나 대공방어망을 구성하는 電子戰裝置, 艦對空미사일, 對空砲, 高性能 20 mm機關砲 (CIWS)²⁾를 장비한 艦艇의 정비를 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이지스 시스템을 장비하는 신형 호위함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3) 對水上戰 能力

外國의 함정은 장거리 艦對艦미사일 (SSM)을 장비하는 추세에 있으며, 對水上戰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종래의 艦砲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해상자위대는 艦對艦미사일을 搭載하는 호위함을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水上艦艇 자체의 레이다로는 탐지할 수 없는 수평선에서 먼 목표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레이다나 전파탐지장치를 갖는 對潛헬리콥터의 搭載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固定翼對潛哨戒機나 잠수함에 있어서도 對艦미사일의 정비를 점차 추진하고 있다.

(4) 機雷戰³⁾ 能力

기뢰는 이것을 항만이나 水路에 부설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그 海域의 해상교통을 제약할 수가 있다.

근년 기뢰와 그 부설수단인 航空機등의 성능향상에 따라 機雷戰能力의 중요성이 증대해 가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對機雷戰을 하는 掃海艇部隊, 掃海헬리콥터部隊 (V-107A), 水中處分隊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도부터 中深度에 부

설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掃海艇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深深度敷設機雷를 제거할 수 있는 掃海艇의 정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 高感度機雷, 複合機雷⁴⁾에 대한 소해능력이 높은 掃海헬리콥터 MH-53 E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의 現在裝備 가운데에는 기뢰부설함, 掃海母艦, 잠수함, 固定翼對潛哨戒機가 機雷부설능력을 갖고 있다.

4. 能力發揮을 위한 態勢, 機能

자위대는 주요작전능력의 발휘에 필요한 각종 態勢·機能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1) 卽應態勢

즉응태세란 유사시에 自衛隊가 당장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部隊의 任務·特性에 따라서 미리 충분한 배려를 한 態勢이다.

즉응태세의 유지는 침략을 받았을 때 초기 단계의 피해로 局限시켜 사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卽應態勢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휘운용면에서의 태세 정비나 部隊가 고도의 훈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 필요한 인원·장비를 충족시키고, 隊員의 건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동시에 어뢰기뢰 미사일을 당장 사용가능한 상태로 두기 위한 調整을 할 시설이나 탄약고, 장비의 가동유지를 위한 정비능력 등을 보유해 둘 필요가 있다.

各 自衛隊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卽應態勢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 일부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陸上自衛隊는 과거 수년간 全體人員充足率이 定數에 대해서 約 86%로 되어 있다. 항시 卽應의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수율

채워놓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는 하나, 이러한 充足率까지 올리는 문제는 平時인 現下의 심한 財政事情下에서 유사시에 긴급히 충족이 가능한 轉職 部隊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부대운영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充足率을 어느 정도 낮추어 두는 것도 피치 못할 조치라고 생각한다. 육상자위대는 이러한 생각에서 제일선부대들의 卽應態勢를 확보해 오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근년의 師團 近代化 등에 따라 장비품의 유지운용을 위한 요원들의 보완도 필요하게 되었으며, 점차 人員充足率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北海道에서의 初期對處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本州 등에 배치하고 있는 戰車의 一部를 북해도에도 轉用配置를 금년부터 하기로 하였다.

해상자위대에서는 미사일, 탄약, 實裝化 된 魚雷를 항상 함정에 搭載하고 또 航空基地에 배치하여 機雷를 實裝化 된 상태로 보유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實裝調整場이나 탄약고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航空自衛隊는 지속적인 警戒待機를 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邀擊機에 미사일을 搭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롯트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비행시간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② 續戰能力

續戰能力이란 유사시 조직적인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히 무력공격을 자력으로 배제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美軍의 支援까지 받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속전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豫備自衛官의 확보, 탄약 등 작전용 자재의 비축, 수송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또 다음 項에서 보는 바와 같은 抗久性を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豫備自衛官制度는 방위출동시에 자위대의 실력을 급속히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 4萬7,900名의 예비자위관을 갖고 있다(陸上自衛隊 4萬6千名, 海上自衛隊 1,100名, 航空自衛隊 800名). 이들 豫備自衛官은 유사시에 후방경비, 후방지원, 기지방공 및 第一線部隊의 보충요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근대전의 특징중의 하나로서 탄약, 어뢰, 미사일 등을 비롯해서 作戰用資材의 사용량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들의 不足은 自衛隊의 능력발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유사시에는 긴급히 구입하기 곤란한 작전용자재에 대해서는 평시부터 備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그의 備蓄은 반드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력의 機動的 運用을 위한 작전용자재들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 수출능력의 충실에도 노력하고 있다.

③ 抗久性

抗久性的의 확보란 기지나 시설 등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간단히 그 機能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다. 抗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被害局限, 被害復舊, 代替機能의 확보 등의 방책이 있다.

현재 抗久성을 확보하기 위한 태세는 반드시 충분한 상태는 아니다. 이 때문에 被害局限을 위한 基地防空火器, 航空機用掩體, 주요시설의 지하화, 被害復舊를 위한 활주로복구맷트, 代替機能確保를 위한 이동식레이다, 이동식무선기, 통신시설의 다양화 등의 정비를 점차 추진하고 있다.

(2) 警戒監視・情報收集機能

自衛隊는 本節 第1項에서 論한 바와 같이 레이다 사이드의 레이다 등 각종 경계감시・정보수집수단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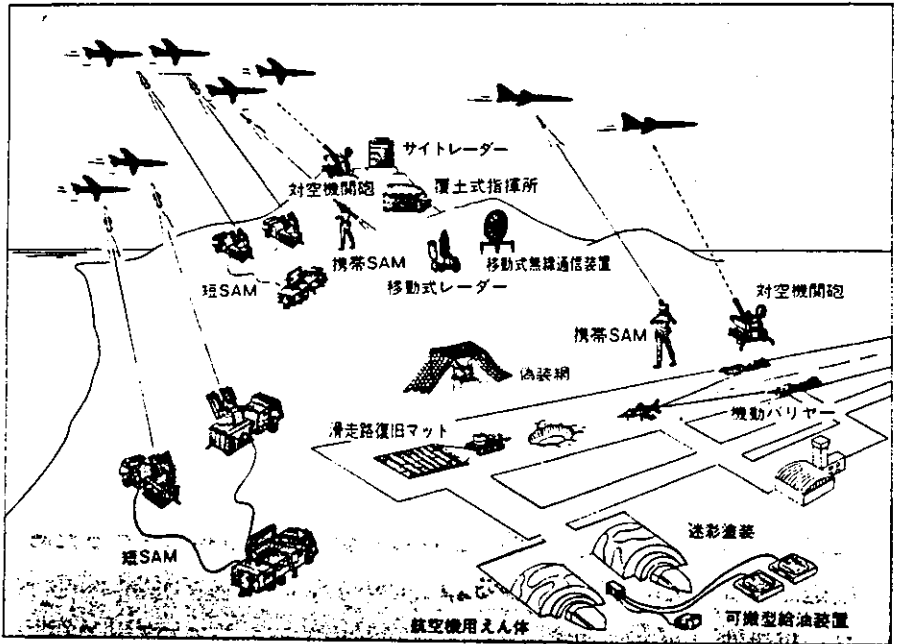
오늘날 미소양국은 항공기, 함정은 물론 衛星에 의한 정찰이나 조기

경계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主要各國에서는 각종의 수단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그 能力은 향상되고 있다. 自衛隊에서도 OTH레이다에 대해서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따라 그 유용성 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美國에서의 同레이다의 開發狀況 등 各種 調査를 하고 있다 (경계감시·정보수집활동의 상황에 대해서는 第2節 參照).

(3) 指揮通信機能

指揮通信은 防衛廳長官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중추로부터 各급 사령부, 말단의 各부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이를 指揮通信시스템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自衛隊의 지휘통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말하자

<圖 3-2> 基地의 抗堪化의 例



면 防衛力運用의 中樞神經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위대의 지휘통신시스템은 指揮中樞와 各自衛隊의 主要司令部와를 연결하는 中央指揮通信시스템을 비롯해서 각 자위대의 전술지휘통신시스템으로서, 육상자위대의 野外通信시스템, 해상자위대의 自衛艦隊指揮支援시스템(SF시스템), 항공자위대의 자동경계관제조직(벳지 시스템)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支援하며 일반 업무관리들을 지원하는 通信시스템으로서 항공보안관제시스템, 후방데이터 통신시스템, 自營의 電話網, 野戰特科射擊指揮시스템 등이 있다.

이 自衛隊의 指揮通信시스템은 지휘명령 정보들을 신속·확실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을 뿐 아니라 통신정보내용 등을 비밀로 하기 위한 保全성과 被害局限, 被害復舊, 代替機能의 확보라는 抗堪性を 겸비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급속히 고도화 다양화하는 전자 통신기술의 동향에 대응한 近代性を 갖추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자위대가 보유하는 각종 방위력이 統合되어,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防衛通信網의 近代化, 通信衛星의 이용 등 各種 施策을 추진하고 있다.

① 防衛統合디지털通信網(IDDN)의 整備

자위대의 다수의 指揮通信시스템의 共通傳送路로서 防衛마이크로회선이 있다. 현재 이 回線은 太平洋沿岸에 단일루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절될 경우에는 防衛마이크로回線을 傳送路로 하고 있는 많은 지휘통신시스템의 운용에 지장이 생기는 등 抗堪性에 결함이 생긴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위대의 지휘통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防衛廳에서는 昭和62年度부터 防衛統合 디지털通信網(IDDN)의 整備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책이 짜여지고 있다.

가. 東海쪽에 신규마이크로回線을 건설함으로써 마이크로回線의 核루트化

나. 通信衛星의 이용으로 傳送路의 立體化

다. 電子交換시스템의 導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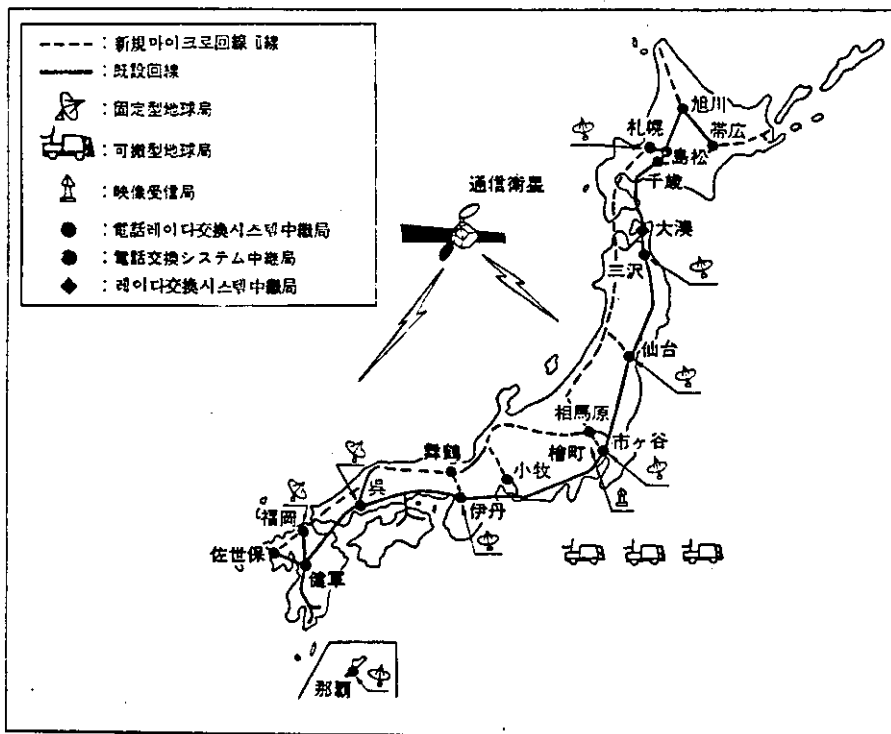
라. 防衛마이크로回線의 디지털化

② 通信衛星利用의 추진

통신위성을 이용한 통신기술의 진보와 보급은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通信衛星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서 防衛廳으로서도 자위대의 통신에 필요한 다양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신속·확실한

<圖 3-3>

IDDN 構想圖



통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國會決議의 취지를 참작하면서 그 이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資料 25, 26 參照).

이 때문에 前述한 IDDN 整備의 일환으로 통신위성의 이용으로 傳送路를 立體化할 뿐 아니라 海上通信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整備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海上에 전개한 함정 상호간, 함정과 육상기지간의 통신이 현재 주로 단파에 의존하고 있으나, 短波는 回線이 불안정하며, 또 자신의 위치가 밝혀지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施策을 통해서 指揮通信分野에서의 통신위성의 이용을 더욱 추진하게 되었다.

(4) 電子戰 機能

전자전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電磁波의 탐지, 逆利用 및 使用效果의 低下·無効化를 위한 활동과 我側 電磁波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電子戰은 電磁波의 사용을 방해하는 기술과 그에 대항하는 技術의 싸움이다. 그리고 電子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병기나 電子戰裝置의 性能·諸元 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데서 정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電磁波의 사용범위는 통신분야, 레이더 등의 수색기기, 미사일유도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이르고 있으며, 근년의 電子技術의 발달에 따라 電子戰의 優劣이 곧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관련정보의 축적, 各種 電子戰裝置의 연구개발, 장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後方支援·救難態勢

① 後方支援態勢

整備·補給·輸送·衛生 등의 후방지원은 作戰實施를 위한 基盤이며,

전투부대와 균형을 이루어 유지하며 원활히 기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後方支援 分野에서의 자위대의 태세는 아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救難態勢

자위대의 항공기나 함정 등이 不時着하든지 조난 당하는 경우 그 塔乘員이나 乘務員의 수색·구조를 하기 위해서 자위대는 救難機, 潛水艦救難母艦들을 주요한 항공기지나 함정기지에 항시 대기시키는 등의 救難態勢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災害派遣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가일층 향상을 위해서 新型救難헬리콥터(UH-60J)의 整備를 추진하고 있다.

第2節 研究開發

1. 研究開發의 意義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裝備의 高性能化나 複雜化 등 질적 변화는 현저하게 軍事戰略이나 戰術에 큰 변혁을 가져다 주었다. 그 때문에 防衛上 필요로 하는 裝備의 技術水準을 앞으로 유지 향상시켜야 함이 중요한 일로 되어 있으며, 外國들은 첨단기술을 응용한 장비의 연구 개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日本으로서도 防衛力의 整備에 있어서는 外國의 기술수준의 동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質的인 充實 向上에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문에 기술연구개발태세의 충실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우 費用 對 效果 등의 종합적 검토가 전제로 됨은 말할 것도 없으나 日本이 防衛上 필요로 하는 장비를 스스로 연구개발해서 생산한다는 것은 日本의 國土나 國情에 알맞는 장비를 가질 수가 있는 동

시에 장비 도입 후에도 기술진흥에 따른 필요한 改善이 가능하고 또 장기적인 裝備의 유지 보급이 용이하며 防衛生産基盤이나 技術力의 유지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7) 科學技術의 進進과 裝備의 進進

—航空自衛隊 戰闘機의 레이더와 火器管制裝置 등의 경우—

근년의 科學技術의 급속한 進進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컴퓨터技術 일 것이다. 1946年 美國에서 완성된 세계최초의 컴퓨터 ENIAC는 길이 30.5 m, 높이 3 m, 깊이 0.9 m, 무게 30톤의 거대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40년후인 현재의 퍼스널컴퓨터는 크기, 무게 모두 ENIAC에 비하면 대개 千分の 1이면서 계산속도는 실로 約 100萬倍나 된다. 그동안 컴퓨터를 구성하는 素子は 第1世代의 眞空管에서, 第2世代의 트랜지스터 第3世代의 IC, 第3.5世代의 LSI, 第4世代의 超LSI로 進進하고 있으며, 軍事分野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航空自衛隊가 도입한 전투기의 레이더나 화기관제장치 등에 대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航空自衛隊 창설직후인 昭和 30年度부터 취득을 개시한 F-86F는 第1세대 컴퓨터가 활약하던 시대의 戰闘機이며, 眞空管을 사용한 거리를 측정하는 정도의 단순한 레이더만을 장치한데 불과했다.

第2세대 컴퓨터時代인 昭和 36年度부터 취득을 개시한 F-104J는 眞空管을 사용한 목표의 거리와 방위를 계속할 수 있는 레이더나 機種의 射擊管制裝置, 트랜지스터기술을 사용하여 自機에 레이더가 照射된 것을 알려주는 레이더警戒裝置, 空對空미사일 등을 탑재하게 되었다.

第3세대 컴퓨터時代인 昭和 40年度부터 취득하기 시작한 F-4EJ에 이르러 射擊管制用인 아날로그의 컴퓨터가 장치되었다.

第3·5세대 컴퓨터時代인 昭和 52年度부터 취득을 개시한 F-1 支援 戰闘機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컴퓨터가 탑재되어 對地攻擊에서 空中戰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場面에서의 화기관제가 용이하게 되었다.

第4세대 컴퓨터時代인 昭和 55年度부터 취득을 개시한 F-15는 디지털

달신호처리를 하는 센서가 채용되어 塔截火器, 目標, 飛行諸元 등의 집약화된 정보를 헤드 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파이롯트는 이 하나의 디스플레이만 보아도 상황과악이 되며 복잡 고도화하는 탑재무기의 관제도 용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레이더가 下方探知(북 다운) 능력도 갖게 되었다.

장래의 戰鬥機는 소형의 강력한 컴퓨터를 가질 뿐 아니라 人工知能研究의 성과를 채용함으로써 복잡한 電子戰環境속에서 항공기나 지상으로부터의 위협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파이롯트의 판단을 도와주며 종래에 따로 따로 행하여진 화기와 비행의 制御를 종합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研究開發의 方向

日本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공업력을 갖고 있으나, 첨단기술 특히 汎用的 첨단기술 裝備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해 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훌륭한 技術力은 裝備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데 튼튼한 기반으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防衛廳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세라믹스나 複合材 등의 新素材와 마이크로 에レクト로닉스 등의 첨단技術分野에서의 훌륭한 民間技術力을 연구개발의 기반으로 하고, 특히 기초적인 연구에서는 民間에게 크게 의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를 民間의 技術力을 앞으로 선진적인 장비에 알맞도록 技術研究를 하는 동시에 이러한 연구성과를 시스템으로 整理하여 日本의 독자적인 運用에 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外國의 기술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裝備의 効率的인 整備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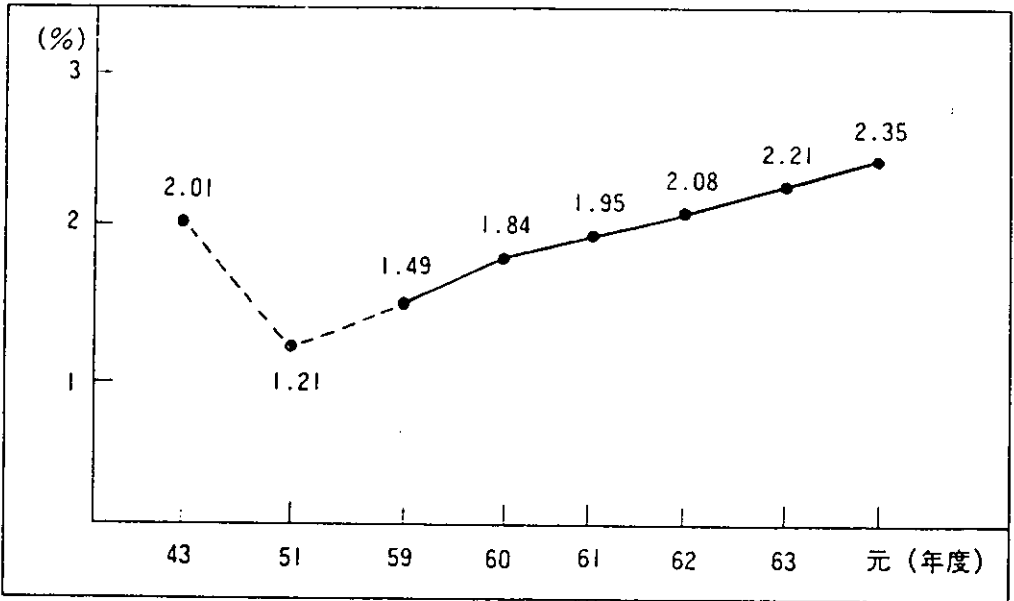
그리고 日本의 훌륭한 技術을 결집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美日間의 防衛協力體系를 진전시킬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研究開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진전에 배려를 하고 있다.

3. 研究開發의 着手

防衛廳은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 技術研究開發의 추진에 노력해 왔으나 연구개발비가 防衛關係費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국의 研究開發費의 算出方法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서방 주요국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이 때문에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서도 연구개발을 위한 경비를 점차 증가시켜 期間末에는 技術研究本部豫算⁵⁾이 防衛關係費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로 될 것을 당면의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주된 연구개발의 事例는 다음과 같다.

〈圖 3-4〉 防衛關係費에서 차지하는 技術研究本部豫算 比率의 推移



(1) 次期支援戰鬥機 (FS-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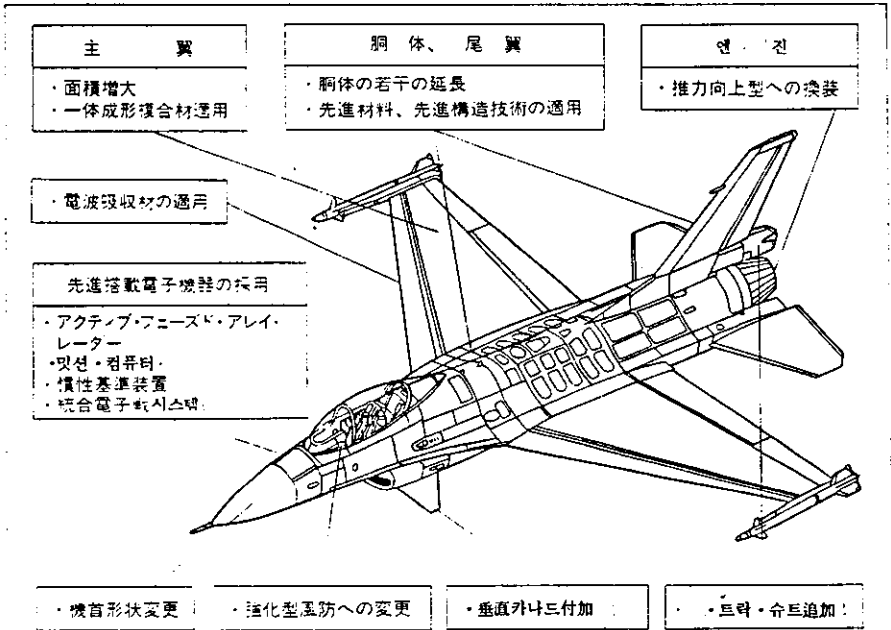
航空自衛隊는 “防衛計劃의 大綱”에 있는 바와 같이 영토침범이나

항공침공에 대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는態勢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13個飛行隊의 戰鬥機部隊를 보유하고 그 중 支援戰鬥機部隊 3個飛行隊에 대해서는 上陸侵攻阻止나 對地支援의 임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비해 왔다.

현재 支援戰鬥機로서 F-1을 보유하고 있으나, F-1이 1990年代 後半부터 점차 減勢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여 支援戰鬥機部隊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S-X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FS-X는 21世紀初期에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기술수준動向에 대응해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 필요하며,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는 “別途로 檢討한 후 必要한 措置를 강구한다”라는 취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FS-X에 관한 조치로서는 日本의 運用構想, 地理的 特性 등에 적합하도록 美日의 활용한 기

〈圖 3-5〉 F-16의 改造概要와 적용되는 先進技術



술을 결집하여 F-16을 개조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개발은 昭和 63 年度부터 平成 8 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設計 試作, 飛行試驗 등을 하기로 되어 있다.

F-16 개조의 概要와 적용할 예정인 주된 선진기술은 第 3-6 圖와 같다.

CCV 技術	컴퓨터 등을 구사하여 복잡한 조종·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上下左右로 이동하기로 하는 극히 고도의 運動性을 실현하는 기술이며, 空中戰, 地上攻擊 미사일을 피하는 등으로 매우 유리하다.(CCV:Control Configured Vehicle)
一體形成複合材 一次構造技術	主翼構造 등의 일차구조에 섬유강력프라스틱의 複合材를 사용해서, 例컨대 主翼의 도리(桁), 가장자리 外板을 一體로 하여 형성하고 제조하는 기술이며, 機體의 輕量化, 工數의 생략, 生産코스트의 低減이 가능하다.
스텔스技術	航空機의 生存性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이더전파를 反射하기 쉬운 부분을 電波吸收材(레이더電波가 機體에 반사하고 되돌아 가는 量을 減少시키는 材料)로 표면을 감싸서 적으로부터 발견하기 힘들게 하는 기술이다.
액티브·웨이스트·어레이·레이	다수의 放射素子(하나 하나가 작은 레이더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레이더 빔을, 안테나面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고속으로 그리고 임의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레이더기술이며, 多目標同時追尾

다技術	의 확대, 對艦・對空 同時搜索能力 등을 부가하게 된다.
-----	--------------------------------

(2) 師團通信시스템

師團通信시스템은 사단 등의 骨幹通信網으로서 지휘 통제 및 情報送達에 사용하는 것이다.

주요한 특징은 통신방해 등에서의 抗堪性 및 師團의 신속한 작전에 따르는 機動性を 높이는 것 등이다.

개발개시는 昭和 63年度이며 완료는 平成 5年度로 예정하고 있다.

(3) 短SAM(改)

短SAM(改)은 침공하는 항공기를 격파하기 위해 81式短距離 地對空誘導彈을 개조하여 對妨害性, 全天候性を 향상시키고 사정거리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그 주된 특징은 현재의 81式短距離 地對空誘導彈의 적외선유도방식을 可視 / 赤外線複合의 晝像誘導方式으로 개량하고(光波彈), 더욱이 액티브電波誘導方式의 彈種(電波彈)을 추가하여 이 2종류의 彈種을 병용함으로써 훌륭한 對放害能力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발개시는 平成元年度이며, 완료는 6年度로 예정하고 있다.

對潛用短魚雷(G-R×4)는 高速 深深度潛航의 고성능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使用되는 것이다.

주된 특징은 리튬 엔진을 사용하고 훌륭한 運動能力 對妨害能力 등을 갖는다는 것이다.

개발개시는 平成元年度이며, 완료는 6年度로 예정하고 있다.

第3節 人事施策

組織의 기반은 “사람”이다. 裝備가 아무리 진보하고 근대화해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隊員이다. 組織의 運營은 결국 隊員 各者의 역량에 달려 있다.

自衛隊가 장래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自衛隊가 隊員에게 보다 매력있는 직장으로 되는 것이 必要하며, 또 個個의 隊員이 그의 임무에 긍지를 갖고 安心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本節에서는 이들 대원에 관한 임용제도 모집, 처우, 취직보호 등의 인사시책에 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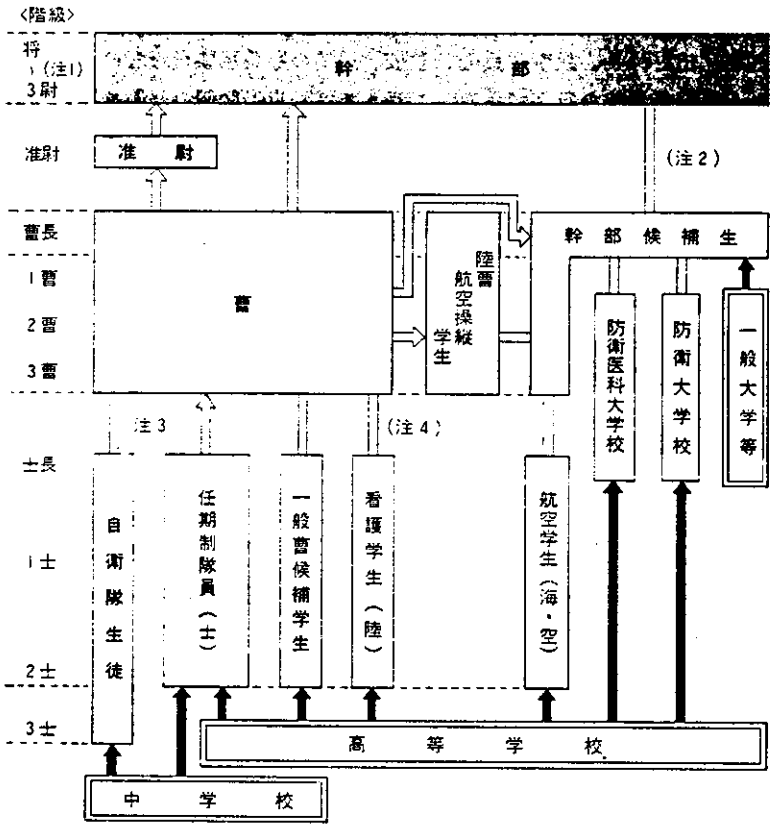
1. 任用・募集

自衛隊는 그 임무의 성격상 조직을 항상 精銳한 狀態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任期制⁶⁾와 停年制(曹<下士官>이상의 대다수는 50才代 後半에 停年이 되는 소위 低令停年制)의 兩者를 병용하고 있다.

自衛官의 임용은 모두 본인의 自願의사에 따라 임용한다는 志願制度로서 전도유명한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넓게 門호를 개방하고 있다. 幹部候補者로 임용될 경우(幹部候補生), 下士官候補者로 임용될 경우(一般下士官候補生 등) 이외에는 任期制度로서 2等陸, 海, 空士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上位階級에까지 昇進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채용되는 自衛官과 함께 방위대학교 학생들을 추가하면 年間總採用數는 약 2萬6千名(昭和 63年度)이 되나, 이 採用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任期制의 2士男子의 모집은 매년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 그 이유는 2士男子의 모집인원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모집대상이 되는 靑少年의 緣故地就職志向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과 任期制

〈圖 3-6〉 自衛官의 任用制度



- 註 1. 幹部의 계급은 將, 將補, 1佐, 2佐, 3佐, 1尉, 2尉, 3尉로 區分.
2. 醫料, 齒科幹部候補生은 醫師, 齒科醫師國家試驗에 합격하고 소정의 敎育 훈련을 수료하며 2尉로 昇任됨.
3. 通信敎育 등으로 生徒過程의 敎育終了로 高等敎育 졸업자격을 취득함.
4. 看護婦 國家試驗에 합격하면 2曹에 昇任됨.
5. 採用試驗 : 試驗 또는 선발.

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등에 의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이 2士男子의 응모 適齡인구(18才以上 25才未滿)는 平成 5年度의 약 700萬名을 피크로 점차 감소하고, 특히 18才의 경우 平成 3年度의 약 100萬名에서 平成 15年度에는 약 70萬名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自衛官의 모집환경은 일단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전국 50개소의 自衛隊 地方連絡部가 都·道·府·縣 知事, 市·町·村長, 教育委員會, 學校, 民間의 모집담당원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募集業務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自衛隊側의 노력이나 관계자의 협력에 의해 所要되는 數를 확보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關係者의 충분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향이 있는 등 圓滑한 業務遂行을 위한 태세가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훌륭한 자질을 갖춘 新隊員의 확보는 自衛隊에 필요한 精銳性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집업무에 대해서는 금후에도 한층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8) 婦人自衛官

婦人自衛官의 배치는 자위대발족당초 看護法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昭和 42年度부터는 陸上自衛隊의 통신職域에, 昭和 49年度부터는 海·空 自衛隊의 通信 職域에도 확대되었다. 그 후 配置職域은 다시 확대되어 금년 3월말현재 自衛隊의 全職域에 대한 婦人自衛官에게 개방된 職域의 비율은 약 77%이며, 많은 職域에서 婦人自衛官이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航空管制官(陸), 交通艇船長(海), 警戒管制官(空)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婦人自衛官의 인원규모는 금년 3월말 현재 看護職域이 1,046名, 醫官 職域이 35名, 一般職域이 3,843名, 합계 4,294名인데, 장래에는 一般 職域의 婦人自衛官 인원규모를 5,000名으로 計劃하고 있다.

또 防衛醫科大學校에서는 昭和 59年度 채용시험부터 女子에게도 分호를 개방하여 매년 여자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2. 隊員의 處遇・生活環境

(1) 隊員의 처우

自衛官의 근무는 그 임무의 성격에 따라 常時勤務態勢, 낙도・원격 지근무, 항공기탑승, 잠수함탑선, 낙하선강하, 不發彈處理勤務 등 일반 직장에 비해서 엄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任期制隊員 및 低令停年制 隊員의 대부분이 자위대퇴직후 재취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防衛廳에서는 人事施策面에서

① 一般職 國家公務員과 같고, 그리고 自衛官의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의 지급

② 任期制 또는 低令停年制를 고려한 就職援護, 퇴직수당・연금 제도 등 극히 세심한 데까지 배려하고 있다.

(2) 生活環境

自衛隊의 막사나 숙소 등의 생활관련 施設은 양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낡아서 일반국민의 住居環境과 비교해 볼때 뒤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막사는 三段침대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증설, 노후막사의 개수 등, 숙소의 신설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老朽宿所를 개축하고 있다. 기타 食堂, 浴場, 體育館, พล場, 厚生센터 등도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艦艇乘船魅力化施策으로서 水上艦艇의 曹士用침대의 2段化나 潛水艦乘務員用的 陸上待機所의 정비도 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寒冷地域의 整備工場의 난방화를 촉진하고 있다.

3. 就職援護・年金

(1) 就職援護

自衛隊는 任期制 및 低令停年制를 취하고 있는 데서 自衛官의 대부분은 임기만료 혹은 정년퇴직후의 생활기반의 확보 때문에 再就職이

필요하게 된다. 그중 日本의 雇傭慣行으로 보면 中途採用時에는 특히 불리한 취급을 받기 쉬운 中高年令의 停年退職者數는 최근 수년간 매년도 약 5千名으로부터 약 7千名정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表 3 - 1〉 自衛官의 停年年令

階 級	年 齡	階 級	年 齡	階 級	年 齡
陸 將 海 將 空 將	58 歲	1 等陸尉 1 等海尉 1 等空尉	53 歲	陸 曹長 海 曹長 空 曹長	53 歲
陸 將補 海 將補 空 將補	56 歲	2 等陸尉 2 等海尉 2 等空尉	53 歲	1 等陸曹 1 等海曹 1 等空曹	52 歲
1 等陸佐 1 等海佐 1 等空佐	55 歲	3 等陸尉 3 等海尉 3 等空尉	53 歲	2 等陸曹 2 等海曹 2 等空曹	50 歲
2 等陸佐 2 等海佐 2 等空佐	54 歲	准陸尉 准海尉 准空尉	53 歲	3 等陸曹 3 等海曹 3 等空曹	50 歲
3 等陸佐 3 等海佐 3 等空佐	54 歲				

(備考)

1. 統合幕僚會議議長, 陸上幕僚長, 海上幕僚長 또는 航空幕僚長의 職에 있는 陸將, 海將 또는 空將인 自衛官의 停年은 60才로 한다.
2. 醫師 또는 齒科醫師인 自衛官의 정년은 각각의 계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연령에 2년을 가산한 年令으로 한다.

이 때문에 防衛廳에서는 퇴직하는 自衛官의 재취직을 원활하고 유리하게 실시하는 것을 人事施策上 最중요사항의 하나로 하여, 希望者에 대해 〈表 3 -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各種 就職援護施策을 하고 있다. 이들 施策中 기능훈련을 보면 訓練을 종료한 자의 대부분은 公的 資格을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退職하는 自衛官의 再就職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職業紹介가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財團法人 自衛隊援護協會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勞動大臣의 허가를 얻어 退職하는 自衛官에 대해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施策의 결과 임기만료되어 퇴직하는 自衛官은 물론, 停年退職 自衛官에 대해서도 再就職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원 再就職이 결정되고 있다.

<表 3 - 2 > 援護施策과 그의 內容

援護 施策		內 容
援護教育	職業適性檢査	적성에 알맞는 進路指導를 하기 위한 檢査
	기술 훈련	초급의 公資格試驗에 合格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훈련 (大型特殊自動車, 情報處理技術 크레인, 自動車整備, 보일러, 위험물취급등)
	자동차 조종 훈련	自動車運轉면허의 취득
	업무관리교육	停年退職豫定自衛官에게 사회에의 적응성을 계발하는 동시에 재취직 및 퇴직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부여하기 위한 경영관리등의 교육
	취직보도교육	임기만료퇴직예정自衛官에게 직업선택의 知識 및 재취직을 위한 마음의 준비
就職援護	停年前 이동	정년퇴직후의 住居예정지의 近距離部隊로 이동
	就職 援護	자위대원호협회 및 직업안정기관이 하는 직업소개업무에 협력
	취직원호홍보	企業에 대한 퇴직예정자위관의 特性의 弘報
援護擔當者教育		원호담당자의 질적向上을 위해 勞動行政 원호활동의 教育

더욱이 退職自衛官은 제조업 및 서비스業을 비롯해서 광범·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이들 민간기업에 취업한 退職自衛官은 전반적으로 책임감, 근면성, 氣力, 體力, 規律 등의 면에서 훌륭하며, 특히 停年退職者는 높은 指導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企業側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防衛廳으로서의 계속 援護教育의 強化再就職處의 확대를 하여, 就職 援護의 충실을 기하고 있으나, 금후에도 더욱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自衛官 特有의 任期制, 低令停年制에 대한 國民들의 폭넓은 이해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망된다.

(2) 年金

自衛官의 年金은 一般公務員의 支給開始 年令이 원칙적으로 60才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低令停年制를 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정년퇴직과 동시에 年金이 지급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금후 年金의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賦金을 납입하는 기간이 짧고 受給期間이 긴 自衛官의 부금부담은 앞으로 더욱 높아 저서 과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公的 年金制度의 일원화의 흐름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것인가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低令停年制의 自衛官이 정년퇴직후의 생활에 불안을 갖지 않고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함으로써 높은 士氣와 資質이 우수한 대원을 자위대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低令停年制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이 불가결한 것이다.

이 문제는 公的 年金制度의 추이, 國家公務員의 급여제도 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現在 部外의 學識經驗者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응책의 형태에 대해서 低令停年制에서 기인하는 人事施策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
- 註 1) ECM : 電子對策. 電子戰 구분의 하나로서, 電磁波를 이용하는 敵의 機器나 戰法의 效果를 無效화 내지는 저하시킬 수가 있다.
- 2) CIWS : 艦艇에 접근한 미사일을 격파하는 최종단계의 防禦시스템. 目標의 搜索에서 발사까지 자동처리하는 기능을 갖는 射擊指揮장치와 機關砲등을 組立한 것.
- 3) 機雷戰 : 機雷를 부설하는 機雷敷設戰과 부설된 機雷를 除去 혹은 無力化시키는 對機雷戰을 합한 작전임.
- 4) 複合機雷 : 선박항행에 따른 磁氣·音響, 水壓 등의 특성의 변화중 2個 이상을 檢出한 경우에 작동하는 機雷임.
- 5) 技術研究本部 : 陸·海·空 各自衛隊의 장비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防衛廳의 機關.
- 6) 任期制 : 1任期 2年 또는 3年을 임기기간으로 하여 士인 自衛官에게 任用하는 制度. 繼續任用(2年)의 制度가 있다.

第 7 章 防衛力 整備

第 1 節 中期防衛力整備計劃

1. 中期防衛力整備計劃

政府는 昭和 60 年 9 月, 昭和 61 年부터 5 個年間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防衛計劃의 大綱”(第 2 部 第 3 章 第 1 節 參照)에서 제시하고 있는 防衛力の 水準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中期防衛力整備 計劃을 책정하였다.(資料 11 參照).

현재 日本의 防衛力整備는 동계획을 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1) 計劃의 概要

計劃의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있다.

① 國際軍事情勢와 外國의 기술수준의 동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防衛力の 整備를 위해서 陸上, 海上 및 航空 自衛隊의 각각의 각종방위기능에 대해서 새로 정밀조사하고 자원의 중점배분에 노력하는 것.

② 各自衛隊의 유기적 협력체제의 촉진 및 통합운용효과의 발휘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

그리고 구체적 事業의 推進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고 있다.

① 邀擊戰鬥機, 地對空誘導彈 등의 근대화에 의한 本土防空 能力의 향상에 노력할 것.

② 護衛艦, 固定翼對潛 哨戒機 등의 충실, 근대화에 의한 일본주변 해역 海上交通의 안전확보능력을 향상키 위해 노력할 것.

③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師團의 近代化, 編成의 多樣化, 海上, 海岸擊破能力 등의 강화에 의한 上陸 침공대처능력의 향상에 노력할 것.

④ 正面과 後方간에 균형이 잡힌 질높은 防衛力을 정비할 것. 특히 정보, 정찰, 지휘통신능력, 繼戰能力, 卽應態勢 및 抗堪性의 향상 및 기술연구개발의 추진을 중시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체제 등의 충실로 練度向上 및 隊員의 生活環境의 개선에 배려할 것.

⑤ 防衛力의 整備 運用의 兩面에 걸친 효율화 합리화를 기할 것.

(2) 所要經費

이 計劃의 실시에 필요한 防衛關係費 總額의 한도는 昭和 60年度가격으로 대개 18兆 4,000億圓 정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도마다豫算編成時에는 그 이상의 効率化, 合理化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때 그때의 經濟財政事情 등을 감안하여 나라의 其他方面의 諸施策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결정하기로 한다.

2. “今後的 防衛力整備에 관해서” (昭和 62年 1月 24日 安全保障會議 決定, 閣議決定)

政府는 昭和 62年 1月, 昭和 51년에 결정된 “當面の 防衛力整備에 대하여” (所謂 GNP의 1% 範圍)를 대신하여 “今後的 防衛力整備에 대하여”를 결정하여 그것을 防衛力整備에 필요한 經費의 지침으

로 하고 있다(資料 12 參照).

그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평화헌법하에서 專守防衛에 칠저할 것. 美日安保 體制를 견지함과 동시에 절도있는 防衛力을 整備하는 등 日本이 지금까지 취해온 防衛에 관한 基本方針을 금후에도 계속 견지한다.

② 그리고 中期防衛力 整備計劃期間中の 매년도의 방위관계비는 이 計劃에 정해진 所要經費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이 所要經費의 總額은 5개년간 經費의 구체적인 한도로 되었다. 이 점을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해 同計劃은 3년후에 새로 작성하여 고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③ 昭和 66 年度(平成 3 年度)이후의 防衛關係費의 形態는 中期防衛力整備計劃 종료까지 새로운 국제정세와 경제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평화국가로서 日本의 基本方針下에서 결정한다.

④ 또한 昭和 51 년에 결정된 “當面の 防衛力整備에 관하여”가 지금까지 방위력정비를 위한 經費의 指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에 비추어 이 決定이 제시한 절도있는 防衛力의 정비를 한다는 정신을 계속 존중한다.

3. 平成 3 年度 以後의 防衛力整備에 관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일본으로서는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따라 방위력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계획은 平成 2 年度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中期防衛力 整備計劃 종료후의 防衛力整備를 위해 政府는 昭和 63 年 12 月 22 日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현행과 같은 中期計劃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이 政府레벨의 中期計劃을 策定하는 것은, 中期防衛力 整備計劃 종료후에도 防衛力整備를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그리고 적절한 文民統制의 충실이라는 觀點에서 보아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計劃의 策定은 昭和 62年 1月の 閣議決定에도 있는 바와 같이 憲法 및 專守防衛와 같은 기본방침을 따르며 국제정세와 경제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면서 昭和 51年 11月の 閣議決定인 절도있는 방위력의 정비를 행한다는 정신을 계속 존중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第 2 節 平成元年度の 防衛力整備

1. 基本方針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이 목표로 하고 있는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위력은 陸上裝備, 艦艇, 航空機 등의 正面裝備의 정비와 함께 도입되는 장비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後方支援態勢를 整備함으로써 처음으로 形成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平成元年度の 방위력정비에 관해서는

- ①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第 4 年度로서 착실한 정비를 실시하며,
- ② 外國의 기술수준의 동향에 상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높은 防衛力을 정비하여
- ③ 특히 指揮通信・情報機能의 충실, 練度の 향상 및 隊員施策을 중시하고 正面・後方の 균형 및 統合運用態勢의 충실을 기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主要整備內容

(1) 正面裝備의 충실 및 근대화

正面裝備의 整備計劃은 <表 3-3>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로이다.

① 陸上防衛力

師團의 近代化 및 對戰車, 特科 및 對海上火力, 機動力 등의 향상을 중시하여 장비를 조달한다. 더욱이 금년도는 裝甲戰鬪車, 新小銃을 새로 조달한다.

<表 3-3> 平成元年度에 調達하는 主要裝備

	種 類	單 位	調 達 量	
			63 年度	元年度
陸 上 自 衛 隊	新小銃	丁	-	1,803
	84 mm 무반동포	門	227	240
	87 式대전차유도탄발사장치	基	24	24
	79 式對舟艇對戰車誘導彈發射裝置	基	28	28
	155 mm 유탄포 F H70	門	6	6
	87 式自走高射機關砲	兩	8	8
	74 式戰車	兩	52	56
	裝甲戰鬪車	兩	-	8
	73 式장갑차	兩	23	23
	82 式지휘통신차	兩	22	24
	82 式정찰경계차	兩	15	16
	87 式砲側彈藥車	兩	8	8
	化學防護車	兩	3	3
	대전차헬리콥타(AH-1S)	機	8	8
	관측헬리콥타(OH-6D)	機	11	11
多用途헬리콥타(HU-1H)	機	8	10	

	種 類	單 位	調 達 量	
			63年度	元年度
陸 上 自 防 隊	수송헬리콥타 (CH-47J)	機	5	5
	지대공유도탄 (개량호크)의 개선	群	1	1
	81式단거리지대공유도탄 (短SAM)	基	8	4
	휴대식지대공유도탄 (휴대SAM)	基	43	44
	88式지대함유도탄 (SSM-1)	基	6	16
海 上 自 衛 隊	7,200톤型 호위함	隻	1	—
	1,900톤型 호위함	隻	—	2
	2,400톤型 잠수함	隻	1	1
	1,000톤型 掃海艦	隻	—	2
	490톤型 掃海艇	隻	2	—
	2,800톤型 音響測定艦	隻	—	1
	固定翼對潛哨戒機 (P-3C)	機	9	10
	對潛헬리콥타 (SH-60J)	機	12	12
	掃海헬리콥타 (MH-53E)	機	—	4
	救難飛行艇 (US-1A)	機	1	—
	訓練支援機 (U-36A)	機	1	1
	電子戰데이터蒐集機 (EP-3)	機	1	—
	連絡機 (LC-90)	機	—	2
	練習機 (T-5)	機	3	2
	救難헬리콥타 (UH-60J)	機	—	3
	연습헬리콥타 (OH-6D)	機	—	2
81式단거리지대공유도탄 (短SAM)	基	—	2	
휴대식지대공유도탄 (휴대SAM)	基	—	24	

	種 類	單 位	調 達 量	
			63年度	元年度
航 空 自 衛 隊	遊擊戰鬥機 (F-15)	機	12	11
	수송기 (C-130H)	機	2	—
	수송헬리콥터 (CH-47J)	機	3	2
	早期警戒機 (E-2C)	機	—	3
	中等練習機 (T-4)	機	20	20
	救難헬리콥터 (UH-60J)	機	3	2
	지대공유도탄 (베트리오투트)	群	1	1
	81식단거리지대공유도탄 (단SAM)	基	4	4
	휴대식지대공유도탄 (携帶SAM)	基	72	48

② 海上自衛力

對潛能力, 防空能力, 對機雷戰能力 등의 향상을 중시해서 장비를 조달한다. 더욱이 금년도는 深深度敷設機雷를 제거할 수 있는 掃海艦, 音響測定艦을 새로 조달한다.

③ 航空防衛力

防空能力, 空中輸送能力 등의 향상을 중시하여 장비를 조달한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항공정찰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現在の F-4EJ를 偵察機로 전용하기 위한 試改修에 착수한다.

(2) 繼戰能力・即應態勢・抗堪性の 向上

① 繼戰能力的 향상을 위해서 계속 탄약비축을 추진한다.

② 即應態勢의 향상을 위해서 육상자위대의 人員充足率을 0.05% 높여서 86.5%로 한다. 그 밖에 계속 魚雷機雷의 實裝化, 탄약고의 整備를 추진한다.

③ 抗堪性的 향상을 위해서 계속 基地防空用的 短SAM, 携帶SAM, 대공기관포를 정비하고 航空機用掩體, 滑走路復舊벨트 등의 정비도 한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航空自衛隊에 뒤따라 海上自衛隊에도 基地防空用的 短SAM등을 새로 조달한다.

(3) 指揮通信, 情報機能의 充實

① 防衛通信의 취약성의 계획적 해소와 기능적으로 낙후된 분야의 早期解消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防衛統合 디지털통신網(IDDN)의 정비, 통신의 秘匿化를 추진하여 通信網의 抗堪性 등을 향상한다.

(나) 潛水艦用超長波(VLF)송신소, 함정용 위성통신기능을 정비하여 해상통신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다) 固定式 3次元레이다裝置, 이동식경계감시시스템을 정비하여 航空警戒監視能力을 향상시킨다.

(라) 老朽通信機材를 갱신한다.

② 情報機能·周邊海空域의 監視態勢의 충실을 위해서 감시용레이다, 對潛戰(ASW)센타의 정비, 항공기에 의한 周邊海域 監視의 강화, OTH레이다의 조사 등을 한다.

③ 電子戰能力의 향상을 위해서 電波探知, 妨害裝置 등을 정비한다.

(4) 練度の 向上

① 陸上自衛隊의 훈련수준 향상과 海上自衛隊의 연간 항해시간수의 향상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燃料를 확보한다.

② 正面裝備의 충실에 맞추어 효율적인 要員의 練度向上을 위해 계속 交戰訓練用裝置를 조달하는 등 교육훈련용장비 등을 점차 정비한다.

③ 美日共同訓練을 포함한 각종 훈련 또는 연습을 실시한다.

(5) 隊員施策

① 生活關聯施設の 충실

막사는 二段침대의 단계적 解消를 위한 増設, 노후막사의 改修, 部隊의 新改編에 따른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宿舎도 개축하여 노후숙사의 해소 및 증설을 계속하면서, 落島·벽지용宿舎 등을 정비한다.

기타 식당, 체육관, 풀, 후생센터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② 處遇改善

艦艇乗務魅力化施策으로 新造艦艇의 2段침대화를 추진한다.

③ 授護施策

就職授護教育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관계 교육을 확충한다.

(6) 研究開發의 充實

① 次期支援戰鬥機(FS-X)

支援戰鬥機(F-1)의 後繼機로서 FS-X의 공동개발을 계속한다.
(第1章 第4節 參照).

② 短SAM(改)

81식단거리 지대공유도탄의 개선에 착수한다.

③ 對潛用短魚雷(G-RX4)

高速, 深深度潛航의 고성능잠수함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G-RX4의 개발에 착수한다.

(7) 組織改編

① 일부 戰車의 北海道에로의 전용배치나 사단의 근대화에 따른 필요한 師團들을 개편한다.

② 統合運用態勢의 충실을 위해서 統合幕僚會議事務局 通信電子調整官의 新設등 所要의 개편을 단행한다.

③ 沼田彈藥支處(假稱), 自衛隊三澤病院을 新編 하는 동시에

장비품의 취득에 따른 필요한 부대를 새로 개편한다.

3.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進陟狀況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계상한 主要事業의 進척상황은 <圖 3-10> 과 같다.

4. 平成元年度の 防衛關係費

금년도의 방위관계비의 총액은 3兆 9,198億円이다. 이것은 금년도 一般會計 歳出豫算의 6.5%를 차지하고, 또 政府가 展望한 GNP에 대한 비율은 1.006%로 되어 있다.

<表 3-4> 防衛關係費의 概要

區 分	元 年 度	63 年 度
防 衛 關 係 費	39,198億円	37,003億円
對前年度伸率	5.9 %	5.2 %
對 GNP 比	1.006 %	1.013 %
對一般會計比	6.5 %	6.5 %
國庫債務負擔行爲내지 계 속 비(新規分)	16,901億円	15,372億円
後年度負擔額	27,616億円	25,916億円
(그 중 新規分)	(16,526億円)	(15,031億円)
(그 중 既定分)	(11,090億円)	(10,886億円)

〈圖 3 - 7〉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進陞狀況

1. 主要裝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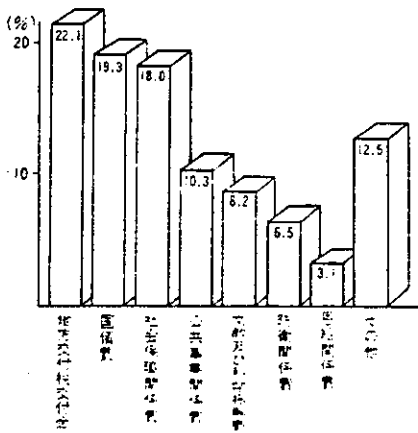
裝 備 名		61年度	62年度	63年度	元年度	中期計画 整備數量	
陸 上 目 衛 隊	戰 車 (注)	56兩	52兩	52兩	56兩	246兩	
	火 砲	68門	61門	49門	49門	277門	
	裝 甲 車	45兩	61兩	60兩	71兩	310兩	
	地对艦誘導彈 (S S M - 1)	6基	16基			54基	
	對戰車ヘリコプター (A H - 1 S)	8機	8機	8機	9機	43機	
	輸送ヘリコプター (C H - 47 J)	4機	4機	5機	5機	24機	
地对空誘導彈 (改良ホーク)	0.5 群	1群	1群	1群	4.5群		
海 上 目 衛 隊	護 衛 艦	3隻		2隻	1隻	2隻	9隻
	潛 水 艦	1隻	1隻	1隻	1隻		5隻
	固定翼對潛哨戒機 (P - 3 C)	10機	9機	9機	10機		50機
	對潛ヘリコプター (注)	13機	17機	12機	12機		66機
	揚海ヘリコプター (M H - 53 E)	4機		2機	4機		12機
	航 空 目 衛 隊	要撃戦闘機 (F - 15)	12機	12機	12機	11機	
輸 送 機 (C - 130 H)		2機		3機	2機		7機
輸送ヘリコプター (C H - 47 J)		3機	2機	3機	2機		12機
早期警戒機 (E - 2 C)			3機				5機
中等練習機 (T - 4)		12機	20機	20機	20機		93機
地对空誘導彈 (ヘトリオット)		1群	1群	1群	1群		5群

註：各各 新型戰車，新對潛直升飛機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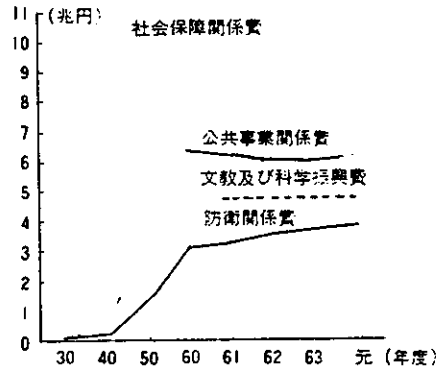
2. 經費

區分	61年度	62年度	63年度	元年度	中期計画
防衛關係費	概ね18% 程 度	概ね19% 程 度	概ね20% 程 度	概ね21% 程 度	概ね18兆4,000 億円程度(60價格)

〈圖 3 - 8〉 一般會計歲出豫算
中的 比率



〈圖 3 - 9〉 一般會計歲出豫算
費의 推移



(1) 防衛關係費 內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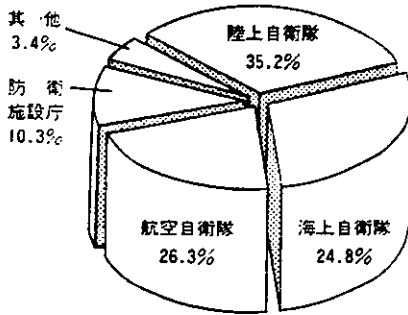
防衛關係費는 자위대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외에 防衛施設周邊의 生活環境의 정비사업을 위한 경비나 安全保障會議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 등을 포함한다.

防衛關係費는 “機關別內譯”, “用途別內譯”, “經費別內譯”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① 機關別 內譯

今年度の 防衛關係費를 陸·海·空 各自衛隊, 防衛施設廳 등의 機

〈圖 3 - 10〉 防衛關係費의 기관별 내역



關別로 분류하면 〈圖 3 - 13〉과 같다.

② 用途別 內譯

防衛關係費를 용도별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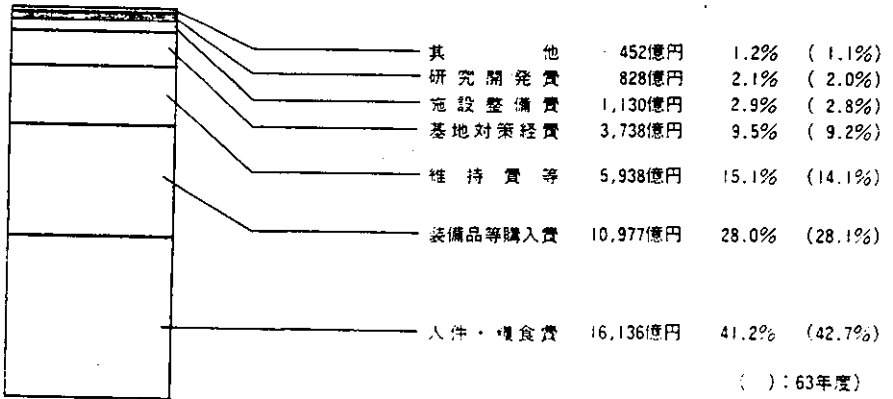
- (가) 隊員의 급여나 양식비 등 “人件·糧食費”
 - (나) 隊員生活의 유지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인 “維持費” 등
 - (다) 戰車, 艦船, 航空機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인 “裝備品 購入費”
 - (래) 비행장, 막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경비인 “施設整備費”
 - (매) 장비품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경비인 “研究開發費”
 - (배) 基地周邊整備 등의 경비인 “基地對策經費” 등으로 분류된
- 다. 금년도의 방위관계비를 용도별로 보면 〈圖 3 - 14〉와 같다.

③ 經費別 內譯

防衛關係費의 經費別 內譯은

- (가) “人件費·糧食費”

〈圖 3-11〉 防衛關係費의 用途別 內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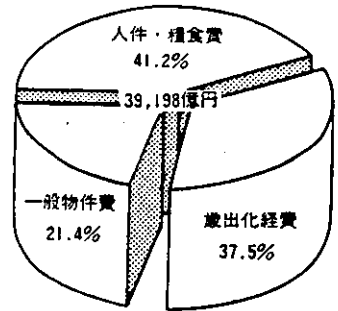
(나) 이미 국회의 의결을 거친 國庫債務負擔行爲 및 繼續費의 후년도 지불분인 “歲出化經費”

(다) 당해년도의 新規裝備品 조달 등을 위해 예산에 계상된 당해 년도에 지불하게 되는 “一般物件費”로 분류된다.

금년도의 防衛關係費를 경비별로 보면 〈圖 3-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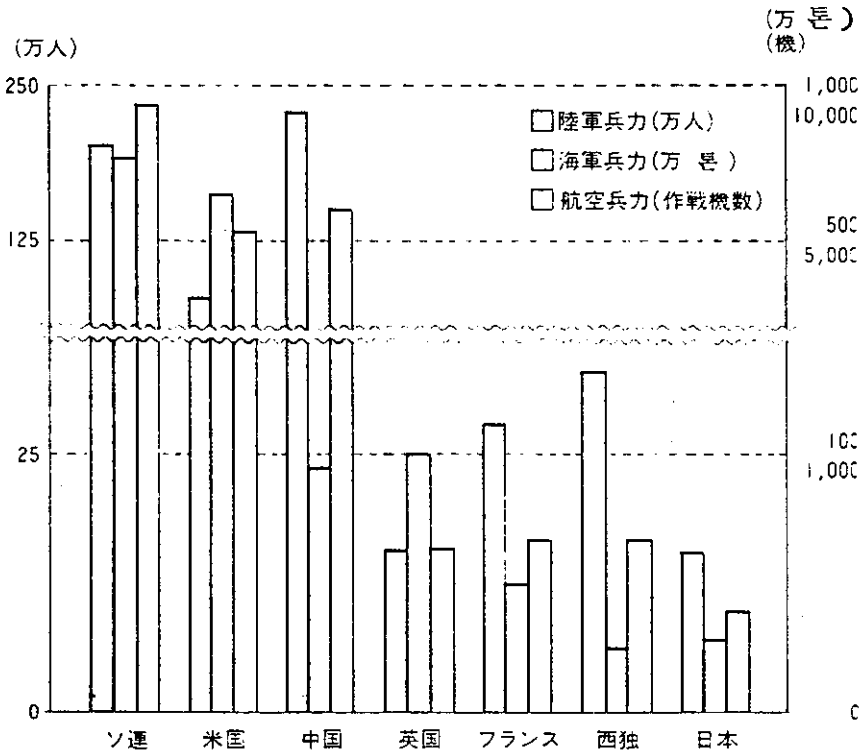
主要裝備의 製造에는 긴 歲月을 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戰鬥機, 護衛艦 등은 4~5年, 戰車・自走砲・裝甲車 등은 2~3年 걸림), 單年度의 예산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장비품들의 조달에 있어서는 財政法에 정해져 있는 國庫債務負擔行爲 및 繼續費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圖 3-12〉 防衛關係費의 經費別 內譯



한 수준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圖 3 - 13〉 主要國의 兵力比較



註 1) 資料는 陸, 空에 관해서는 “밀리터리·발란스(1988~89)” 등, 海軍에 관해서는 “제인海軍年鑑(1989~90)” 등에 의함.

2) 일본은 昭和 63年度末의 各自衛隊의 實勢力을 밝히고, 作戰機에는 수송기를 포함하고 있다.

3) 作戰機數中 日本以外에 관해서는 공군, 육군 및 해병대의 作戰機數를 포함함.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최장 5년에 걸친 제조에 관한 契約을 하기 위한 예산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당해년도 豫算으로 지불하게 되는 先金部分 이외의 경비는 後年度負擔으로 된다. 이 後年度負擔이 장래 歲出化되는 연도에 “歲出化經費”로서 豫算에 계상되는 것이다.

(2) 各國과의 比較

各國의 防衛費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 정의도 각국의 역사나 제도 등 諸事情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統一的인 것은 없다. 더욱이 각국이 처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 사회적 배경 등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各國이 自國의 방위비라고 공표한 계수만을 갖고는 防衛費의 국제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事業問題를 분석 연구하고 있는 機關 등이 독자적 수법으로 國際的 比較를 하는 예가 있는 데, 그 著名한 것으로서 英國의 國際戰略研究所의 “밀리터리 발란스”가 있다. 同書의 最新版(1988~1989)에 의하면 1987年度 時點에서의 일본의 防衛費는 美, 蘇 兩國 및 프랑스, 서독 그리고 영국에 뒤이어 세계 제 6위로 되어 있으나, 防衛費의 對GNP比, 國民 1人當 防衛費 및 對政府支出費에서의 防衛費는 그 어느 것도 歐美諸國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資料 38 參照).

또한 NATO가 定義한 防衛費로 비교해 보면, 일본의 방위비는 이미 美蘇 兩國 다음으로 프랑스, 서독 및 영국을 넘어선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소위 NATO 定義 防衛費는 NATO 加盟國이 公同의 기준에 따라 各國의 防衛努力의 상황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그 範圍의 구체적 기준은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日本의 防衛費들이 基準에 의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9) 防衛費의 國際比較

日本の 방위비를 NATO 定義에 의한 防衛費로 算定한다면 防衛關係費에 舊日本軍에 관계되는 恩給費 및 海上保安廳經費를 加算하는 方法을 취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자위대와는 전혀 關係성이 없는 舊日本軍에 關係한 經費를 현재의 防衛費와 同列로 算定한다는 데는 問題가 있다. 그리고 尙히 舊日本軍에 關係한 恩給費를 加算한다 하더라도 軍人恩給 모두가 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며, 또한 海上保安廳의 임무나 성격으로 보아 이 經費를 加算하는 것도 適當하지 않다. 따라서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의 NATO 定義防衛費의 算定方法은 適當치 않으며, 가령 算定하였다 해도 過大한 것이 되기 쉽다.

그리고 各國의 방위비를 比較할 場合 各國의 通貨로 표시된 방위비를 달러表示로 換算하는 것이 一般적이다. 여기서 近年 달러 시세의 추이를 보면 円과 달러에 대한 평가는 西歐三國(英·佛·西獨)의 그것보다 훨씬 큰 伸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換算한 日本의 防衛費는 보다 크게 표시되는 傾向에 있다. 예컨대, 日本의 防衛費는 過去 5년간(1984~1989)에 円表示로는 約 1.3 倍 增加되었으나, 달러表示로는 約 2.6 倍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도 단순한 달러 換算의 金額 比較는 實態를 精確히 反映하지 않고 그 評價를 크게 變動시키기 때문에 比較에 있어서는 充分한 주의를 할 必要가 있다.

日本의 방위비가 外國과의 比較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지적은 日本이 必要이상의 큰 防衛力을 整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가 背景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各國의 諸事情이 다르기 때문에 防衛費의 규모가 그대로, 整備 保有하고 있는 防衛力의 규모의 比較에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關係해서 말하면, 防衛力(兵力)의 규모에 關係 日本과 外國과를 比較해 보면 <圖 3-16>과 같으며, 日本은 프랑스, 서독 및 영국등 諸國과 필적할 만

(10) 防衛改革委員會

防衛廳은 방위력의 정비·운용의 効率化·合理化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防衛計劃의 大綱”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發想에 입각해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日本防衛態勢 전반에 걸쳐 검토해 가기로 하여 昭和61年 5月, 주로 업무 운영국의 검토를 해 온 舊業務·運營自主監査委員會를 發展的으로 解體하고 防衛改革委員會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委員會下에 業務監査小委員會, 海上防空體制研究會, 陸上防衛態勢研究會 및 自衛官人材育成·確保研究會를 설치하고 각종 검토를 해 왔다.

한편 昭和63年 12月の 安全保障會議에서 현재의 中期防衛力整備計劃 종료후도 政府가 中期的인 防衛力整備計劃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에 따라 防衛廳으로서도 政府計劃의 책정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廳內에 “防衛力檢討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이 때문에 海上防空體制委員會 및 陸上防衛態勢研究會는 폐지하고 檢討對象인 연구회는 지금까지의 檢討成果를 받아 들이면서 “防衛力檢討委員會”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폐지된 2개의 연구위원회를 포함한 防衛改革委員會의 지금까지의 檢討狀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業務監査小委員會는

- ① 統合의 強化·업무의 일원화
- ② 민간능력의 활용
- ③ 조직·정원 등의 재검토
- ④ 조달·보급업무의 재검토
- ⑤ 연구개발업무의 재검토
- ⑥ 시설업무의 재검토 등에 관해서 검토하여 昭和62年 6月까지 그의 결과를 얻었다.

2. 海上防空體制研究會에서는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따라 최근의 航空機의 성능향상, 사정이 긴 미사일의 出現 등을 고려하여 OTH레이다, 早期警戒機, 遊擊戰鬥機, 艦艇의 對空미사일·시스템 등 각종장비의 조립으로 효율적인 海上防空體制的 형태에 대한 검토결과는 昭和62年 12月の 安全保障會議에서 승인되었다.

3. 陸上防衛態勢研究會에서는 일본의 地理的 特性, 將來的 軍事科學技術, 陸上兵器體系의 추세, 이것들이 陸上戰鬪樣相에 주는 영향 등 長期的 觀點에서 장래의 효율적인 陸上防衛態勢의 형태를 검토해 왔다. 그 경우 北部日本의 防衛를 중시하고 上陸侵攻에 대한 早期前方對處의 가능성, 지역의 特性에 상응하는 任務別 部隊編成의 형태 등에 관해서 外國의 동향을 포함해서 기초연구를 해왔다.

4. 自衛官 人材育成・確保研究會는 최근의 기술혁신이나 국제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의 사회상황에 따르는 自衛隊를 둘러싼 내외의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훌륭한 自衛官을 장래에 育成・確保함으로써 방위력의 주요한 요소인 人的 基盤의 강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調査・研究를 해 왔다. 昭和62年 6月에는 幹部自衛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昭和63年 4月에는 准尉・曹・士自衛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各各 검토결과를 얻었다.

더욱이 각검토결과에 대해서는 關係部局에서 더욱 具體的 檢討를 하여 成案된 것을 소정의 수속을 거쳐 실천에 옮기고 있다.

第 8 章 美日防衛協約

第 1 節 “美日防衛協力を 위한 指針”에 따른 연구

美日安全保障條約과 그 관련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昭和 53 年에 책정된 “美日防衛協력을 위한 指針”(“指針”)에 따라 防衛廳에서는 현재 美軍과 함께 공동작전계획에 관한 연구, 기타 研究作業을 하고 있다(“指針”에 관해서는 第 2 部 第 3 章 第 3 節, 資料 15 參照).

1. 주요 研究項目

“指針”에 예정되어 있는 주된 研究項目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指針” 第 1 項 및 第 2 項에 따른 研究項目

- ① 공동작전계획
- ② 작전상 필요한 공통의 實施要領
- ③ 調整機關의 形態
- ④ 作戰準備의 단계구분과 共通의 基準
- ⑤ 작전운용상의 手續
- ⑥ 指揮와 연락 실시에 필요한 通信電子活動에 관해서 상호 필요

한 사항

⑦ 情報交換에 관한 사항

⑧ 補給, 輸送整備施設 등 후방지원에 관한 사항

(2) “指針” 第3項에 따른 研究

日本以外の 極東事態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의 미군에 대한 편의제공의 형태

2. “指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연구

“指針”에 따라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共同作戰計劃에 관한 연구, 기타 연구작업에 대해서는 防衛廳과 美軍間에 統合幕僚會議事務局과 駐日美軍司令部가 중심이 되어 행하고 있다.

(1) 共同作戰計劃에 관한 研究

“指針”에 따른 研究作業은 共同作戰計劃에 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日本에 대한 侵略樣態를 상정한 최초의 케이스·스타디는 昭和59年末 일단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정세에 따른 재검토 作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의 케이스·스타디인 “새로운 研究”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美·日間에 對話가 이루어져 昭和63年 여름부터 연구가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소위 有事時 來援研究에 대해서는 “새로운 研究”의 일환으로서 시의 적절한 美軍의 來援에 관한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共同作戰計劃의 연구와 관련된 後方支援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욱이 美日調整機關, 공통의 작전준비 등에 대해서도 점차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

(2) 씨·레인防衛共同研究

이 研究는 “指針”작성시 전제조건과 “指針”에 표시된 기본적인 제약, 조건, 구상 등의 범위내에서 日本에 武力攻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씨·레인防衛를 위한 美日共同對處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昭和 61年 12月에 研究작업이 종료되었다.

그 결과 일정한 前提下에서 美日の 씨·레인防衛能力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씨·레인防衛構想, 共同作戰要領에 관한 美日相互理解의 추진 등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3) 인터오퍼러빌리티(相互運用性)에 관한 研究¹⁾

美日間の 인터오퍼러빌리티問題에 대해서는 “指針”에 따라 각종연구를 고려하고 있으나, 現在 通信분야를 대상으로 研究작업을 하고 있다.

3. “指針” 第3項에 따른 研究

일본이외의 極東事態로서 日本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美軍에 대한 便宜提供 形式의 연구에 관해서는 昭和 57年 1月の 美日安全保障協議委員會에서 연구를 개시하자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美日兩國間에 研究작업이 이루어졌다.

第2節 美日共同訓練

自衛隊가 美軍과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각자의 전술기량 향상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리고 美日共同訓練을 통해서 평소부터 自衛隊와 美軍과의 戰術面에서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인터오퍼러빌리티(相互運用性)를 향상시켜 두는 것은 유사시에 美日共同對處

行動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하며 美日安全保障體制의 信賴性和 抑止效果의 유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自衛隊는 금후에도 훈련의 충실·향상을 위해서 미일공동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더욱이 美日共同訓練의 실시와 관련하여 자위대의 統合運用 態勢의 충실을 위한 統合化를 중시하고 있다(美日共同訓練의 實績에 관해서는 資料 42 參照).

1. 統合幕僚會議

美日共同訓練은 최근 陸·海·空 自衛隊에서 각각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 統合演習을 통한 자위대의 統合運用態勢가 점차 확립되어감에 따라 昭和 60 年度에는 처음으로 共同統合演習으로서의 指揮所演習이 이루어졌다. 금년 2월에는 第4 회째 共同統合指揮所 演習을 하여 미일간에 서로의 調整要領을 훈련하였다.

또한 防衛力은 신속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발휘하여 침공대처 태세를 충실하게 할 필요에서 점차 그 내용도 충실을 기하고 있다.

2. 陸上自衛隊

작년도는 指揮所演習을 3 회, 實動訓練을 4 회 하였다.

方面隊레벨의 지휘소연습은 美國(하와이)과 日本(北部方面隊)에서, 그리고 師團레벨의 指揮所演習은 東北方面隊에서 하였다.

實動訓練은 戰鬥團~大隊레벨의 훈련을 東北方面隊와 中部方面隊에서 하였다. 그리고 積雪寒冷環境下에서의 中隊레벨의 훈련을 北部方面隊와 東北方面隊에서 하였다.

3. 海上自衛隊

작년도는 림팩²⁾ 88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對潛訓練을 2 회, 掃

海訓練을 2회, 소규모훈련을 1회, 지휘소연습을 2회 하였다. 작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의 海上自衛隊演習時에는 그 일부로서 공동 훈련을 하였다.

작년도는 防空戰鬥訓練을 3회, 戰鬥機戰鬥訓練을 11회, 救難訓練을 1회 하였다. 그 밖에 北部航空方面隊 등 美日 양국의 부대가 근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部隊에서는 美空軍과 소규모의 戰鬥機戰鬥訓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第3節 美日間の 裝備 및 技術面の 協力關係

1. 裝備, 技術面の 對話(美·日裝備·技術定期協議)

美日裝備·技術定期協議는 장비·기술면에서 美日防衛當局間的 협력관계를 한층 긴밀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 사무레벨의 비공식회합이며 昭和55年 9월以來 지금까지 11회 개최되었다.

작년 10월 東京에서 개최된 第11回 定期協議會에서는 美日 兩國의 裝備·技術政策, 裝備·技術의 미일공동연구 등 諸問題에 관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2. 日本에 대한 美國의 裝備·技術 提供

美國으로부터 日本에 대한 裝備·技術의 提供은 美日安全保障體制를 통해서 주로 昭和29년에 美日兩國政府間에 체결된 “日本國과 美合衆國間的 相互防衛援助協定” “相互防衛援助協定”(資料43參照)에 따라 종래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日本 防衛力の 충실 및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지스시스템, 携帶SAM 등은 有償援助(FMS)³⁾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으며, 對潛哨戒機 P-3C, 邀擊戰鬥

機 F-15, 地對空誘導彈베트리웃트 등은 美國과 맺은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生産하고 있다. 또한 商社 등을 통해 조달하는 일반수입품도 많다. 그 밖에 美日兩國間에는 장비에 관한 자료교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3. 對美武器技術供與

防衛分野에서의 상호 기술교류에 있어서는 昭和 58年 1月 武器輸出三原則과 昭和 51年 2月의 무기수출에 관한 정부방침 등(“武器輸出三原則 등”⁴⁾)에 例外를 두어 美國에 대한 무기기술을 공여하는 길을 열기로 하고(資料 44 參照), 昭和 58年 11月에는 對美武器技術供與를 위한 “相互防衛援助協定”에 따라 交換公文(資料 45 參照)이, 그리고 昭和 60年 12月에는 實施細目 規定(資料 46 參照)을 체결하였다.

또한 對美武器技術供與는 이것을 實効性있게 하기 위해 必要한 物品이라면 武器에 해당하는 것도 輸出對象에 포함되나, 그 以外의 경우의 무기수출에 관해서는 종래대로 “武器輸出三原則 등”이 적용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美國으로부터의 技術供與 요청에 따라 日本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昭和 61年에 3件의 技術을 武器技術共同委員會 日本國側委員部에서 對美供與의 승인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防衛分野에서 美國과 기술의 상호교류에 관해서는 美日安全保障體制의 効果적 運用을 확보하는데 극히 중요하며, 對美武器技術供與에 있어서는 금후에도 美國으로부터의 구체적 요청을 기다려 主적으로 종합적인 觀點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대처하기로 하였다.

4. 美日共同研究開發

美日間 장비의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는 FS-X의 공동개발이 첫째 이시다. 작년 11月에는 FS-X의 공동개발에 관한 交換公文(資料 47 參照) 및 이에 따른 세목규정(資料 48 參照)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금년 3月 美國內의 手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이 일본측에 대해 클레리피케이션(설명)의 요청이 있어 美日間에 대화가 진행된 결과 4월말에 決末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美日政府 雙方이 本共同開發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향을 갖는 것이 새삼 확인되었다. 금후 美日間の 規定에 따라 本共同開發이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美日共同開發研究는 양국의 훌륭한 기술을 결집하여 효과적으로 장비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美日間の 防衛協力關係를 진전시킬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 SDI의 研究計劃에 대한 參加

昭和 61年 9月 官房長官談話(資料 19 參照)에서 政府는 SDI 研究 參加問題는 현행 일본 국내법 및 美日間の 규정의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며, 종래의 방위분야에서의 美國과의 기술교류와 같이 취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政府는 美國政府와 협의를 계속하여 昭和 62年 7月에는 일본의 SDI 研究 參加에 관한 美日政府間協定(資料 50 參照)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의 기업 등이 SDI 研究 參加를 희망하는 경우 그 참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美國防省은 작년 5月 SDI 研究計劃의 일환으로서 西太平洋 地域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防衛構想 研究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는 상기지역에서의 中・短距離미사일에 대한 防衛시스템의 구상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는 일본기업도 참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6. 美國이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特許關聯 技術知識의 일본에로의 이전

최근 각종 첨단技術이 裝備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 미국이 보유한 防衛關聯技術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귀중한 기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美國에서 비밀로 보존되고 있는 特許關聯 技術知識(美國의 秘密特許關聯資料)을 일본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금후 훌륭한 장비품들을 연구개발해 나가는 데 유익하다.

이와같은 판단에서 美國의 秘密特許關聯資料를 일본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昨年 4월에 “相互防衛援助協定”에 따른 交換公文(資料 51 參照)이 美日兩國政府間에 체결되었다.

이의 締結로 종래 입수하기가 곤란하였던 美國의 秘密特許關聯資料의 日本에로의 이전이 촉진됨과 동시에 日本의 연구개발이나 美日共同開發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방위분야에서의 美日間の 협력이 한층 진전될 것이 기대된다.

第4節 駐日美軍의 現狀과 駐屯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施策

1. 駐日美軍의 現狀

(1) 駐日美軍은 사령부를 東京都의 橫田飛行場에 두고; 사령관은 第5空軍司令官이 兼務를 하고 있다. 司令官은 일본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諸計劃을 입안할 책임을 지고, 평시에는 駐日美陸軍司令官과 駐日美海軍(駐日美海兵隊 포함)司令官에 대해서 調整權을 갖고,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駐日美軍의 諸部隊 및 새로 배속된 美軍部隊를 지휘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駐日美軍司令官은 일본에서의 美國 軍事關係의 대표로서 防

衛廳 및 其他 省廳과의 協議을 함과 동시에 地位協定⁵⁾(資料 14 參照)의 실시에 관해서 外務省과 조정할 책임을 갖는다.

(2) 駐日美陸軍은 司令部(第9師團 司令部)를 神奈川(가나가와)縣의 캠프에 두고 있으며, 管理, 補給, 通信 등에 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3) 駐日美海軍은 司令部를 가나가와현의 요코쓰카(橫須賀) 해군 시설에 두고 주로 第7艦隊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다. 가나가와 縣의 아쓰끼(厚木)飛行場은 美海軍航空部隊가 주로 艦載機의 수리 및 훈련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오모리(靑森)현의 미자와(三澤)飛行場과 오기나와(沖繩)와 가테나(嘉手納)비행장에는 對潛哨戒飛行隊가 배치되어 있다.

(4) 海兵隊는 오기나와현의 캠프·코트니에 第3海兵機動展開部隊 司令部를 두고 1個海兵師團과 1個海兵航空團으로 이루어지는 奇襲兵力을 보유하고 있다.

(5) 駐日美空軍은 司令部(第5空軍司令部)를 東京都 요코다 비행장에 두고 있다. 오기나와현의 가테나 飛行場 및 아오모리(靑森)현의 미자와비행장에는 各各 1個戰術航空團을 배치하고 요코다 비행장에는 戰術空輸群을 배치하고 있다.

(6) 駐日美軍의 兵力은 約 5萬 6,000名⁶⁾(陸軍 약 2,100名, 海軍 약 7,400名, 海兵隊 약 2萬 4,900名 및 空軍 약 1萬 6,300名, 昭和 63年 12月 31日現在)이다(資料 52, 53 參照).

2. 駐日美軍의 駐屯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施策

駐日美軍의 駐屯은 美日安全保障體制의 핵심이며, 그 주둔을 진실로

실효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美日安全保障體制가 갖는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하는데 필수조건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駐日美軍의 駐屯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施策의 現狀

① 日本은 地位協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 및 區域⁷⁾을 美日 合同委員會를 통해 美日兩國政府間에 合意한 데 따라 美國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駐日美軍의 駐屯에 따라 美國이 부담하는 경비는 昭和40年代後半부터 일본의 물가와 임금의 高騰과 國際經濟情勢의 變動에 의해 상당한 압력을 받아 어렵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政府는 駐日美軍의 駐屯이 원활하고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現行 地位協定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노력을 한다는 방침하에 昭和54年度부터는 노후막사의 개축, 가족주택의 신축, 오수처리시설의 정비, 老朽貯油 施設의 개축, 消音裝置의 신설들을 하여 이를 施設・區域으로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들 提供施設의 정비에 필요한 금년도의 歲出豫算額은 약 890 億円 (그 외에 後年度負擔額 약 743 億円)이다.

② 그리고 駐日美軍은 日本人從業員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노동력은 地位協定에 의해 일본의 원조를 얻어 充당하기로 되어 있다. 일본은 給與, 其他 勤務條件을 정하고, 일본인종업원(平成元年 3月 31日現在 約2萬2,100名)을 고용하여 그 勞務를 주일미군에 提供하고 있다. 이들 日本人從業員의 勞務費에 대해서는 종래 美國側이 負擔하여 왔으나, 駐日美軍이 負擔하는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인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昭和53年度부터 福祉厚生費 등을, 昭和54年度부터는 給與中 格差給 등 國家公務員의 給與條件이 아닌 부분의 경비를 일본이 負擔하고 있다.

그후 美日 兩國을 휩쓴 經濟情勢의 변화(소위 円高, 달러低)에 의해서 駐日美軍의 주둔경비, 그중에서도 특히 노무비가 압박을 받아 이것을 放置하게 되면 日本人從業員의 고용의 안정이 손상되고, 나아가서는 駐日美軍 活動의 효과적인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염려가 생겼다. 이 때문에 美日 兩國政府間에 地位協定 第24條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協定(소위 特別協定)을 체결하고, 昭和62年度부터 退職手當, 季節手當 등 諸手當의 일부를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特別協定發効後에 미일 양국을 휩쓴 經濟情勢가 한층 더 변화를 보여 駐日美軍駐屯經費가 종전보다 늘어나서 압박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고, 日本人 從業員의 안정적인 고용의 유지를 위해서, 이로써 駐日美軍의 효과적인 활동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昭和63年 6月 前述한 特別協定을 개정하고 諸手當의 全額까지를 일본이 부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勞務費의 금년도 예산액은 약 523 億円(그중 特別協定 약 322 億円)이다.

③ 그밖에 日本은 駐日美軍의 駐屯과 관련해서 종래부터 施設・區域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施設의 借料 등)의 부담, 施設, 區域의 周邊地域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조치, 日本人從業員의 離職對策 등의 시책을 해 왔다. 이러한 施策을 위한 예산액은 전술한 提供施設의 정비비 약 890 億円 및 勞務費 약 532 億円을 포함해서 약 2,624 億円이다.

(2) 施設・區域의 提供問題

최근 駐日美軍에 대한 施設・區域의 제공에 관해서는 航母 艦載機의 着陸訓練場의 확보, 이케코(池子)주택지구 및 海軍補助施設에서의 미군가족주택의 건설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圖 3 - 14〉 駐日美軍의 駐屯을 원활히 하기위한 施策의 추이

	昭和 63	日本人從業員의 諸手當의 부담 (退職手當等 8手當
昭和 62	의 經費의 全額까지 가능	
昭和 54	日本人從業員의 諸手當의 부담 (退職手當等 8手當의 經費의 1/2 限度	
昭和 53	提供施設의 정비 (老朽막사의 改築, 家族住宅의 新築등)	
	日本人從業員의 格差給과 給與一部 부담	
	日本人從業員의 福利厚生費등의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施設・區域의 提供에 필요한 경비 (施設의 借料등)의 부담 • 施設・區域의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등의 整備를 위한 조치 • 日本人從業員의 離職者對策을 위한 조치 	

① 航母 艦載機의 着陸訓練場 확보의 문제

駐日美軍 駐屯의 원활화에 관한 美日兩國間의 큰 현안중의 하나로서 航母, 艦載機의 着陸訓練場確保의 問題가 있다. 이 問題는 지금까지 昭和 60年 1月의 美日首腦會談을 비롯해서 여러 側面에서 美國으로부터 강력한 해결의 요청을 받고 있으며, 美日安全保障體制를 효과적으로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問題로 되어 있다.

艦載機의 着陸訓練은 艦載機파이롯트의 練度維持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艦載機의 파이롯트는 넓은 바다위에 하나의 짐과 같은 航空母艦의 좁은 갑판위에 着艦하기 위해 매우 고도의 技術을 필요로 한다. 航母는 보급, 정비, 휴양 등을 위해서 入港을 하게 되는 데, 入港中 艦載機는 離着陸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롯트의 離着艦의 技量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陸上의 飛行場에서 着陸訓練을 충실히 할 必要가

있다.

현재 이 훈련은 주로 아쓰끼(厚木)비행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이 都市化되고 있으며, 미군은 騒音問題로 인한 飛行規制와 市街地の 灯火로 인한 夜間訓練의 效果減少 때문에 충분한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關東地方과 그 周邊地域에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육상비행장의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政府로서도 周邊住民들에게 害를 끼치는 騒音問題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防衛廳은 원활하게 着陸訓練을 할 수 있는 육상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검토를 해 왔다.

이 검토결과 三宅島가 適地이기 때문에 同島에 훈련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三宅島에서는 村當局을 위시해서 주민들간에 아직 반대의 의향이 강하여 그 실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한편 厚木비행장 주변의 騒音問題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同飛行場周邊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三宅島에 훈련장을 설치할 때까지의 잠정조치로서 硫黃島에서 着陸訓練을 할 것을 美軍과 협의해 왔다. 美軍은 硫黃島는 厚木비행장으로부터 멀다고(약 1,200 km)하여 난색을 표시해 왔으나 美日間の 타협의 결과 今年 1月 日本이 着陸訓練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할 것을 전제로 硫黃島에서 着陸訓練을 실시할 것을 기본적으로 양해하였다.

防衛廳은 금년도부터 着陸訓練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硫黃島에서의 착륙훈련을 실시할 것을 기본적으로 양해하였다.

防衛廳은 금년도부터 着陸訓練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硫黃島에서의 착륙훈련의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욱이 금년도는 滑走路灯火施設, 급유시설, 식당 등의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② 이께꼬(池子)에서의 美軍家族住宅 建設의 問題

일본에는 많은 미군이 美本土에서 멀리 떨어져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요한 家族住宅이 최근 그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크게 부족한 상황에 있다. 海外에 근무하는 경우의 家族帶同基準의 완화에 따라 家族帶同의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円高, 달러低에 의한 住宅費負擔의 증대 등에 의해서 民間住宅을 빌리고 있는 사람중에서 施設・區域內에의 居住를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美軍은 日本政府에 대해서 昭和 53年頃부터 요코스가 海軍施設으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내에 1,000戶정도의 家族住宅을 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망해 왔다.

정부로서도 美軍의 사기를 유지하고 駐日美軍의 주둔을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美軍이 家族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일본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서 요코스카(橫須賀)地區에 통근할 수 있는 범위내에 住宅建設의 후보지를 조사하였다.

그 結果 美軍이 이전에 彈藥庫로 사용하였고 현재 海軍補助施設로 사용하고 있는 池子地區의 일부에 가족주택을 建設하기로 하고 逗子市와 장기간 대화를 계속해 왔다.

防衛廳은 昭和 59年當時의 逗子(도꼬)市長의 요청도 있어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保存하기 위해서 神奈川縣環境影響評價條例에 따른 手續을 해 왔다. 그러나 그 고장에서는 이 주택건설에 대해서 綠地의 상실 등 池子地區의 자연과과의 염려가 있다는 일부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있어 의견이 양분되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昭和 62年 3月부터 神奈川縣知事の 요청에 의해서 國家, 逗子市, 神奈川縣의 三者間 對話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同年 5月 同知事로부터 逗子市長의 의향을 배려한 知事 調整案이 제시되었다.

防衛廳은 이 知事調整案에 따라 대폭적인 수정을 하였다.

예컨대 綠地의 보전에 있어서는 자연도가 높은 植物群落이나 樹林을 현상대로 녹지로 남겨놓고 綠色이 많은 景觀의 보존에도 뜻을 두었다. 그리고 造成區域內에는 각종 식물을 재배하여 再綠地化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에 따라 새로 주택부지로 된 면적은 池子住宅地區 및 海軍補給施設의 全面積 약 290 ha中 불과 약 10 ha 정도밖에 안되며, 또 당초 920戶를 계획한 가족주택을 854戶로 줄이는 등 原住民들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防衛廳은 이와같은 배려를 한 후에야 昭和 62年 9月부터 건설공사를 하였다. 또한 防衛廳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택지조성과 周邊地域의 洪水對策을 위해서 河川의 改修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河川法에 따라 河川管理府인 도쿄(逗子)市長과의 河川協議가 필요하다. 거기서 防衛廳은 同年 12月에 同市長에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일년반을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同市長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防衛廳으로서의 美日間의 信賴關係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건설을 조금씩 실행할 필요가 있기에 계속 河川協議가 빠른 시일내에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同時에 暫定措置로서 河川協議를 필요로 하지 않는 假設의 調整地를 설치하여 宅地造成 등의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註 1) 인터오퍼러빌리티 (相互運用性) : 인터오퍼러빌리티에 관해서 확정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술, 장비, 후방지원 등에 관한 共通性, 兩用性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2) 림팩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 림팩은 2년에 한번정도의 비율로 실시된다. 림팩 88은 1971년의 第1回以來 통산 11 회째이다.
- 3) 有償援助 (FMS) : 美國政府가 武器輸出管理法에 따라 友好國政府들에 대해서 유상으로 주는 군사원조를 말함.
- 4) 武器輸出三原則 등 : 武器輸出三原則은 昭和 42年 4月, 당시의 佐藤首相이 표명한 것으로서
- ① 對共產圈 諸國의 경우
 - ② 유엔결의에 의해 武器輸出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를 향할 경우
 - ③ 國際紛爭當事國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나라를 향할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무기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리고 昭和 51年 2月の 武器輸出에 관한 政府方針이란 당시의 三木首相이 표명한 것으로서 그 概要는 무기의 수출에 관해서
- ① 三原則對象地域에 대해서는 “武器”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三原則對象以外的 지역에 대해서는 “武器”의 수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③ 武器製造關聯設備에 있어서는 “武器”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이라는 方針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武器의 輸出을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武器技術의 輸出 <非居住者에의 提供>에 관해서도 武器輸出三原則 및 昭和 51年 2月の 武器輸出에 관한 政府方針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5) 地位協定 : 日本과 美合衆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6條에 따른 시설과 구역 그리고 日本에서의 合衆國軍隊의 지위에 관한 협정.
- 6) 各軍의 合計와의 불일치는 四捨五入에 의한 오차.
- 7) 施設・區域 : 建物, 公작물 등의 구축물 및 토지, 공유수면을 말함.

第4部 國民과 防衛

第9章 諸外國에서의 國民과 防衛

外國에서는 나라의 防衛에는 國民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나라의 방위와 국민과의 관계를 憲法이나 法律 등으로 규정하여 나라의 防衛를 위한 國民의 협력태세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本章에서는 自由主義諸國, 社會主義諸國, 소위 中立國들중 몇몇 國家의 국민과 방위에 관한 규정 등을 소개한다.

第1節 自由主義諸國

自由主義諸國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나, 同時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體制를 지키기 위한 國民의 강한 결의를 憲法이나 基本法 등으로 표명하고 따라서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예가 많다.

한편 많은 나라에서 軍隊를 관리·운영하는 行政組織(많은 경우는 國防省)의 長은 文民으로 하기도 하고, 國民의 대표인 議會가 군대의 예산, 조직 등의 중요한 事項을 의결하는 등 軍事力에 대한 民主主義的인 政治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다.

1. 美 國

美國에서는 憲法前文에 “우리들 合衆國의 國民은 보다 완전한 聯邦을 형성하고 正義를 수립하며, 國民의 靜穩을 보장하고, 共同의 防衛에 對備하여, 一般의 福祉를 增進시켜, 우리들과 우리들의 後孫에게 自由의 祝福이 계속되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美合衆國을 위해서 이 憲法을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美國은 1973年以來 志願制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후 1980年 徵兵登錄制를 부활시켜 필요시에는 徵兵制에 이행되도록 징병의 대상이 되는 者들을 리스트로 정비하고 있다. 豫備役으로서는 志願者, 現役軍除隊者로 구성되는 豫備役軍이나 州兵軍이 있으며, 現役部隊의 훈련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들 要員들은 미리 유사시에 편입되는 部隊가 지정되어 있으며, 陸軍에서는 有事總兵力의 半數정도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非常事態時에 민간항공기로 軍의 空輸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民間豫備飛行隊(CRAF: Civil Reserve Air Fleet)의 制度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高校, 大學 在學生中 희망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어 軍事訓練을 하고 있으며, 졸업후에는 現役 또는 豫備役軍人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英 國

英國에서는 1961年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志願制로 이행하였으며, 軍務經驗者로 이루어지는 豫備役外에 軍務經驗을 필요로 하지 않는 志願豫備役의 制度를 갖고 있다. 志願豫備役의 대원은 민간으로 일을 하면서 週末 등에 행하는 연간 12日의 훈련이나 통상 여름철에 하는 15日間의 연속야영훈련 등에 참가한다. 이들 豫備兵力은 陸軍에서는 正規軍의 약 1.6 배이다.

그리고 英本土와 屬領에 대해서 급박한 위협 또는 공격을 받았을경

우, 女王(國王)은 그의 大權(Prerogative Power)의 하나로 서 船舶徵用の 권한을 갖는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憲法第 34 條에 “國防을 위해서 課해지는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한 市民의 負擔”을 法律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國家役務法”에서 滿 18 歲로부터 50 歲까지의 모든 남자는 일정한 기간 兵役·民間防衛 등의 役務에 종사할 義務와 이러한 役務에 從事한 후, 일정연령까지 軍 또는 民間防衛의 豫備役으로 되는 義務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陸軍의 有事總兵力의 약 반수를 豫備役에 의존하고 있다.

大統領이 總動員을 決定하면 政府는 “① 人員, 財産 및 役務를 徵用할 수 있는 권한, ② 에너지源, 原料, 工業製品 및 補給에 필요한 製品을 統制·分配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西 獨

西獨에서는 基本法 第 12 條 第 1 項에 “남자에 대해서는 18 歲로부터 軍隊, 國境警備隊 또는 民間防衛團에서 役務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條 第 3 項에는 “兵役義務를 진 자로서 役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해서는 法律에 의해서 民間人의 보호를 포함한 국방목적을 위한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西獨의 남자는 15 個月間의 現役勤務後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까지 예비역이 되어 평소에 動員召集訓練 등에 응하고 있으며, 육군 예비역의 규모는 正規軍의 약 2배가 된다.

그리고 基本法에 따라 제정된 聯邦給付法은 엄격한 條件을 전제로 하여 방위목적을 위해서 政府가 동산, 부동산, 통신수단 등을 사용·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韓 國

韓國에서는 憲法 第39條에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防의 義務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郷土豫備軍, 民防衛隊 등 平時병력의 약 13 倍의 人員이 民間인으로서 國防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한 徵發法에는 戰時 등에는 政府가 土地, 物資, 施設 등의 사용·수용 등을 집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韓國의 民間방위훈련은 民방위대원은 물론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國民이 참가하여 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15일의 “민방위의 날”에는 防空訓練이나 化學·生物兵器, 核兵器 등에 의한 攻撃으로부터의 대피훈련을 포함해서 전국적 규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第2節 社會主義諸國

社會主義諸國에서는 國家가 國民의 의사와 이익을 구현한다고 하여 國家의 防衛를 國民의 숭고한 의무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1. 소 련

소련에서는 憲法 第31條에 “社會主義祖國의 防衛는 國家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는, 全人民의 事業이다. 社會主義의 獲得物과 소비에트人民의 평화로운 노동, 國家의 주권과 영토보전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소련軍이 창설되고 또 일반병역의무가 제정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련은 “一般兵役義務法”을 정하고 18 歲로부터 26 歲의 남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병역에 종사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兵役義務를 마친 者뿐 아니라 특수사정 때문에 現役勤務를 할 수 없었던 者도 연령으로 구분된 豫備役に 편입되어 階級마다 따

로 정해진 年齡(例컨대 兵士는 50歲)까지 召集訓練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으로 생활하면서 國防에 참가한다. 이로써 소련은 평시부터 대규모 豫備兵力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學校에서는 10年制 中等學校의 9년생(15~16歲) 이상의 生徒들에 대해서, 그리고 企業이나 콜호즈農場 등에서는 17歲가 된 청년에 대해서 初等軍事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2. 中 國

中國에서는 憲法第 55 條에서 “祖國을 防衛하여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中華人民共和國 모든 公民의 신성한 책무이다. 法律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고 民兵組織에 참가하는 것은 中華人民共和國 公민의 光榮있는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中國은 “兵役法”을 정하여 18歲로부터 22歲의 남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병역에 종사할 것을 義務로 하고 軍隊의 필요에 따라 여자도 징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現役勤務終了者나 18歲로부터 35歲까지의 兵役條件에 합치되는 남자로서 現役勤務를 하지 아니한 자를 豫備役に 편입시키고 있다.

또한 高級中學(高校), 高等院校(大學 등)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기본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北 韓

北韓에서는 憲法第 72 條에 “조국방위는 公民의 최대의무이며, 영예이다. 公民은 祖國을 방위하지 않으면 안되며,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徵兵制를 취하고 있다.

北韓은 正規豫備軍 약 54 萬名外에 準軍隊로서의 “勞農赤衛隊”, “붉은靑年近衛隊” 등을 보유하고 있다.

第3節 中立國

소위 中立國들에서는 독자적으로 국가 방위를 전담하기 위해서 關係法令들을 정비함과 동시에 人口에 비해 대규모의 動員態勢를 확립하고, 民間防衛態勢도 충실히 하고 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1)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憲法第18條에서 “어떠한 스위스인도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施策을 강구하여 防衛態勢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20 歲로부터 50 歲까지 모든 남자에 대해 兵役義務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兵役勤務適格者는 17 週間の 기초훈련을 받은 후 部隊에 편입된 상태로 일반시민생활로 돌아간다. 그후 다시 50 歲까지 合計 最低 32 週間の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스위스의 兵力은 약 3,800 名의 教官, 파이롯트 등의 職業軍人과 약 63 萬名의 民兵으로 되어 있으나, 유사시에는 8 시간 이내에 民兵의 주요부대, 48 시간 이내에 全部隊의 동원이 가능한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戰時에는 各者가 군사목적을 위해 動産 또는 不動産을 軍當局 또는 部隊에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企業, 家庭에는 司法·警察省이 발행한 “民防衛”라는 소책자가 배포되어 있으며, 이에는 조국애, 전시의 방위태세, 시민의 자위, 저항조치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1) 스위스의 兵役制度

스위스는 상비군없이 民兵制度를 채용하고 있으며, 外國과 같이 正規軍, 豫備軍이라는 엄격한 구분은 없다. 兵役期間의 구분 등은 表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무기를 포함한 개인장비품은 全兵役期間中 本人들이 가정에서 보관하는 등 독특한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年 齡	選拔豫備役	後 備 兵	國 民 兵
		20 ~ 32	33 ~ 42
有事時의 任務	第一線部隊	國境警備隊 要塞守備隊	輸送, 兵站部隊, 地方守備隊 등
	3주간의 訓練을 12년동안 8회 실시	2주간의 訓練을 10년동안에 3회 실시	1주간의 訓練을 8년동안에 2회 실시

註 : 選拔豫備役의 訓練이 시작되기 전에 17週間の 新兵教育을 한다.

(2)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義務兵役法”에 의해 18歲로부터 47歲까지의 남자는 軍務에 服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兵役義務者는 7개월반~15개월의 기초훈련을 받은 후 數年이 지나서 戰鬥部隊가 18~25일간 실시하는 機動演習에 5회 소집되어 훈련을 받는다. 이와 같이 훈련을 받은 대부분의 兵役義務者는 평시에는 일반시민으로 생활하고 動員發令後 곧 國防에 참가하게 된다. 이리하여 스웨덴에서는 평시 약 6萬7千名の 兵力을, 유사시에는 72시간이내에 향토방위대를 포함한 國民의 약 1割에 해당되는 약 80萬名까지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사태하에서 運用되는 法律이 30餘가지나 있으며, 戰時의 海運, 鐵道, 醫療, 食料, 電氣 등에 관한 法律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民間防衛組織을 통해 戰時 國民의 행동 등에 관한 팜플렛들이 각가정에 배포되고 있다.

(3)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憲法第 75 條에 “핀란드國의 모든 國民은 祖國防衛에 참가하거나 혹은 이것을 援助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1947 年에 聯合國과의 사이에 체결한 平和條約(파리條約)에 의해서 平時兵력을 함께 4萬 1,900 名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이 때문에 유사시에는 豫備役이 兵力의 중심으로 된다. 男子는 20 歲~ 21 歲로 8~11 개월간 징병훈련을 마친 후 50 歲까지 豫備役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약 490 萬名의 人口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는 動員發令後 우선 약 25 萬名, 最終的으로는 약 70 萬名의 兵力이 된다. 그리고 비상사태에는 政府가 수송, 생산능력, 경제활동의 통제를 할수 있다.

資 料



資 料 目 次

※ 略 語 表	191
資料 1. 世界의 集團安全保障條約	196
2. 第 2 次世界大戰後의 武力紛爭	204
3. 主要國・地域兵力一覽(概數)	218
4. 主要國・地域의 正規軍 및 豫備兵力(概數)	219
5. 各國의 主要 核戰力	221
6. 主要 核미사일의 性能諸元	224
7. INF 條約의 概要	228
8. 「나토」, 「마르샤바」의 發表에 의한 유럽의 軍事 발란스	231
9. 韓半島의 軍事力	233
10. 日本國과 美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抄)	235
11. 日本國과 美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 6 條 에 따른 시설 및 구역과 日本國에서의 美國軍隊의 地 位에 관한 協定(抄)	238
12. 美日防衛協力を 위한 지침	242
13. 防衛廳・自衛隊의 조직 개요	248
14. 陸・海・空 各自衛隊의 편성	249
15. 戰車, 主要火器들의 保有數, 性能諸元	252
16. 主要艦艇의 就役數・性能諸元	254
17. 主要航空機의 保有數・性能諸元	256
18. 誘導彈의 性能諸元	258
19. 自衛隊의 主要演習實績	260
20. 研究開發이 완료된 주요한 裝備品	261
21. 現在開發中의 주요 裝備品	266

22. 自衛官의 定員 및 現員	268
23. 自衛官들의 募集狀況	269
24. 平成元年度 주요사업의 經費	271
25. 防衛費(當初豫算)의 用途別 構成의 추이	274
26. 防衛費(當初豫算)의 추이	275
27. 上位 20 個國의 國防費	276
28. 美日共同訓練의 實績	278

※ 略 語 表

ABM	Anti-Ballistic Missile	彈道彈迎擊미사일
ACM	Advanced Cruise Missile	新型巡航미사일
AEW	Airborne Early Warning	早期警戒
ALCM	Air-Launched Cruise Missile	空中發射巡航미사일
AMF	Allied Command Europe Mobile Force	歐洲聯合軍機動部隊
ANZUS	Security Treaty between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美合衆國安全保障條約
ASAT	Anti-Satellite	對衛星兵器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東南아시아諸國聯合
ASR	Air-to-Surface Rocket	空對地로켓트
ASM	Air-to-Surface Missile	空對地(艦)미사일
ASW	Anti-Submarine Warfare	對潛戰
ATB	Advanced Technology Bomber	高度技術爆擊機
ATF	Advanced Tactical Fighter	高性能戰術戰鬥機
ATM	Anti-Tank Missile	對戰車미사일

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空中警戒管制미사일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彈道미사일防衛
CAP	Combat Air Patrol	空中警戒待機
C ³ 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	指揮, 統制, 通信 및 情報
CENTCOM	Central Command	(美) 中央軍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제네바) 軍縮會議
CD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Europe	歐洲軍縮會議
CDI	Conventional Defense Improvements	通常戰力改善計劃
CFE	Negotiation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歐洲通常戰力交涉
CIWS	Close-in Weapon System	近接防空시스템
CPX	Command Post Exercise	指揮所演習
CRAF	Civil Reserve Air Fleet	民間豫備飛行隊
CSBM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信賴・安全保障釀成措置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歐洲安全保障・協力會議
DC	Direction Center	防空指令所
DMZ	Demilitarized Zone	非武裝地帶
DPC	Defense Planning Committee (NATO)	防衛計劃委員會

ECM	Electronic Countermeasures	電子對策
FMS	Foreign Military Sales	有償援助
FOFA	Follow-on Forces Attack	敵後續部隊攻擊構想
GATT	General Agreement on Traffics and Trade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DP	Gross Domestic Product	國內總生產
GLCM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地上發射巡航미사일
GNP	Gross National Product	國民總生產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大陸間彈道미사일
IDDN	Integrated Defense Digital Network	防衛統合디지털通信 網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
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中距離核戰力
IR	Infra-red	赤外線
IRBM	Intermediate-Range Ball- stic Missile	中距離彈道미사일
LIC	Low Intensity Conflict	低強度紛爭
MAD	Magnetic Airborne Detector	機上磁氣探知裝置
MBFR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s	中歐相互均衡兵力削 減交涉
MEB	Marine Expeditionary Brigade	海兵機動展開旅團

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複數個別誘導彈頭
MRBM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準中距離彈道미사일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北大西洋條約機構
NPG	Nuclear Planning Group	(NATO) 核計劃 그룹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政府開發援助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經濟協力開發機構
OMG	Operational Maneuver Group	作戰機動그룹
OTH	Over-the-Horizon	超水平線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타인解放機構
RL	Rocket Launcher	로켓트發射筒
RR	Recoilless Rifle	無反動砲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戰略兵器制限交渉
SAM	Surface-to-Air Missile	地(艦)對空미사일
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	戰略防衛構想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

SLCM	Sea-Launched Cruise Missile	海上發射巡航미사일
SNF	Short-Range Nuclear Force	短距離核戰力
SOC	Special Operations Command	特殊行動軍
SRAM	Short-Range Attack Missile	短距離攻擊미사일
SS	Surveillance Station	防空監視所
SSB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Nuclear-Powered	彈道미사일搭載原子力潛水艦
SSM	Surface-to-Surface Missile (Surface-to-Ship Missile)	地(艦)對地(艦) 미사일(지대함미사일)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戰略武器削減交渉
SURTASS	Surveillance Towed Array Sonar System	水中음파탐지감시체계
TASS	Towed Array Sonar System	泳航式(아레이·소나·시스템) 음파탐지체계
UNITA	Union for Total Independence of Angola	앙골라完全獨立民族同盟
USM	Underwater-to-Surface Missile	水中對地(艦) 미사일
VLF	Very Low Frequency	超長波
WEU	Western European Union	西歐聯合
WPO	Warsaw Pact Organization	바르샤바條約機構

軍事情勢

資料 1. 世界の集團安全保障條約

(平成 1 年 3 月 31 日現在)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北大西洋條約	1949 (1949)	20 年間 효력을 존속한 후에는 1 년의 事前通告에 의해서 脫退할 수 있음	벨지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서독,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화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1966.7 프랑스 脫退, 1974.8 그리스 脫退(1980 年 10 月 復歸), 1982.5 스페인加盟 (同軍事機構에는 加入하지 아니함)
美州相互援助條約(리오條約)	1948 (1947)	무기한으로 有効, 2 年の 사전통고에 의해서 脫退할 수 있음.	美國 및 中南美諸國 計 22 個國	쿠바는 1960 年 3 月以來 同條約下의 活動을 停止하고 있으나 本加盟國임.
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	1952 (1951)	무기한으로 有効, 1 年の 사전통고에 의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美國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美國間 3國 安全保障條約		해서 脫退할 수 있 음.		
美國·필리 핀相互防衛 條約	1952 (1951)	무기한으로 有効. 1 年の 사전통고에 의 해서 條約終了	미국·필리핀	
美國·韓國 間 相互防衛 條約	1954 (1953)	무기한으로 有効. 1 年の 사전통고에 의 해서 條約終了	미국·한국	
東南아시아 集團防衛條 約	1955 (1954)	무기한으로 有効. 1 年の 사전통고에 의 해서 脫퇴할 수 있 음.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 리핀, 타일랜 드, 영국, 미 국	條約機構는 1977年 6月 해체됨. 단, 條約은 계속 됨.
美國·파키 스탄相互協 力協定	1959 (1959)	무기한으로 有効. 1 年の 사전통고에 의 해서 協定終了됨.	미국·파키스 탄	
日本·美國 相互協力및 安全 保障 條約	1960 (1961)	10年間 効力を 존 속한 후는 1年の事 前通告에 의해서 條 約終了됨.	일본·미국	舊安保條約을 1951. 9 서명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미국·스페인 인防衛協力 協定	1989 (1988)	8年間 有効. 기간 만료후는 6個月의 사전통고에 의해서 協定終了됨.	미국·스페인	
東歐·소련 7 個國間友 好·協力및 相互援助條 約(바르샤 바條約)	1985 (1985)	20年. 期間滿了 1 年前에 폐기통고하 지 아니하면 다시 10년간 효력을 갖 는다.	불가리아, 체코 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 니아, 소련	1955 署名 1968. 9 알바니아 탈 퇴, 1985年 改定
소련·핀란 드友好協力 및 相互援 助條約	1948 (1948)	10年. 期間滿了 1 年前에 폐기통고치 아니할 경우에는 다 시 5년간 효력을 갖 고, 순차적으로 연 장됨(1955, 1970年 및 1983년에 本條 約의 有効期間을 20 年으로 하는 내용의 의정서 서명).		
소련·北韓 友好協力	1961 (1961)	10年間. 期間滿了 1년전에 폐기 통고	소련·북한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및 相互援助條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금 5년간 효력을 갖고, 순차적으로 연장됨.		
소련·폴란드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1965 (1965)	20年. 上同	소련·폴란드	1945署名 1965改定
소련·몽고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1966 (1966)	20年. 期間滿了前 폐기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0년간 효력을 갖고, 순차적으로 연장됨.	소련·몽고	1946署名 1966改定
소련·헝가리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1967 (1967)	20年. 期間滿了 1년전에 폐기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5년간 효력을 갖고 순차적으로 연장됨.	소련·헝가리	1948署名 1967改定
소련·불가리아友好·協力 및 相	1967 (1967)	20年. 上同	소련·불가리아	1948署名 1967改定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友好・協 力 및 相 互援助條 約	(1975)	년전에 폐기통고 않을 때는 다시 10년간 효 력을 갖게 됨.		1975 改定
소련・앙 골라友好 ・協力條 約	1977 (1976)	20年. 期間滿了 1년 전에 통고하지 않을 때는 다시 5년간 효 력을 갖게 되고, 순차 적으로 연장됨.	소련・앙골라	
소련・모 잠비크友 好協力條 約	1977 (1977)	20年. 上同	소련・모잠비 크	
소련・베 트남友好 ・協力條 約	1978 (1978)	25年. 期間滿了 1년 전에 폐기통고하지 않 을 경우 새로이 10년 간 효력을 갖게 됨.	소련・베트남	
소련・아 프카니스 탄友好善 隣協力條 約	1979 (1978)	20年. 期間滿了 6개 월전에 폐기통고 하지 않을 경우 다시 5년 간 효력을 가지며, 순 차적으로 연장됨.	소련・아프카 니스탄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互援助條約				
소련·체코 슬로바키아 友好·協力 및 相互援 助條約	1970 (1970)	20年. 期間滿了 1 年前에 폐기통고하 지 않을 경우에는 다 시 5년간 효력을 갖게 되고, 순차적 으로 연장됨.	소련·체코슬 로바키아	1943 署名 1970 改定
소련·루마 니아友好· 協力 및 相 互援助條約	1970 (1970)	20年. 上同	소련·루마니 아	1948 署名 1970 改定
소련·印度 平和友好協 力條約	1971 (1971)	20年. 上同	소련·인도	
소련·이락 友好·協力 條約	1972 (1972)	15年. 上同	소련·이락	
소련·소말 리아友好· 協力條約	1974 (1974)	20年. 上同	소련·소말리 아	1977.11 소말 리아 폐기를 통고함.
소련·東獨	1975	25年. 滿期滿了 1	소련·東獨	1964 署名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소련·이디 오피아友好 ·協力條約	1979 (1978)	20年. 期間滿了 1 년전에 폐기통고하 지 않을 경우 새로 5년간 효력을 갖고 순차적으로 연장됨.	소련·이디오피아	
소련·남예 멘友好·協 力條約	1980 (1979)	20年. 期間滿了 6 개월전에 폐기통고 하지 않을 때는 다 시 5년간 효력을 갖고 순차적으로 연 장됨.	소련·남예멘	
소련·시리 아友好·協 力條約	1980 (1980)	上同.	소련·시리아	
소련·콩고 友好·協力 條約	1982 (1981)	上同.	소련·콩고	
中國·北韓 友好·協力 및 相互援 助條約	1961 (1961)	無期限. 改正 또는 終了에 관해서 합의 하였을 때 條約이 종 료된다.	중국·북한	

條約名	發効年 (署名年)	期 間	當 事 者	備 考
北韓・리비아 友好・協 力에 관한 同盟條約	1982 (1982)	10年. 期間滿了 6 개월전에 폐기통고 하지 않을 경우는 다 시 5년간 효력을 갖고, 순차적으로 연장됨.	북한・리비아	
北韓・쿠바 親善・協力 條約	1986 (1986)	20年. 期間滿了 6 개월전에 폐기통고 하지 않을 경우 다 시 10년간 효력을 갖고 순차적으로 연 장됨.	북한・쿠바	

註：1. 條約名은 假譯名 내지 略稱

2. 東歐各國은 소련과의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과 같은 條約을 각각 2국간에 체결하고 있다.

資料 2. 第 2 次大戰後의 武力紛爭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시 아	國共 內戰	1945 ~ 49	中國國民黨 : 中國 共產黨	中國國民黨과 中國共產 黨의 직접 대립화를 계기 로 하여 中國共產黨에 의 한 中國의 統一
	인도네시아 獨立 戰爭	1945 ~ 49	화란 : 인도네시아	화란으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싼 紛爭
	인도지나戰 爭	1946 ~ 54	프랑스 : 베트남민 主共和國(越盟)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싼 紛爭
	第 1 次 印 · 파 紛爭	1947 ~ 49	인도 : 파키스탄	카시미르의 귀속을 둘러 싼 紛爭
	말라야의 反亂	1948 ~ 57	英國 : 共產게릴라	英領 말레이 各州의 支配 權을 장악하기 위한 공산 게릴라의 시도
	말라야의 反亂	1957 ~ 60	말라야聯邦 : 共產 게릴라	말라야聯邦 各州의 支配 權 장악을 위한 共產 게 릴라의 시도
	韓國 戰爭	1950 ~ 53	韓國, 美國(國聯) 등 : 北韓, 中國	北韓의 무력에 의한 韓半 島의 統一試圖
	金門·馬祖 砲擊	1954 ~ 78	臺灣 : 中國	金門·馬祖 兩島를 둘러 싼 砲擊 宣傳戰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아	라오스內戰	1959 ~ 75	라오스政府(右派 : 中立派) : 파테 트 라오(左派), 越盟	1973.2.21 라오스 平和 協定調印(2.22 停戰發 効), 1975.5 베트남 정 세 급변에 따른 左派首腦 의 국외탈출. 1975.12 라오스 人民民 主共和國 成立.
	티베트反亂	1959 ~	다라이·라마派 : 中國政府	티베트문제를 둘러싼 다 라이·라마派의 반란
아	中印國境紛 爭	1959 ~ 62	印度 : 中國	國境線을 둘러싼 紛爭
	越南戰爭	1960 ~ 75	越南, 美國등 : 베트남民族解放 戰線, 越盟	1973.1.27. 베트남平和 協定調印(1.28 發効). 1973.3.29. 베트남주둔 미군의 철수완료 1975.4. 北의 공격에 의해 티우政權 崩壞. 1975.11. 南北統一에 관 한 政治協商으로 統一의 조기실현에 완전합의.
	고아 紛爭	1961	인도 : 포르투갈	印度에 의한 포르투갈領 고아등 식민지의 병합.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아	第2次印· 파紛爭	1965 ~ 66	印度 : 파키스탄	카시미르의 귀속을 둘러싼 紛爭
	中·소國境 紛爭	1969	中國 : 소련	國境을 둘러싼 珍寶島 (다만스키島), 新疆遊 牧民地區 등에서 충돌이 발생.
시	캄보디아內 戰	1970 ~ 75	캄보디아政府 : 캄푸치아民族統一 戰線	政府 (론놀派) 와 民族 統一戰線 (시아누크派· 캄보디아共產黨) 과의 內戰
	第3次 印 · 파紛爭	1971	印度·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東파키스탄) 의 독립을 둘러싼 紛爭
아	西沙群島紛 爭	1974	越南 : 中國	西沙群島의 영유를 둘러 싼 紛爭
	티몰內戰	1975 ~ 78	親인도네시아派 · 인도네시아 (新 勇兵) : 卽時獨立 派 (左派)	포르투갈의 非植民地化 政策에 따른 내전
	베트남·캄 보디아紛爭	1977 ~	베트남 : 캄보디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國 境紛爭과 베트남의 캄보 디아에의 군사개입.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아 시 아	中·越紛爭	1979	中國·越南	越南의 캄보디아에 대한 軍事介入에 반대하는 中國과 越南의 紛爭
中 東 · 北 아 프 리 카	第1次中東 戰爭	1948 ~ 49	이스라엘 :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스라엘 國家의 독립을 부정하는 아랍의 試圖.
	알제리아戰 爭	1954 ~ 62	프랑스政府 : FLN (알제리아民族解 放戰線)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싼 紛爭
	사이프러스 紛爭	1955 ~ 59	英國政府 : EOKA (사이프러스戰士 全國組織)	英國의 지배를 배제하 고 사이프러스를 그리 스와 병합시키려고 한 그리스系住民의 試圖.
	第2次中東 戰爭	1956	英國, 프랑스, 이 스라엘 : 이집트	스에즈運河를 둘러싼 이 집트와 英·佛間의 紛爭 이스라엘은 英·佛 側에 참전.
	레바논出兵	1958	레바논政府, 美國 : 레바논反亂派	基督教徒大統領 샤문 이 재차 취임하려고 하였 기 때문에 반란이 발생. 美國은 레바논政府의 要 請으로 파병함.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中 東 · 北 아 프 리 카	쿠웨이트出 兵	1961	쿠웨이트, 英國 : 이라크	이라크이 쿠웨이트의 병합 을 노렸기 때문에 英國 이 파병함.
	예멘 內戰	1962 ~ 69	예멘政府, 이집트 : 예멘王黨派	共和政府에 대한 王黨派 의 鬪爭
	사이프러스 內戰	1963 ~ 64	사이프러스政府, 그리스 : 터키系 사이프러스人, 터 키	그리스系사이프러스人的 권력강화에 반대하는 터 키系 사이프러스人的 반 란.
	알제리아· 모로코國境 紛爭	1963	알제리아 : 모로코	國境地帶의 영유를 둘러 싼 紛爭
	第 3 次中東 戰爭	1967	이스라엘 :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의 독립쟁취를 둘러싼 紛爭
	第 4 次中東 戰爭	1973	이스라엘 : 이집트, 시리아	아랍이 第 3 次 中東戰爭 으로 이스라엘에 점령된 失地의 회복을 노린 紛 爭
	사이프러스 紛爭	1974	사이프러스·터키	中立派大統領(마카리오 스)의 追放으로 사이 프러스의 그리스併合沮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中 東 · 北 아 프 리 카				止 및 터키系住民의 보호를 위해서 터키가 軍事介入
	레바논內戰	1975 ~ 76	그리스트教徒右派 : 이슬람教徒左派	各種 各派間的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紛爭
	南北예멘紛爭	1978 ~ 79	北예멘 : 南예멘, 反北, 예멘政府그룹	政府軍과 北예멘民族 解放戰爭 등의 反政府 그룹, 南예멘軍에 의한 국경부근에서의 紛爭.
	아프카니스탄에의 소련의 軍事介入	1979 ~ 89	카르말政權, 소련 : 反카르말, 反소勢力. 1986. 5以來, 나지브라政權, 소련 : 反나지브라, 反소勢力	다라키·아민政權의 土地改革 등에 대한 반항이 국내에서 계속되었으나, 소련이 이에 軍事介入. 1988.2에 철수 완료한 후에도 나지브라 政權과 反政府勢力과의 戰鬥은 계속됨.
	이란·이라크 紛爭	1980 ~ 88	이란·이라크	國境河川의 領有權을 둘러싼 紛爭. 1988.8 停戰이 成立. 平和交渉進行中.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中東 · 北아프리카	레바논紛爭	1980 ~	그리스도教徒右派 (이스라엘, 이라크 支援) : 아랍平和 維持軍(시리아軍) 이슬람教徒左派	그리스도教徒右派와 이 슬람教徒左派와의 紛爭. 1984. 3 이후는 시리아 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 면서 國民和解를 추구. 1985. 6 의 이스라엘군대 철수이후는 그리스도教 徒 各派, 이슬람教徒 各 派 및 PLO에 의한 勢 力다툼을 하였음.
	레바논侵攻	1982	이스라엘 : PLO, 시리아	PLO 制壓을 위해 이스 라엘軍 레바논侵攻. (1985. 撤退完了).
中部 · 南部아프리카	케냐의反亂	1952 ~ 56	英國 : 마우마우團	白人 入植에 의해 토지 를 탈취당한 키크유族 등으로 구성된 마우 마 우團의 反亂.
	콩고動亂	1960 ~ 63	콩고政府 : 分離派, 벨지움.	콩고의 統一維持에 대한 분리독립과의 반란, 유 엔에 의해 조정.
	콩고紛爭 (現國名)	1964 ~ 65	콩고政府 : 反亂軍	中央政府에 대한 分離派, 기타의 권력투쟁에서 일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中 部 · 南 部 아 프 리 카	자이르)			어 난 紛爭
	南로데시아 紛爭	1965 ~ 79	南로데시아政府 : ZANU (짐바브에 · 아프리카民族同 盟), ZAPU (짐 바브에 · 아프리카 人民同盟), (잠 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이 支 援)	스미스白人政權과 黑人 게릴라組織과의 紛爭, 그후 짐바브에, 로데시 아政府 (무조레와政權) 와 黑人게릴라組織과의 분쟁으로 되었으나 1979 年 12 月, 英國, 무조레 와政權, ZANU, ZAPU 등 전달사자에 의해 協 定이 체결됨. 1980 年 4 月 짐바브에 獨立.
	나이지리아 內戰	1967 ~ 70	나이지리아政府 : 비아프라州	나이지리아의 統一維持 에 대한 분리독립파에 의한 紛爭
	우간다 · 탄 자니아紛爭	1972	우간다 : 우간다 亡命者, 탄자니아	우간다 亡命者가 탄자 니아로부터 우간다에 공 격한 것을 발단으로 일 어 난 紛爭
西사하라紛 爭	1973	모로코政府 (모리 타니아政府) : 폴	西사하라를 둘러싼 紛 爭.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中 部 · 南 部 아 프 리 카			리싸리오解放戰線 (알제리아가 支 援)	(모리타니아도 當初 폴리싸리오戰線과 싸웠 으나 1979年 8月 플 리싸리오戰線과 平和協 定을 체결하여 西사하 라로부터 撤退함).
	나미비아獨 立紛爭	1975	남아프리카政府 : SWAPO (南西아 프리카人民機構), (앙골라, 탄자니 아, 잠비아, 보츠 와나, 모잠비크, 짐바브웨가 支援)	나미비아駐屯 南아프리 카軍의 완전철폐를 요구 하는 SWAPO와 나미비 아 게릴라活動의 停止, 쿠바軍의 앙골라로부터 의 撤退 등을 나미비아 獨立의 조건으로 내세우 는 남아프리카政府와의 對立. 1988.12. 나미비아 獨立 手續을 1989年 4월에 개시할 것을 규정한 평 화협정에 서명.
	앙골라內戰	1975	MPLA (앙골라解 放人民運動) : FNLA (앙골라민 族解放戰線),	포르투갈의 앙골라 撤退 (1975.11)에 따른 解 放그룹간의 對立抗爭. 1988.12 쿠바軍의 철폐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中 部 · 南 北 아 프 리 카			UNITA (앙골라全 面獨立民族同盟).	등을 내용으로 하는 平 和協定에 署名.
	샤바紛爭 (자이크)	1977 ~ 78	자이크政府 : 反政 府派	政府軍에 대한 모부투政 權打倒, 샤바州 分離獨 立을 기도하는 武裝集 團의 抗爭.
	이디오피아 · 소말리아 紛爭	1977 ~ 78	이디오피아 : 西소 말리아解放戰線, 소말리아	오가덴地方을 둘러싼紛 爭.
	우간다·탄 자니아紛爭	1978 ~ 79	우간다 (리비아支 援) : 탄자니아, 우간다亡命者그룹	우간다의 아민政府軍과 탄자니아가 지원하는 우 간다亡命者그룹, 탄자니 아軍과의 紛爭
	에리트리아 紛爭	1962 ~	이디오피아政府 : 에리트리아解放勢 力	政府和 에리트리아 州의 分離獨立을 요구하는 反 政府勢力과의 紛爭
	차드內戰	1960	政府 (南部그리스 도教 · 黑人系部族) : 反政府게릴라 (北部이슬람教 · 아랍系 部族) 1981.11 以來 大統	政權을 둘러싼 部族間的 對立. 하브데現政權은 1987. 9. 리비아와 停 戰

地域	紛爭名	期間	當事者	摘要
中部・南部 아프리카			領派(親리비아派) : 國防相派(反리비아派・親佛派). 1982.10 以來 親政府(反리비아, 親佛): 反政府게릴라(親리비아). 1986 年以後 現政府(親佛): 反政府게릴라(親리비아), 리비아軍.	
歐 洲	그리스內戰	1946 ~ 49	그리스政府: ELAS(全國人民解放軍)	共産黨이 反亂軍을 지도하여 산악을 이용한 게릴라戰을 展開.
	베를린封鎖	1948 ~ 49	英國, 美國, 佛: 소련	소련에 의한 東베르린에로의 交通路 차단을 둘러싼 紛爭
	헝가리動亂	1956	헝가리政府, 소련: 헝가리民族主義派	헝가리國民의 民族革命的 운동에 대한 소련의 개입. 이에 대한 運動.
	체코事態	1968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을 포함한 바르샤바條約機構加	체코슬로바키아의 自由化를 저지하기 위한 武力介入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盟國 5 個國.	
美 洲	과테말라의 反革命	1954	과테말라政府 : 反 革命派	政府의 農地改革등에 反 對한 보수세력의 쿠데타 로 政權交替
	쿠바 革命	1956 ~ 59	바티스타政權 : 反 政府派	극단적인 압박정책 때문 에 國民의 지지를 잃은 바티스타정권을 반정부 파가 타도함.
	쿠바 進攻	1961	쿠바政府 : 쿠바亡 命者	1961.4.17 在美쿠바인 들이 쿠바진공을 하였으 나 실패함.
	쿠바 危機	1962	美國 : 소련, 쿠바	소련의 中距離미사일을 쿠바에 시설한 데서 일 어난 危機
	베네주엘라 의 反亂活 動	1962 ~ 63	베네주엘라政府 : 反亂派	社會改革은건 과政權에 대한 共產黨, MIR 등의 反動活動
	도미니크共 和國內亂	1965	도미니크政府, 美 國 : 反亂派	젊은 將校그룹이 立憲 主義復歸를 목적으로 반 란을 일으킨데서 내전 상태로 발전, 美軍 및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美 洲				美洲機構平和維持軍이 개입함.
	니카라과內 戰	1979	니카라과政府 : 反 政府派	산다니스타民族解放戰線 (FSLN) 등에 의한 革 命・政權樹立後, 同政權 의 左傾化에 반대하는 세력(콘트라)이 게릴 라戰을 전개. 1988.3 暫定的인 停戰 에 합의 성립. 본격적 停戰協議決裂後도 停戰 狀態 계속함.
	엘살바도르 內戰	1979 ~	엘살바도르政府 : 反政府派	파라본드・마르치民族解 放戰線(FMLN)이 현정 부타도를 위해서 게릴라 戰을 전개.
	포크랜드(마르비나스) 紛爭	1982	英國 : 아르헨티나	포크랜드(마르비나스) 諸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軍事衝突.
	그레나다派 兵	1983	그레나다反亂派 : 美國, 자마이카, 바베이도스, 東카 리브海 諸國	東카리브海諸國機構, 設 立條約加盟國이 同條約 에 따른 집단조치로서 그리고 美國등이 上記

地域	紛爭名	期間	當 事 者	摘 要
				措置에 대한 지원 요청 으로 그레나다에 派兵함.

資料 3. 主要國・地域兵力 一覽 (概數)

陸上兵力		海上兵力			航空兵力 (作戰機數)	
	萬名		萬噸	隻		機
중 국	230.0	소 련	764.9	3,080	소 련	9,380※
소 련	200.0	美 國	647.6	1,250	中 國	6,000※
인 도	120.0	英 國	100.9	440	美 國	5,260※
베트남	110.0	中 國	94.5	1,980	北 韓	770
이 략	95.5	프랑스	50.0	350	인 도	740※
美 國	77.6	벨지움	27.4	70	西 獨	680※
北 韓	75.0	인 도	25.4	150	프랑스	680※
韓 國	54.0	西 獨	24.6	290	폴란드	670※
터 키	52.3	臺 灣	20.8	610	英 國	640※
파키스탄	45.0	터 키	20.5	250	이스라엘	580
西 獨	33.2	이태리	19.8	210	리비아	510
이집트	32.0	브라질	17.4	120	臺 灣	500
이디오피아	31.3	인도네시아	14.9	130	이 략	500
이 략	30.5	스페인	14.8	250	시리아	450
시리아	30.3	캐나다	14.4	70	체코슬로바키아	450
日 本	萬名 15.6	日 本	萬噸 28.0	隻 160	日 本	機 390※

註：1. 資料는 陸・空軍에 관해서는 “밀리탈리·발란스(1988~89) 등, 海軍에 관해서는 “제인 海軍年鑑(1989~90)” 등에 의함.

2. 日本은 昭和 63年度末 현재의 各自衛隊의 실세를 표시하고, 作戰自衛隊의 실세를 표시하고, 作戰機에는 輸送機를 포함함.

3. 作戰機數中 ※印은 空軍, 海軍 및 海兵隊의 作戰機數를 포함함을 표시함.

4. 配列은 兵力의 큰 順으로 되어 있다.

資料4. 主要國・地域の正規軍 및 豫備兵力(推定)

國名	兵役制	軍種	正規軍 (萬名)	豫備兵役 (萬名)
美國	志願	陸軍	77.6	76.4
		海軍	78.3	19.1
		空軍	60.3	19.5
소련	徵兵	5軍種	509.6	5,500.0
		陸軍	15.8	25.1
英國	志願	海軍	6.5	3.4
		空軍	9.4	3.5
		陸軍	28.1	27.0
프랑스	徵兵	海軍	6.7	2.8
		空軍	9.5	5.8
		陸軍	33.2	71.6
西獨	徵兵	海軍	3.6	2.6
		空軍	10.9	10.4
		陸軍	26.5	52.0
이탈리아	徵兵	海軍	4.8	22.1
		空軍	7.3	2.8
		陸軍	120.0	24.0
印度	志願	海軍	5.2	-
		空軍	11.5	-
		陸軍	230.0	
中國	徵兵	海軍	30.0	120.0以上
		空軍	47.0	

國 名	兵役制	軍 種	正 規 軍 (萬 名)	豫 備 兵 役 (萬 名)
北 韓	徵 兵	陸 軍	75.0	50.0
		海 軍	3.9	4.0
		空 軍	5.3	-
		陸 軍	54.2	再編中
韓 國	徵 兵	海 軍	5.4	
		空 軍	3.3	
		陸 軍	32.0	50.0
이 집 트	徵 兵	海 軍	2.0	1.4
		空 軍	2.5	2.0
		陸 軍	10.4	49.4
이스라엘	徵 兵	海 軍	0.9	0.1
		空 軍	2.8	0.9
		陸 軍	15.6	4.6
日 本	志 願	海 軍	4.4	0.11
		空 軍	4.6	0.08

註 1) 資料는 “ 밀리탈리 · 발란스 (1988~89) ” 등에 의함.

2) 日本은 昭和 63年度末의 各自衛隊의 실세를 표시함.

3) 美國, 英國, 中國, 韓國의 海軍兵力에는 海兵隊를 포함함.

4) 이집트는 그밖에 防空軍 (正規軍 8萬名, 豫備兵力 7萬名)을 보유하고 있음.

資料 5. 各國의 主要한 核戰力

	미 사 일			長 距 離 (戰 略) 爆 擊 機
	ICBM (大陸間彈道미사일)	IRBM/MRBM/GLCM (中距離彈道미사일 등)	SLBM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	
美 國	1,000 基	224 基	640 基	337 基 ²⁾
	미니트만Ⅱ型 450 미니트만Ⅲ型 511 퍼스키퍼 39	BGM-109 G (GLCM) 109 퍼싱Ⅱ (MRBM) 115	포세이든 C-3 型 256 트라이덴트 C-4 型 384 (彈道미사일原子力潛水 艦 36 隻)	B-1B 74 B-52 263
소	1,386 基	484 基	978 基 ³⁾	175 基 ⁴⁾
련	SS-11 型 420	SS-4 型 79	SS-N-5 型 36	TU-95 (베어) 170
	SS-13 型 60	SS-20 型 405	SS-N-6 型 256	M-4 (파이슨) 5
	SS-17 型 138		SS-N-8 型 286	
	SS-18 型 308		SS-N-17 型 12	
	SS-19 型 350		SS-N-18 型 224	
SS-24 型 10		SS-N-20 型 100		
SS-25 型 100		SS-N-23 型 64		

	미 사 일			長 距 離 (戰略)爆撃機
	ICBM (大陸間彈道미사일)	IRBM/MRBM/GLCM (中距離彈道미사일 등)	SLBM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	
소 련			彈道미사일 原子力潛 水艦 63 隻, 彈道미사 일 在來型潛水艦 12 隻	
英 國			64 基 플라티스A-3 型 64 (彈道미사일 原子力潛 水艦 4 隻)	
프 랑 스	18 基 S-3 型 18		96 基 M-4 型 32 M-20 型 64 (彈道미사일 原子力潛 水艦 6 隻)	미라쥬 IV P 18

	미 사 일		長 距 離 (戰略) 爆 擊 機
	ICBM (大陸間彈道미사일)	IRBM/MRBM/GLCM (中距離彈道미사일등)	
中	若干基 CSS-4 -	約 110 基 CSS-2 -	
國	CSS-3 -	CSS-1 -	

註 1) 資料는 밀리탈리·발란스(1988 ~ 89), INF條約諒解覺書에 의한 것인데, 미소의 INF미사일은 현재 폐기 중에 있음.

2) 그밖에 FB-111 56 機를 보유하고 있음.

3) 978 基中 36 基는 SALT의 對象外이다.

타이폰級 原子力潛水艦(SS-N-20 × 20 機塔載) 5 척

D-IV級 原子力潛水艦(SS-N-23 × 16 基 塔載) 4 척

D - III級 原子力潛水艦(SS-N-18 × 16 基 塔載) 14 척

D - II級 原子力潛水艦(SS-N-8 × 16 基 塔載) 4 척

D - I級 原子力潛水艦(SS-N-8 × 12 基 塔載) 18 척

Y - II級 原子力潛水艦(SS-N-17 × 12 基 塔載) 1 척

Y - I級 原子力潛水艦(SS-N-6 × 16 基 塔載) 16 척

H - III級 原子力潛水艦(SS-N-8 × 6 基) 1 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기타 백파이어 약 360기, 파자 약 450機, 브라인더 약 160 機를 보유하고 있음.

資料 6. 主要 핵미사일의 性能諸元

區 分	國別	名 稱	射程 (km)	彈頭 (威力)	誘導方式	備 考
ICBM	美 國	미니트만Ⅱ	12,500	單彈頭 (約 2MT) MIRV	慣 性	固燃 3 段
		미니트만Ⅲ	11,000	(170KT×3 또는	慣 性	固燃 3 段
		피스키피	以 上 8,000	335KT×3) MIRV		固燃 3 段, 液 燃 1 段 또는
		小型 ICBM	以 上 11,000	(500KT×10) 單彈頭 (500KT)	慣性 또는 慣性+天 測	固定사이로型 開發中 路上移動型
	소 련	SS-11	10,000~ 13,000	단탄두 (950KT 또 는 1MT) 또는 MRV (100-300KT ×3)	관 성	液燃 2 段
		SS-13	9,400	단탄두 (750KT) 추정	관 성	固燃 3 段
		SS-17	10,000 ~ 11,000	단탄두 (3,6MT) 또는 MIRV (200 KT 以上 × 4) 추정	관 성	液燃 2 段
		SS-18	11,000~ 16,000	단탄두 (20-25MT) 또는 MIRV (500 KT 以下 × 8 ~ 10)	관 성	液燃 2 段
		SS-19	10,000	단탄두 (5~10MT) 추정 또는 MIRV	관 성	液燃 2 段

區分	國別	名稱	射程 (km)	彈頭 (威力)	誘導方式	備考
ICBM	소련			(200KT×4~6, 혹은 500KT×6) 추정		
		SS-24	推定 8,500~ 10,000	MIRV (300~500KT× 8~10)	불명	固燃 3段推定, 鐵道移動型 또는 固定사이로
		SS-25	10,000	단탄두 (550KT) 추정	불명	固燃 3段, 路上移動型
	中國	CSS-3	7,000	단탄두 (2MT) 추정	관성	液燃 2段
		CSS-4	10,000 以上	단탄두 (1~5MT) 추정	관성	液燃 3段
SLBM	美國	포세이돈 C-3	약 4,600	MIRV(40KT×10)	관성	固燃 2段
		트라이덴트 I(C-4)	약 7,400	MIRV(100KT×8)	慣性+天測	固燃 3段
		트라이덴트 II(D-5)	약 12,000	MIRV (300~475KT× 8~12)	慣性+天測	開發中 固燃
	소련	SS-N-5	1,400	단탄두 (1MT)	관성	液燃
		SS-N-6	2,400~ 3,000	단탄두 (1MT) 또는 MRV(500KT×2)	관성	液燃
		SS-N-8	7,800~ 9,100	단탄두 (800 MT 또는 1MT)	慣性+天測	液燃
		SS-N-17	3,900	단탄두 (1MT)	관성	固燃

區 分	國別	名 稱	射程 (km)	彈頭 (威力)	誘導方式	備 考
SLBM	련	SS-N-18	6,500~ 8,000	단탄두 (450KT) 또는 MIRV(200 KT×3 또는 7)	관 성	液燃 2 段
		SS-N-20	8,300	MIRV (100KT×6~9)	불 명	固燃
		SS-N-23	8,300	MIRV (100KT×10)	불 명	液燃
	英國	폴라리스 A-3	약 4,600	MRV(200KT×3)	관 성	固燃 2 段
	프랑스	M-20	약 3,000	단탄두 (1,2MT)	관 성	固燃 2 段
		M-4	4,500	MIRV(150KT×6)	관 성	固燃 3 段
	中國	CSS-N-3	약 2,700	단탄두 (약 2MT)	관 성	
I/MRBM	美國	* 퍼싱 II	약 1,800	단탄두 (5~50KT) 또는 10~20KT)	慣性 + RADAG	固燃 2 段
	소련	* SS-4	1,500 ~ 2,000	단탄두 (1MT)	관 성	液燃 2 段
		* SS-20	5,000	MIRV (150KT×3)	관 성	固燃 2 段
	佛	S-3	3,000	단탄두 (1,2MT)	관 성	固燃 2 段
	中國	CSS-1	1,200	단탄두 (15~20 KT) 추정	불 명	液燃
		CSS-2	2,500 ~ 3,000	단탄두 (1~3MT) 또는 MRV(50~ 100KT×3) 추정	불 명	液燃

區分	國別	名稱	射程 (km)	彈頭 (威力)	誘導方式	備考
巡航 미사일 (장거리)	美 國	* GLCM (BGM-109G)	2,500	단탄두	慣性+地 形照會	地上發射型
		토마호크 (TRAN-N)	2,500	단탄두 (200KT)	慣性+地 形照會	海上 / 海中 發射型
		ALCM	2,500	단탄두 (200KT)	慣性+地 形照會	空中發射型
	* 소 련	SSC-X-4	3,000	단탄두	不 明	地上發射型
		SS-N-21	3,000	단탄두	不 明	海中發射型
		AS-15	3,000	단탄두	不 明	空中發射形, 配置中

1. ※표는 INF條約對象의 미사일임.

2. 資料는 “제인年鑑 (1988 ~ 89) 등에 의함.

資料 7. INF 條約의 概要

1. 條約의 構成

INF 條約은 ① 條約本文, ②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에 관한 附屬諒解覺書, ③ 미사일 시스템의 廢棄를 規定한 절차에 관한 附屬議定書, ④ 査察에 관한 附屬議定書 등의 4 個의 文書로 이루어져 있다.

2. 廢棄對象미사일, 數量, 廢棄期間

種 類	國 名	機 種 名	미사일數(發)	廢棄期間
장거리 INF 미사일 (射程 1,000 ~ 5,500 km)	美 國	合計	689(429)	3 年以內
		퍼싱 II	247(120)	
		GLCM	442(309)	
	소 련	合計	826(470)	
		SS-20	650(405)	
		SS-4	170(65)	
		SS-5	6(-)	
단거리 INF 미사일 (射程 500-1,000 km)	美 國	퍼싱 IA	170(-)	18 個月 (以內)
	소 련	合計	926(387)	
		SS-12	726(220)	
		SS-23	200(167)	

註 1. 各欄의 ()의 數는 配置數임.

2. 本條約에서는 장거리 INF 미사일은 中距離미사일, 短射程 INF 미사일은 短距離미사일이라 呼稱한다.

3. 本條約의 發効前에 實驗은 되었으나 配置하지 않은 INF 미사일인 美國의 퍼싱 IB 와 소련의 SSC-X-4에 대해서도 6 個月以內에 廢棄된다.

3. 廢棄方法

廢棄는 原則적으로 爆破, 解體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發射에 의한 廢棄(最初 6個月間에 100發以內)나 展示物로서의 保存(15基以內)도 인정되고 있다.

4. 檢證

(1) 데이터交換에 따른 査察

(2) 活動終了에 따른 査察

(3) 廢棄의 査察

미사일 및 發射基가 破壞되는 경우의 監視

(4) 緊急査察

급한 通告로 행하는 現地査察

① 廢棄期間의 3年間 年間 20回

② 廢棄期間滿了後의 最初의 5年間 年間 15回

③ 廢棄期間滿了後의 最初의 5年間 年間 10回

(5) 常駐査察

① 査察期間 13年間

② 다음 施設物 밖에 常駐하면서 出入口를 계속 감시한다.

(㉞) 소련側: 보또킨스크 기계제작공장(SS-20, SS-25미사일 製造施設)

(㉟) 미국側: 하글즈 第1工場(퍼싱II미사일, 퍼스키퍼 미사일 의 推進部 등의 製造施設)

(6) 國內技術手段

서로 상대국의 國內技術手段(人工衛星에 의한 監視)을 방해 하지 않을 義務가 있다.

(7) 特別査察委員會

條約遵守에 관한 問題解決을 위해서 어느편이든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開催될 수 있다.

5. 有効期間

(1) 有効期間は 無期限

(2) 國益에 反하지 않는다고 判斷되었을 경우에는 本條約으로 부터 脫退할 수 있다.

資料8. 나토, 바르샤바의 發表에 따른 歐洲의 軍事밸런스

1. 나토 發表(1988 年 11 月 25 日)

項 目	나 토	比 率	바르샤바
兵 力 (萬名)	221	1:1.4	309
師 團	72	1:2.9	210
施 團	93	2.2:1	43
主力戰車	16,424	1:3.1	51,500
戰鬥用裝甲車	4,153	1:5.4	22,400
其他裝甲車	35,351	1:2	71,000
火 砲	14,458	1:3	43,400
對戰車火器	18,240	1:2.4	44,200
防空火器	10,309	1:2.4	24,400
헬리콥터	2,429	1:1.5	3,700
渡河支援車兩	454	1:5.6	2,550
作戰用航空機	3,977	1:2.1	8,250

註 1. 資料“歐洲의 通常戰力”(88.11.25)은 各國의 分을 集計한 것.

2. 比率은 發表에 따라 算定한 것.
3. 兵力數는 地方部隊兵力數의 合計.

2. 바르샤바發表(1989 年 1 月 30 日)

項 目	바르샤바	比 率	나 토
歐洲 및 附屬海域의 兵力總數(千人)	3,574.1	1:1	3,660.2
海軍前線(戰術)航空部隊			
防空軍 航空部隊 및 海軍航空部隊의 作戰用航空機	7,876	1.1:1	7,130

項 目	바르샤바	比 率	나 토
空軍前線(戰術) 航空部隊 및 防空軍航空部隊의 作戰用 航空機	5,355	1:1	5,450
地上目標 攻擊能力이 없는 防空軍의 邀擊 戰鬪機	1,829	36:1	50
海軍航空部隊의 作戰用航空機	692	1:2.4	1,630
空軍前線(戰術) 航空部隊, 防空軍航空部隊의 航空機中 의 攻擊機(爆擊機, 戰鬪爆 擊機, 對地(艦)攻擊機)	2,783	1:1.5	4,075
戰鬪用헬리콥터(海軍을 포 함함)	2,758	1:1.9	5,270
戰術로켓트(미사일)發射機	1,608	11.8:1	136
戰車	59,470	1.9:1	30,690
對戰車미사일發射裝置	11,465	1:1.6	18,070
裝甲步兵戰鬪車 및 裝甲人員 輸送車	70,330	1.5:1	46,900
多連裝로켓트, 火砲(口徑 75 mm 以上 및 迫擊砲(口徑 50 mm 以上)	71,560	1.3:1	57,060

- 註 1. 資料 바르샤바 國防相會議聲明(89.1.30)의 各國分을 集計한 것.
2. 兵力은 陸·海·空軍의 兵力數의 合計.

資料9 韓半島の軍事力

		北 韓	韓 國	駐韓美軍
總兵力		約 84.2 萬名	約 62.9 萬名	約 4.4 萬名
陸 軍	兵力	約 75.0 萬名	約 54.2 萬名	約 3.1 萬名
	主 要 部 隊	自動車化步兵師團 1	機械化步兵師團 2	步兵師團 1
		步兵師團 25	步兵師團 19	
		防空師團 2	獨立步兵旅團 1	
	要 部 隊	獨立步兵旅團 4	特殊戰旅團 7	
		機甲旅團 15	防空旅團 2	
		自動車化步兵旅團 20	SAM旅團 2	
	部 隊	特殊旅團 25	SAM大隊 2	
		砲兵旅團 4		
		重砲兵聯隊 2		
迫擊砲聯隊 2				
防空砲聯隊 7				
	SSM大隊 6			
艦艇	約 520 隻約 7.1 萬噸	約 170 隻 約 11.3 萬噸	支援部隊等, 約 400 名	
海 軍	主 要 艦 艇	護衛艦 3		
		潛水艦 21		
		(W級 4)		
		(R級 17)		
		미사일高速艇 32		
		오사級 8		
		판첸級 4		
		고마級 8		

		北 韓	韓 國	駐 韓 美 軍
海 軍	主要 艦艇	소문級 8 소주級 4		
	海兵		2 個師團 約 2.5 萬名	支援部隊團 約 600 名
空 軍	作戰機	約 770 機	約 390 機	約 100 機
	主 要 機 種	輕爆擊機 1 L-28 80 機 戰鬥機 SU-7 20 機 SU-25 10 機 MIG-15/17 280 機 MIG-19 160 機 MIG-21 160 機 MIG-23 50 機 MIG-29 10 機	戰鬥爆擊機 F-4D/E 68 機 F-5A/B/E/F 260 機 F-16C/D 24 機 對게릴라戰機 A-37B 23 機 정찰기 RF-5A 10 機	戰鬥機(注) F-4E 24 機 F-16 48 機 攻擊機 A-10 24 機
參 考	人口 兵役	約 2,169 萬名 陸軍 5~8 年 海軍 5~10 年 空軍 3~4 年	約 4,291 萬名 陸軍·海兵隊 2.5 海·空軍 ~3 年	

註 1. 北韓·韓國에 대해서는 “밀리탈리 발란스(1988~89)” 및 “제인年鑑(1989~90)” 등에 의함.

2. F-4E에 관해서는 1988 年 여름에 F-16 에로의 更新이 開始되었다.

3. 駐韓美軍에 대해서는 1988 年 12 月 現在임.

4. 北韓空軍의 機數는 概數임.

資料 10. 日本國과 美合衆國間的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抄)

(昭和 35年 6月 23日)

(條約第 6號)

日本國과 美合衆國은

양국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民主主義의 諸原則, 個人의 自由 및 法の 支配를 옹호할 것을 희망하고,

또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따라서 각자 자기나라에서의 경제적 안정 및 福祉의 조건을 助長하기를 희망하고,

國際聯合憲章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과 모든 國民 및 모든 政府와 더불어 平和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國際聯合憲章에서 정하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權利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이 극동에서의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여

여기에 다음과 같이 協定한다.

第 1 條

締約國은 國際聯合憲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가 관계할 수 있는 國際紛爭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국제적 平和와 安全, 正義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해결하고, 아울러 各者의 國際關係에서 어떠한 나라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관하여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武力行使 및 國際聯合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方法에 의하는 것도 신중할 것을 약속한다.

締約國은 다른 평화애호국과 협동하여 國際的 平和 및 安全을 유지하는 國際聯合의 임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國際聯合을 강화하는데 노력한다.

第 2 條

締約國은 그의 자유로운 諸制度를 강화함으로써, 이들 制度의 基礎를 이루는 原則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아울러 安定 및 福祉의 조건을 조장함으로써,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國際關係를 보다 더욱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다. 締約國은 國際經濟政策에서의 마찰을 제거함에 노력하고, 또 兩國間 경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第 3 條

締約國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상호 협력하여 계속적이고 효과적인 自助 및 相互援助에 의해서 武力攻擊에 저항하는 각자의 능력을 憲法の 규정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하여 유지, 발전시킨다.

第 4 條

締約國은 이 條約의 실시에 관해서 수시 협의하고, 또 日本國의 安全 또는 극동의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어느 일방 締約國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한다.

第 5 條

各 締約國은 日本의 施政下에 있는 영역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武力攻擊이 자국의 평화 및 安全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수속에 따라서 共通의 危機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前記의 武力攻擊과 그 結果 취해진 모든 措置는 國際聯合憲章 第 51 條의 규정에 따라 곧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국제적 平和 및 安全을 회복하고 또

維持하기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 6 條

日本의 안전에 기여하고, 또 극동에서의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美合衆國은 그의 陸軍, 空軍 및 海軍이 日本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前記의 施設 및 區域의 사용과 日本에서의 美合衆國軍隊의 지위는 1952年 2月 28日 東京에서 서명된 日本과 美合衆國간의 安全保障條約 第3條에 따른 行政協定(改正을 포함함)에 대신하는 별개의 협정 및 합의되는 기타 협정에 의해서 규율된다.

第 7 條

이 條約은 國際聯合憲章에 따른 締約國의 권리와 의무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國際聯合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資料 11. 日本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 6 條에
따른 施設과 區域 및 日本國에서의 美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抄) (昭和 35 年 6 月 23 日)
(條約第 7 號)

第 1 條(用語의 意義)

이 協定에서

a. “合衆國軍隊의 構成員”이란 日本의 領域에 있는 美合衆國의 陸軍, 海軍 또는 空軍에 속하는 人員으로 현재 복무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b. “軍屬”이란 合衆國의 國籍을 갖는 文民으로 日本에 있는 合衆國軍隊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또는 여기에 隨伴되는 자(通常 日本에 居住하는 자와 第 14 條 1 에 해당하는 자는 除外됨)를 말한다. 이 協定만을 적용하는데 合衆國 및 日本의 二重國籍者로서 合衆國이 日本에 입국시킨 자는 合衆國 國民으로 간주한다.

c. “家族”이란 다음과 같다.

(1) 配偶者 및 21 歲未滿의 子

(2) 父·母 및 21 歲以上の 子로 생계비의 半額이상을 合衆國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에 의존하는 자.

第 2 條(施設, 區域의 提供 등)

1 a. 合衆國은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第 6 條의 규정에 따라 日本 國內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허용받는다. 개개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協定은 第 25 條에 정하는 合同委員會를 통해서 兩政府가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施設 및 區域”에는 당해시설 및 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현존의 설비, 비품 및 定着物을 포함한다.

b. 合衆國은 日本과 美合衆國間의 安全保障條約 第3條에 따른 行政協定の 종료시에 使用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을 兩政府가 a의 規定에 따라 합의한 시설 및 구역으로 간주한다.

2. 日本政府 및 美合衆國政府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기의 規定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前記의 施設 및 구역을 일본에 반환할 것과 새로이 시설 및 구역을 제공할 것에 합의할 수가 있다.

3. 美合衆國軍隊가 사용하는 施設 및 區域도 이 協定の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日本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美合衆國은 施設 및 區域의 필요성을 前記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a. 美合衆國軍隊가 施設 및 區域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日本政府는 임시 그와같은 施設 및 區域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日本國民에게 사용시킬 수가 있다. 단 이 使用이 美合衆國 軍隊에 의한 當該施設 및 區域의 정규의 사용목적에 있어서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合同委員會를 통해서 兩國政府間에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b. 合衆國軍隊가 일정한 시기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할 施設 및 區域에 관해서는 合同委員會는 當該 施設 및 區域에 관한 協定안에 적용이 있는 이 協定の 規定 범위를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12條(需品 勞動 등의 調達 및 調達物 등의 租稅의 免除 등)

4. 現地の 勞務에 대한 合衆國軍隊 및 第15條에 정하는 諸機關의 수요는 日本 當局의 원조를 얻어서 충족한다.

第15條(美合衆國의 軍當局이 公認하고 規制하는 諸機關의 管理 등)

1 a. 美合衆國의 軍當局이 공인하고, 또 규제하는 海軍販賣所, P.X, 食堂, 社交클럽, 극장, 戰鬪 기타 歲出外資產에 의한 諸機關은 合衆國

軍隊의 구성원 및 군속과 가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美合衆國軍隊가 사용하고 있는 施設 및 區域內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이들 諸機關은 이 協定에 別項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日本의 規定, 免許, 手數料, 租稅 또는 유사한 관리에 따르지 않는다.

第 24 條 (經費의 負擔 등)

1. 日本에 美合衆國軍隊를 유지하는데 수반되는 經費는 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日本이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協定의 존속기간중 日本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美合衆國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日本은 第2條 및 第3條에 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 및 구역과 路線權 (飛行場 및 港灣의 시설 및 구역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施設 및 區域을 포함함)을 이 協定의 존속기간중 美合衆國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제공하며,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施設과 區域 및 路線權의 所有者 및 提供者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協定에 따라 생기는 資金上의 거래에 適要해야 할 經理를 위해서 日本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에 協定을 맺을 것에 합의한다.

第 25 條 (合同委員會의 設置)

1. 이 協定의 실시에 대해서 相互間 協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日本政府와 合衆國政府間의 協議機關으로서 合同委員會를 설치한다. 合同委員會는 특히 合衆國이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의 목적수행에 사용함에 필요한 日本國內의 施設과 區域을 결정하는 協議機關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2. 合同委員會는 日本國政府의 代表者 1人和 合衆國政府의 代表者 1인으로 조직하며, 各代表者는 1人 또는 2人이상의 대리 및 직원단을 갖기로 한다. 合同委員會는 수속 규칙을 정하고, 또 필요한 補助機構 및 事務機關을 둔다. 合同委員會는 日本國政府와 合衆國 政府의

어느 일방의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곧 응수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3. 合同委員會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그 問題를 各 政府에 다시금 고려하도록 이송한다.

資料 12. 美日防衛協力を 위한 指針

이 指針은 美日安保條約 및 關聯規定에 따라 美日兩國이 갖게 된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 指針이 기술하는 美國에 대한 日本의 편의공여와 지원의 실시는 日本의 關係法令에 따르기로 양해되었다.

I. 侵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態勢

1. 日本은 그의 防衛政策으로서 自衛隊가 필요로 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防衛力을 보유하고 그의 가장 효율적인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유지하며, 또 地位協定에 따라 美軍에 의한 在日施設과 區域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使用을 확보한다. 그리고 美國은 核抑止力을 보유함과 同時에 卽應部隊를 前方展開하여, 來援할 수 있는 기타의 병력을 보유한다.

2. 美日兩國은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이 있을 경우에 共同對處行動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作戰, 情報, 後方支援 등의 分野에서 自衛隊와 美軍간의 협력태세의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위해서

(1) 自衛隊와 美軍은 日本防衛를 위해 均衡이 잡힌 作戰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실시하기 위해서 共同作戰計劃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리고 필요한 共同演習과 共同訓練을 적시에 실시한다.

또한 自衛隊와 美軍은 作戰을 원활하게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共通의 實施要領을 미리 연구하여 준비해 놓는다. 이 實施要領에는 作戰, 情報와 後方支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通信電子活動은 指揮와 連絡에 不可缺하기 때문에 自衛隊와 美軍은 通信電子活動에 관해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事項을 미리 정해 놓는다.

(2) 自衛隊와 美軍은 日本防衛에 필요한 情報를 작성하고 교환한다. 自衛隊와 美軍은 情報의 交換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交換하는 情報의 종류와 교환의 임무를 맡는 自衛隊와 美軍의 部隊를 조정하여 整해 놓는다.

그리고 自衛隊와 美軍은 상호간의 通信連絡體系의 整備 등 所要의 조치를 취함에 의해서 긴밀한 情報協力態勢를 確立하게 한다.

(3) 自衛隊와 美軍은 美日兩國이 各各 自國의 自衛隊와 軍의 後方支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基本原則에 따라 적시 적절하게 相互支援을 실시할 수 있도록 補給, 수송, 정비, 시설 등의 各 機能에 관해서 미리 긴밀하게 서로 조정하고 또는 研究한다. 이 相互支援에 필요한 細目은 公同의 研究 및 計劃作業을 통해서 밝혀진다. 특히 自衛隊와 美軍은 豫상되는 不足補給品目, 數量, 補完의 優先順位, 緊急取得要領 등에 대해서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은 물론 自衛隊의 基地와 美軍의 施設・區域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의 형태에 대해서 研究한다.

II.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의 對處行動

1. 日本에 대한 무력공격이 豫려되는 경우

美日 양국은 연락을 보다 긴밀히 하여 各者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情勢變化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自衛隊와 美軍間의 調整機關의 개설을 포함해서 整合이 實現된 共同對處行動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自衛隊와 美軍은 各者가 실시하는 작전준비에 관해 美日 兩國이 整合이 實現된 公同의 準備段階를 선택하여 自衛隊와 美軍이 各各 효과적인 作戰準備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公同의 기준을 미리 整해 놓는다.

이 共通의 基準은 情報活動, 部隊의 行動準備, 移動, 後方支援 기타

작전준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표시하며, 部隊의 警戒監視를 위한 태세의 강화로부터 部隊의 戰鬥準備態勢를 최대한 강화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준비단계를 구분해서 표시한다.

自衛隊와 美軍은 各各 미일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선택된 準備段階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作戰準備를 실시한다.

2.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이 이루어졌을 경우

(1) 日本은 원칙적으로 한정적이고 소규모적인 침략을 자력으로 배제한다. 侵略의 규모와 형태등이 자력으로 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美國의 協力을 받아서 이를 배제한다.

(2) 自衛隊와 美軍이 日本防衛를 위한 作戰을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쌍방은 서로 긴밀하게 調整하여 각자의 防衛力を 적시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가. 作戰構想

自衛隊는 주로 日本 領域과 그 周邊海域·空域에서 방위작전을 하고, 美軍은 自衛隊가 수행하는 작전을 지원한다.

자위대와 미군은 陸上作戰, 海上作戰과 航空作戰을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a) 陸上作戰

陸上自衛隊와 美軍部隊는 일본방위를 위한 陸上作戰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陸上自衛隊는 阻止, 持久 및 反擊을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美陸上部隊는 필요에 따라 來援하며, 반격을 위한 작전을 중심으로 陸上自衛隊와 공동으로 작전을 실시한다.

(b) 海上作戰

海上自衛隊와 美海軍은 周邊海域의 방위를 위한 海上作戰과 海上交通의 保護를 위한 해상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海上自衛隊는 日本의 중요한 港灣과 海峽의 防備를 위한 작전 및 주변해역에서의 對潛作戰, 선박의 보호를 위한 作戰, 其他作戰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美海軍部隊는 海上自衛隊가 수행하는 작전을 지원하고, 또한 機動打撃力을 갖는 任務部隊를 사용하는 작전을 포함하여 侵攻兵力을 擊退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c) 航空作戰

航空自衛隊와 美空軍은 일본방위를 위한 航空作戰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항공자위대는 防空, 上陸侵攻沮止, 對地支援, 航空偵察, 航空輸送 등의 항공작전을 실시한다.

미공군부대는 항공자위대가 수행하는 작전을 지원하며, 또 航空打撃力을 갖는 航空部隊를 사용할 수 있는 작전을 포함해서 侵攻兵力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d) 陸上作戰, 海上作戰 및 航空作戰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自衛隊와 美軍은 情報 後方支援 등의 작전에 관련된 諸活動에 관해서 필요한 지원을 상호 부여한다.

(나) 指揮 및 調整

自衛隊와 美軍은 긴밀한 협력하에 각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한다. 自衛隊와 美軍은 整合이 잡힌 작전을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調整된 作戰運用上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다) 調整機關

自衛隊와 美軍은 효과적인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調整機關을 통하여 作戰 情報 및 後方支援에 관해서 상호 긴밀한 조정을 한다.

(라) 情報活動

自衛隊와 美軍은 각자의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 효과적인 作戰을 공

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情報活動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自衛隊와 美軍은 情報의 要求, 收集, 處理와 配布의 각 단계마다 정보활동을 긴밀히 조정한다. 自衛隊와 美軍은 保全에 관해서 각자 책임을 진다.

(마) 後方支援活動

自衛隊와 美軍은 美日兩國間的의 關係規定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절한 후방지원활동을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시한다.

이 때문에 日本과 美國은 後方支援의 各機能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능력부족을 보충하도록 相互支援活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補 給

美國은 美國製 裝備品들의 보급품의 취득을 지원하고, 日本은 日本國內에서의 보급품의 취득을 지원한다.

(b) 輸 送

日本 및 美國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보급품의 航空輸送 및 海上輸送을 포함한 輸送活動을 긴밀하게 협력해서 실시한다.

(c) 整 備

美國은 美國製 品目の 정비에 있어서 일본의 整備能力이 미치지 않는 것을 지원하고, 日本은 일본국내에서 미군 장비품의 整備를 지원한다. 整備支援에는 필요한 정비요원의 기술지도를 포함한다. 飛行活動으로서 日本은 일본국내에서의 救助 및 回收에 관한 미군의 수요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d) 施 設

美軍은 필요시 美日安保條約 및 그와 관련된 規定에 따라 새로운 施設·구역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自衛隊의 基地와 美軍의 施設·區域의 공동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自衛隊와 美軍은 同條的 및 規定에 따라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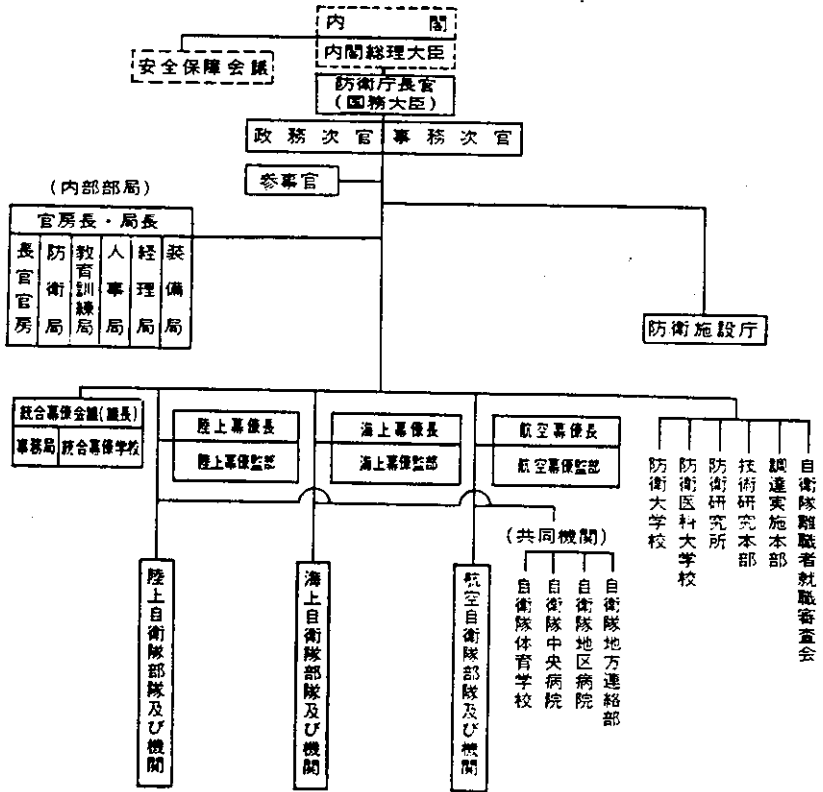
동사용을 실시한다.

Ⅲ. 일본이외의 極東事態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될 경우의 美日間の 협력

美日兩國政府는 정세변화에 따라 수시로 협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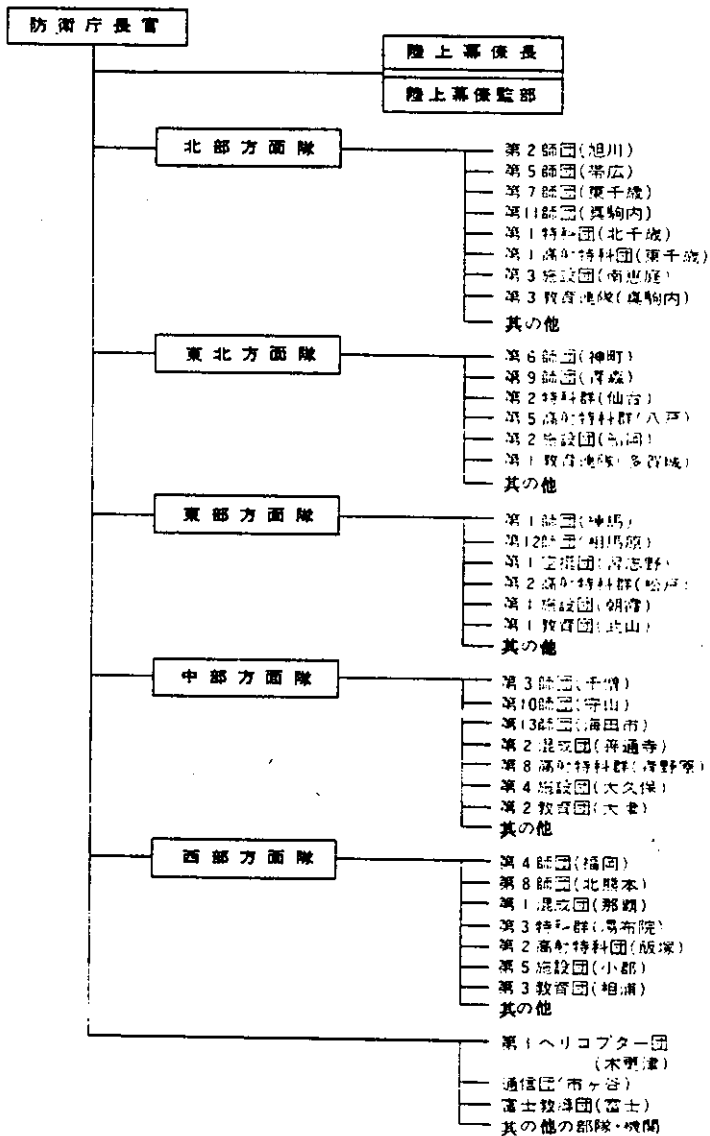
일본이외의 極東事態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될 경우에 日本이 美國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편의제공의 형태는 美日安保條約 및 關聯規定, 其他 美日間の 關係規定이나 日本의 關係法令에 의해서 規律된다. 美日兩國政府는 일본이 上記의 法的 태두리 안에서 미군에 대해 할 수 있는 편의공여의 형태에 대해 미리 서로간에 연구를 한다. 이와같은 연구에는 미군에 의한 自衛隊 基地의 공동사용 및 기타 便宜供與의 형태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資料 13. 防衛廳・自衛隊の組織の概要 (平成 1 年 7.1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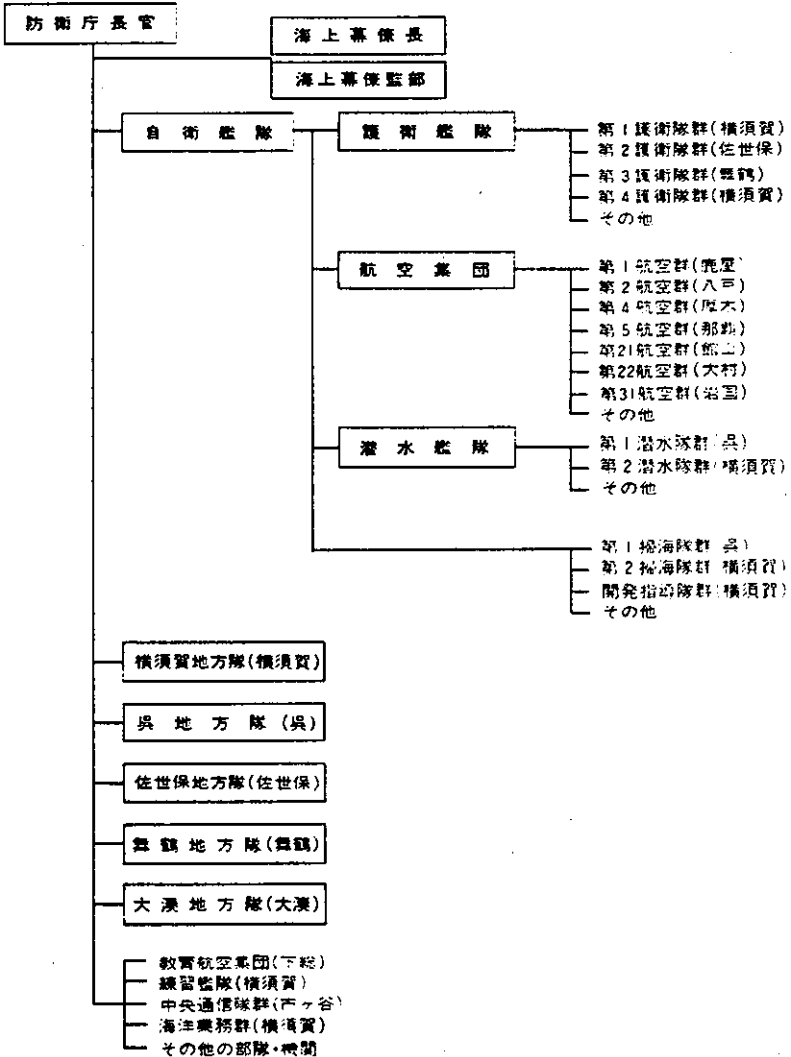


資料 14. 陸・海・空 各自衛隊の編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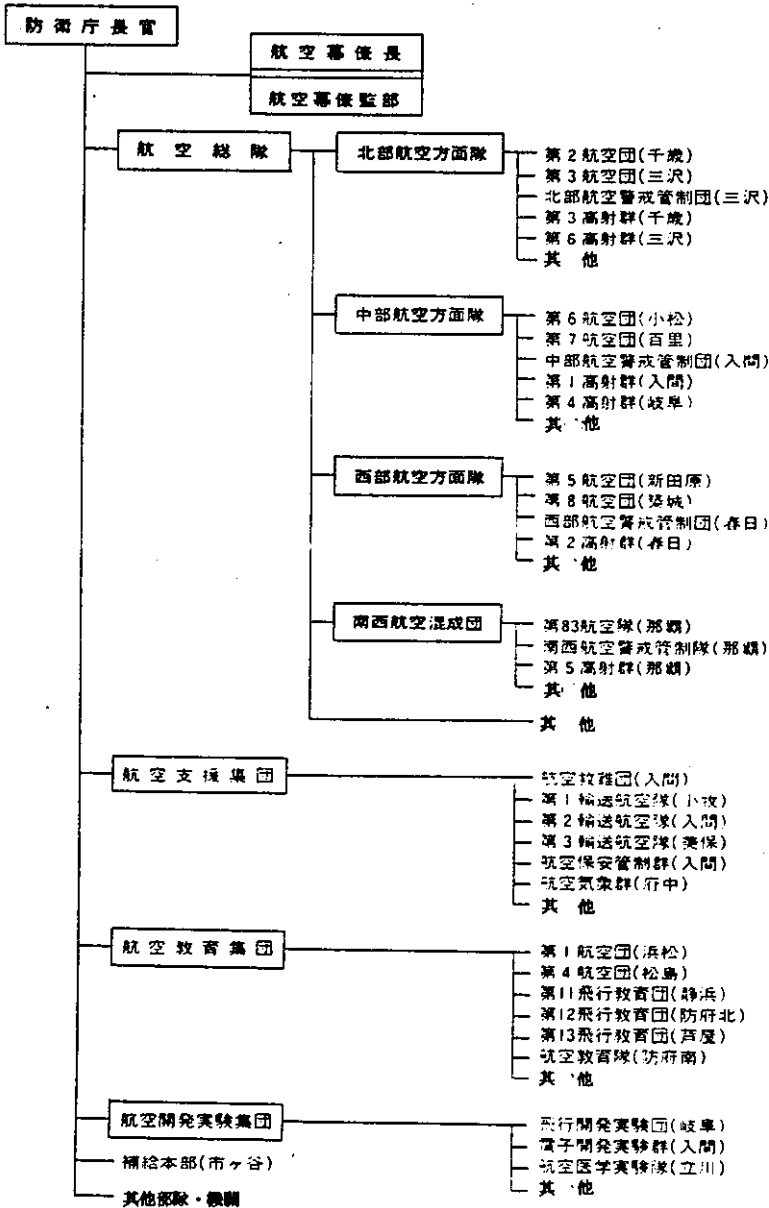
1) 陸上自衛隊の編成(平成 1. 7.1 現在)



2) 海上自衛隊の編成(平成1.7.1現在)



3) 空軍自衛隊の編成



資料 15. 戰車 主要火器 등의 保有數・性能諸元

保有數

(平成 1. 3.31 現在)

種 別	保 有 機 數
無 反 動 砲	2,750
迫 擊 砲	1,900
野 戰 砲	870
로켓 彈 發 射 機	120
高 射 機 關 砲	130
戰 車	1,190
裝 甲 車	630

性能諸元(コ1)

品 目	口徑(mm)	全長(m)	重量(kg)	最大射程(km)
84 mm無反動砲	84	1.1	16	3
64式 81 mm迫擊砲	81	1.3	52	4
58式 155 mm榴彈砲	155	7.2	5,700	15
155 mm榴彈砲 FH70	155	12.4	9,110	30(RAP)
75式 155 mm自走榴彈砲	155	7.8	25,300	19
155 mm加農砲	155	10.3	13,500	24
203 mm榴彈砲	203	10.8	14,400	17
203 mm自走榴彈砲	203	10.7	28,500	30(RAP)

性能諸元(コ2)

品目	車輛總重量 (噸)	最高速度 (km/時)	乘員 (人)	主要搭載火器
74式戰車	38.0	53	4	105 mm 戰車砲
73式裝甲車	13.3	60	12	12.7 mm 重機關銃
82式指揮通信車	13.6	100	8	12.7 mm 重機關銃
87式偵察警戒車	15.0	100	5	25 mm 機關砲

資料 16. 主要艦艇의 就役數・性能諸元 (平成 1. 3.31 現在)

區 分	數(隻)	基準排水量(千噸)
護 衛 艦	55	149
潛 水 艦	14	30
機 雷 艦 艇	41	18
哨 戒 艦 艇	14	1
輸 送 艦 艇	9	12
補 助 艦 艇	30	69
計	163	280

性能諸元

種 別	型 別	基準排水量 (噸)	最大速力 (노트)	主 要 裝 備
護衛艦	시라네型	5,200	32	5인치砲×2 (고성능 20미리기관포 ×2) 短 SAM 발사장치×1, 아스록그발사장치×1 3連裝短魚雷發射管×2 對潛헬리콥터×3
	히다게제型	4,600 (4,650)	30	5인치砲×2 고성능 20미리기관포×2 艦對空誘導彈發射裝置×1 艦對艦誘導彈發射裝置×1

種別	型別	基準排水量 (톤)	最大速力 (노트)	主要裝備
				아스룩그發射裝置×1 3連裝短魚雷發射管×2
	아사기리型	3,500	30	76미리速射砲×1 고성능 20미리기관포×2 短SAM發사장치×1 艦對艦誘導彈發사장치×1 아스룩그發사장치×1 3連裝短魚雷發射管×2 對潛헬리콥터×1
	유바리型	1,470	25	76미리速射砲×1 艦對艦誘導彈發사장치×1 보포스·로켓트란차×1 3連裝短魚雷發射管×2
潛水艦	유시오型	2,200 (2,250, 2,300)	20	魚雷發射管×6 (對艦誘導彈發사장치)
掃海艇	하쯔시마型	440	14	20미리機關砲×1 掃海具 一式
輸送機	미우라型	2,000	14	3인치速射砲×1 40미리連裝機關砲×1

註：()는 一部の 艦艇에 대한 性能諸元을 표시함.

資料 17. 主要航空機의 保有數・性能諸元 (平成 1. 3. 31 現在)

所屬	形式	機種	用途	保有數 (機)	最大速度 (ノット)	乗員 (人)	全長 (m)	全幅 (m)	엔진	
陸上自衛隊	固定翼	LR-1	連絡偵察	17	290	2(5)	10	12	터보프롭, 雙發	
		AH-1S	對戰車	40	120	2	14	3	터보샤프트	
	回轉翼	OH-6J/D	連絡觀測	163	130/150	1(3)	7	1	터보샤프트	
		HU-1B/H	多用途	139	100/120	2(7) /(11)	12	3	터보샤프트	
		V-107/A	輸送	49	140/140	2(26)	14	4/5	터보샤프트, 雙發	
		CH-47J	輸送	9	150	3(55)	16	4	터보샤프트, 雙發	
	海上自衛隊	固定翼	P-2J	哨戒	29	330	12	29	31	터보샤프트, 雙發 (補助터보젯트)
			P-3C	哨戒	50	400	11	36	30	터보프롭, 4發
		回轉翼	US-1A	救難	8	270	12	33	33	터보프롭, 4發
			HSS-2A/2B	對潛	74	130/130	4	17	5	터보샤프트, 雙發
		V-107A	掃海	4	140	6	14	5	터보샤프트, 雙發	

所屬	形式	機種	用途	保有數 (機)	最大速度 (노트)	乘員 (人)	全長 (m)	全幅 (m)	엔진
航空自衛隊	固 定 翼	F-15J/DJ	戰 闘	120	2.5 마하	1/2	19	13	터보팬, 雙發
		F-4EJ	戰 闘	125	2.2 마하	2	19	12	터보젯트, 雙發
		F-1	戰 闘	74	1.6 마하	1	18	8	터보팬, 雙發
		T-2	練 習	90	1.6 마하	2	18	8	터보팬, 雙發
		T-4	練 習	16	0.9 마하	2	13	10	터보팬, 雙發
		C-1	輸 送	27	440	5(60)	29	31	터보팬, 雙發
		C-130H	輸 送	10	340	5(92)	30	40	터보프롭트, 4發
		E-2C	早 期 警 戒	8	330	5	18	25	터보프롭트, 雙發
		CH-47J	輸 送	5	150	3(55)	16	4	터보사프트, 雙發
		回轉翼							

註 1) 保有數는 平成 1 年 3 月 31 日 現在의 國有財産臺帳數值이다.

2) 乘務員의 項에서 () 內의 數價는 輸送人員을 표시한다.

3) F-4EJ는 F-4EJ級 1 機를 포함한다.

資料 18. 誘導彈의 性能諸元 (수치는 개략임)

用途	名稱	所屬	射程 (km)	重量 (kg)	全長 (m)	直徑 (m)	誘導方式
對空	나이크 J 패트리엇	空	130 -	4,500 1,000	12.5 5	0.8 0.4	指令誘導 프리프로그람+指令 TVM
	改良호크	陸	-	600	5	0.4	레이다호밍
對空	81式 短距離地對 空誘導彈 (短 SAM) 携帶 SAM (스팅거)	陸 空 陸空	7 -	100 10	3 1.5	0.16 0.07	空中목은 赤外線호밍 赤外線호밍
	타타 (스텐다드) 시스마로 (AIM-7E) 시스마로 (RIM-7F)	海	18이상 10 -	600 200 200	4.5 3.7	0.3 0.2 0.2	레이다호밍 " "
對空	스마로 (AIM-7E)	空	22	200	317	0.2	레이다호밍

用途	名稱	所屬	射程 (km)	重量 (kg)	全長 (m)	直徑 (m)	誘導方式
	스비로 (AIM-7F) 사이드와인더 (AIM-9P) 사이드와인더 (AIM-9L)	空	50 7 12	230 80 85	3.7 3 2.9	0.2 0.13 0.13	레이다·호밍 赤外線호밍 赤外線호밍
對艦船	88式地對艦誘導彈 (SSM-1) 하퐁 80式空對艦誘導彈 (ASM-1)	陸 海 空		660 660 600	5 4.5 4	0.35 0.34 0.35	慣性誘導+레이다· 호밍 慣性誘導+레이다·호밍 慣性誘導+레이다·호밍
對戰車	64式對戰車誘導彈 87式對戰車誘導彈 TOW	陸	2 3.75	16 12 20	1 1 1.2	0.12 0.11 0.15	有線誘導 레이다·호밍 赤外線半自動有線誘導
對舟艇對戰車對戰車	79式對舟艇對戰車誘導彈	陸	4	20	1.6	0.15	赤外線半自動有線誘導

資料 19. 自衛隊의 주요연습실적 (昭和 63 年度)

區分	演習名	日 時	場 所	主要參加部隊	概 要
陸 上 自 衛 隊	北方機動 特別演習	63 年 8.17~ 9.23	東部方面區 ~北部方面 區(矢臼別 演習場)	第 12 師團 등 人員 약 4,600 명, 車輛 등 약 1,000 량	주거지에서의 訓 練度の 향상 상. 장거리기동능력의 練成.
	課目指定 演 習	63 年 12.6~ 12.9	日出生台 및 十文字原演 習場	第 8 師團 등 인 원 약 6,500 名 차량 등 약 1,200 량	沿岸部에서의 對 空挺·헤리본 戰 鬪要領의 演練.
海 上 自 衛 隊	海上自衛 隊 演習	63 年 9.28~ 10.12	日本關邊海 域	自衛함대, 全地 方隊 인원 약 35,000 名 艦艇 약 140 隻 航空機 약 170 機	對潛戰, 防衛戰 등 의 해상작전의 연습
航 空 自 衛 隊	航空自衛 隊 總合 演 習	63 年 9.29~ 10.15	日本全域 및 그 周邊	航空部隊 등 인 員 약 31,000 名 航空機 약 490 機	防空戰鬪, 航空阻 止 등의 演練

資料 20. 研究開發이 완료된 主要裝備品

區分	項 目	研究開發期間 (年度)	概 要
航 空 隊	中型輸送機 (C-1)	41 ~ 47	C-46의 後繼機로 개발된 단거리 離着陸性能이 훌륭한 中型젯트輸送機
	高等練習機 (T-2)	42 ~ 48	파이롯트의 操縱訓練의 최종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日本 최초의 超音速 젯트機
	支援戰鬥機 (F-1)	47 ~ 50	T-2를 모체로 개발한 支援戰鬥機
	中等演習機 (T-4)	56 ~ 62	航空自衛隊의 操縱者教育에 사용하고 있는 T-33型機 및 T-1型機의 後繼機로 개발된 中等演習機
誘 導 武 器	79式舟艇對戰車誘導彈	41 ~ 52	上陸用舟艇 및 戰車를 격파하기 위해서 개발된 赤外線半自動 有線誘導方式의 미사일
	80式空對艦誘導彈	48 ~ 54	支援戰鬥機에 塔載하여 상륙을 목적으로 침공해 오는 艦船을 격파하기 위해

區分	項 目	研究開發期間 (年度)	概 要
誘 導 部 隊			서 개발된 慣性誘導와 액티브·레이다·호밍의 複合誘導方式의 미사일
	81式短距離 地對 空誘導彈	41 ~ 54	低空으로 침입해 오는 航 空機를 격파하기 위해서 개발된 赤外線 호밍方式 의 미사일.
	87式對戰車 誘導彈	57 ~ 61	中距離의 對戰車火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세미 액티브·레이저·호 밍方式의 對戰車誘導彈.
	88式地對艦誘導彈	57 ~ 62	揚陸海岸부근에서 侵攻部 隊의 艦船을 격파하기 위 해서 개발된 慣性誘導와 액티브·레이더·호밍과 의 複合誘導方式의 地對 艦誘導彈시스템
火 器 · 車 輜	75式 155 mm 自走 彈砲	44 ~ 49	155 mm 彈砲를 塔載하 고, 機動力 및 防衛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 된 자주포

區分	項 目	研究開發期間 (年度)	概 要
火 器 · 車 輻	78 式 127 mm 空對 地 로켓트彈	49 ~ 51	戰鬪機에 塔載하여 지상 목표 및 艦船등을 공격할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로 켓트彈
	73 式裝甲車	42 ~ 46	機動力 및 防衛力を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人 員輸送車
	74 式戰車	39 ~ 47	61 式 戰車의 後繼로서 개발된 火力, 機動力 및 防衛力を 향상시키기 위 한 105 mm 戰車砲塔載의 戰車.
	78 式雪上車	48 ~ 52	冬期에 주로 輸送用에 사 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 동성이 훌륭한 雪上車
	82 式指揮通信車	53 ~ 56	裝輪 裝甲車에 通信機器 등을 塔載하고 師團長 등 의 指揮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指揮通信車
	87 式自走高射機關 砲	57 ~ 61	현재 自走高射機關砲의 後 繼로서, 對空火力으로 사

區分	項 目	研究開發期間 (年度)	概 要
火 器 · 車 輛			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新 高射機關砲
	裝甲戰鬥車	59 ~ 63	普通科部隊 등이 戰車와 일체가 되어 機動打擊 등 에 사용하기 위한 裝甲 戰鬥車
電 子 機 器	79 式 電子交換裝 置 2 號	48 ~ 52	師團 등에 장비하여 音聲 데이터畫像 등의 一括自 動交換 및 回線統制를 하 기 위해서 개발된 電子交 換裝置
	新型 OH 通信裝置	50 ~ 54	航空警戒管制組織의 운용 에 필요한 情報를 전송하 기 위해서 개발된 視界外 距離通信用의 多重無線搬 送通信裝置
	84 式暗視裝置	51 ~ 57	普通科聯隊 등에 장치하 여 야간에 中距離偵察監 視 및 射彈觀測에 사용하 기 위해서 개발된 暗視裝 置

區分	項 目	研究開發期間 (年度)	概 要
電 子 機 器	81式野戰特科射擊 指揮裝置	52 ~ 54	野戰砲의 射擊諸元의 算定 및 目標情報蒐集을 신속하 고 精確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射擊指揮裝置
	83式無線搬送裝置 1號	54 ~ 57	通信團에 정비하여 野外骨 幹回線을 구성하고 防衛마 이크로回線을 보완하기 위 해서 개발된 多重無線搬送 通信裝置
	次期警戒管制레이다	58 ~ 63	航空警戒管制組織의 基幹레 이다로서 警戒監視 및 邀 擊管制에 사용하는 次期 警戒管制레이다
	水上艦用소나	59 ~ 63	護衛艦에 塔載하여 潛水艦 및 魚雷를 搜索하는 水上 艦用소나

資料 21. 현재 開發中인 主要한 裝備品

區分	項 目	開發開始年度	概 要
航 空 機	新對潛헬리콥터 (艦載型)시스 템	58	HSS-2B형 對潛헬리콥터의 後繼機로서의 艦載型 對潛헬리 콥터 시스템
	次期支援戰鬥機	63	F-1型機의 後繼機로서의 지원전투기
	艦 / 空對艦誘導 彈	61	水上艦艇 및 航空機에 塔載 하여 水上艦艇을 공격하기 위 한 艦對艦誘導彈
	格闘戰用미사일	61	1990年代의 위협이 되는 航 空機에 有効하게 대처하기 위 한 格闘戰用 空對空誘導彈
	新個人携帶 SAM	62	携帶 SAM (스팅거)의 後繼로 서 각부대에 정비하여 敵의 航 空機를 공격하기 위한 近距離 携帶用 地對空 誘導彈
	新空對艦미사일	63	주로 침공하는 戰鬥艦艇을 공 격하여 그 능력을 無力化 시키 기 위해서 사용하는 空對艦미 사일
	短 SAM(改)	元	航空機를 격과하기 위해서 81 式短距離地對空誘導彈을 개량

區分	項 目	開發開始年度	概 要
車 輜			한 短距離地對空誘導彈
	新戰車	57	1980 年代 中期以後에 出現이 예상된 列強國主力戰車에 대 항할 수 있는 新戰車
水 中 武 器	對潛用短魚雷	元	高速 深深度潛航의 高性能潛水艦을 공격하기 위해서 使用하는 魚雷
電 子 機 器	師團對空情報處理시스템	61	師團의 高性能科部隊에 정비하여 對空情報 등을 신속하고 精確하게 처리전달하는 시스템
	師團新通信시스템	63	師團 등에 정비, 師團의 骨幹 通信網을 구성하여 指揮統制에 사용하는 시스템

資料 22. 自衛官の 定員 及 現員

(平成 1 年 3 月 31 日現在)

区分		隊別	陸 上 自衛隊	海 上 自衛隊	航 空 自衛隊	統合幕 僚會議	合 計
幹 部	定 員		22,664	9,462	9,160	139	41,425
	現 員		21,741	8,873	8,790	139	39,543
	充足率 (%)		95.9	93.8	96.0	100.0	95.5
准 尉	定 員		3,550	894	792	-	5,236
	現 員		3,150	820	717	-	4,687
	充足率 (%)		88.7	91.7	90.5	-	89.5
曹	定 員		79,186	22,374	25,991	21	127,572
	現 員		75,831	22,012	25,628	21	123,492
	充足率 (%)		95.8	98.4	98.6	100.0	96.8
士	定 員		74,600	13,355	11,613	-	99,568
	現 員		55,494	12,705	11,270	-	79,469
	充足率 (%)		74.4	95.1	97.0	-	79.8
計	定 員		180,000	46,085	47,556	160	273,801
	現 員		156,216	44,410	46,405	160	247,191
	充足率 (%)		86.8	96.4	97.1	100.0	90.3

資料 23 . 自衛官の 募集現況 (昭和 63 年度)

區 分			應募者數	採用者數	倍 率
幹 部 候 補 生	一 般 ・ 技 術	陸	1,085	128	8.5
		海	529	61	8.7
		空	554	69	8.0
		計	2,168	258	8.4
	婦 人 (一 般)	陸	43	13	3.3
		海	30	4	7.5
		空	42	9	4.7
		計	115	26	4.4
曹	技 術 海 曹	海	85	28	3.0
	看 護 (ナース)	陸	30	15	2.0
一 般 曹 候 補 學 生		陸	7,619	427	17.8
		海	3,779	364	10.4
		空	4,225	395	10.5
		計	15,623	1,186	13.2
自 衛 隊 生 徒		陸	3,133	281	11.1
		海	1,061	92	11.5
		空	976	54	18.1
		計	5,170	427	12.1
航 空 學 生		海	1,654	92	18.0
		空	1,995	71	28.1
		計	3,649	163	22.4
看 護 學 生		陸	2,451	106	22.2
2 士	男 子	陸	30,908	15,721	2.0

區 分			應募者數	採用者數	倍 率
2 士	男 子	海	5,595	3,251	1.7
		空	6,688	3,903	1.7
		計	43,191	22,875	1.9
	女 子	陸	1,922	446	4.3
		海	671	181	3.7
		空	647	201	3.2
		計	3,240	828	3.9
防 衛 大 學 校 學 生		理 工	7,262	397	18.3
		人 社	2,745	52	52.8
		計	10,007	449	22.3
防 衛 醫 科 大 學 校 學 生			3,530	66	53.5

資料 24. 平成元年度 主要事業の 經費

1. 裝備の 充實

(單位：百萬円)

區 分	數量	總 額	元年度	後年度
			豫算額	負擔額
陸上裝備				
74 式戰車	56 輛	22,175	0	22,175
裝甲戰鬥車	8 輛	4,722	0	4,722
73 式裝甲車	23 輛	2,684	0	2,684
203 mm 自走榴彈砲	6 門	2,196	51	2,145
155 mm 榴彈砲 FH70	43 門	13,701	0	13,701
87 式自走高射機關砲	8 輛	12,058	0	12,058
87 式偵察警戒車	16 輛	3,654	0	3,654
82 式指揮通信車	24 輛	2,157	0	2,157
其 他	3 輛	468	0	468
化學防護車		8,024	0	8,024
合 計		71,837	51	71,786
地對空誘導彈				
改良호크	1 個群	19,153	286	18,867
패리웃트	1 個群	101,341	253	101,088
81 式短距離地對空유도탄 (短 SAM)	10 세트	23,301	0	23,301
携帶式地對空유도탄 (휴대 SAM)	116 세트	2,495	125	2,370
地對艦誘導彈 (SSM-1)	16 基	36,301	0	36,301
合 計		182,591	663	181,928

區 分	數量	總 額	元年度	後年度
			豫算額	負擔額
航空機				
陸上自衛隊				
對戰車헬리콥터 (AH-1S)	9機	17,571	0	17,571
觀測헬리콥터 (OH-6D)	11機	2,561	0	2,561
多用途헬리콥터 (HU-1H)	10機	6,903	0	6,903
輸送헬리콥터 (CH-47J)	5機	21,952	0	21,952
小 計	35機	48,987	0	48,987
海上自衛隊				
對潛哨戒機 (P-3C)	10機	26,777	0	96,777
訓練支援機 (U-36A)	1機	2,552	41	2,512
連絡機 (LC-90)	2機	960	102	858
初級操縱練習機 (T-5)	2機	741	47	694
對潛헬리콥터 (SH-60J)	12機	57,466	273	57,193
掃海헬리콥터 (UH-60J)	4機	17,704	136	17,568
救難헬리콥터 (UH-60J)	3機	9,441	0	9,441
初級操縱練習헬리콥터 (OH-6D)	2機	416	0	416
小 計	36機	186,057	597	185,460
航空自衛隊				
要擊戰鬥機 (F-15J, F-15DJ)	11機	87,578	130	87,448
早期警戒機 (E-2C)	3機	26,248	866	25,382
中間練習機 (T-4)	20機	43,280	390	42,891
輸送헬리콥터 (CH-47J)	2機	9,077	0	9,071
救難헬리콥터 (UH-60J)	2機	6,261	0	6,261

區 分	數量	總 額	元年度	後年度
			豫算額	負擔額
小 計	38 機	172,444	1,386	171,058
合 計	109 機	407,488	1,984	405,505
艦船				
1,900 톤型護衛艦	2 隻	50,116	314	49,803
2,400 톤型潛水艦	1 隻	39,058	136	38,922
1,000 톤型掃海艦	2 隻	32,485	383	32,102
2,800 톤音響測定艦	1 隻	14,286	169	14,117
支 援 船	5 隻	1,011	215	796
合 計	11 隻	136,957	1,217	135,740

註：金額은 四捨五入하였기 때문에 꼭 맞지않는다.

資料 25. 防衛關係費(當初豫算)의 用途別 構成의 推移

(單位: 億圓, %)

年度 區分	60		61		62		63		元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人件・糧食費	14.140	45.1	15.086	45.1	15.439	43.9	15.789	42.7	16.136	41.2
物件費	17.232	54.9	18.350	54.9	19.736	56.1	21.215	57.3	23.063	58.8
裝備品 購入費	8.221	26.2	8.997	26.3	9.657	27.5	10.389	28.1	10.977	28.0
研究開發費	504	1.6	577	1.7	654	1.9	733	2.0	828	2.1
施設整備費	442	1.4	562	1.7	722	2.0	1,034	2.8	1,130	2.9
維持費等	4,722	15.1	4,815	14.4	4,997	14.2	5,217	14.1	5,938	15.1
基地對策 經費	2,965	9.5	3,011	9.0	3,299	9.4	3,418	9.2	3,738	9.5
其他	377	1.2	389	1.2	407	1.1	423	1.1	452	1.2
合計	31,371	100.0	33,435	100.0	35,174	100.0	37,003	100.0	39,198	100.0

註 1) 裝備品 購入費는 무기차량 의 구입비, 항공기구입비, 함선건조비이다.

2) 維持費들은 막사비, 피복비, 훈련활동경비들이다.

3) 金額은 四捨五入하였기 때문에 計數는 반드시 不합하지는 않는다.

資料 26. 防衛關係費（當初豫算）의 추이

（單位：億圓，%）

區分 年度	GNP（當 初豫算） （A）	一般會計 歲出（當 初） （B）	對前年度 伸張率	防衛關係 費（當初） （C）	前年對比 伸張率	防衛關係 費의 對 GNP 比 （C/A）	防衛關係 費의 對 一般會計 歲出比 （C/B）
30	75.590	9.915	△ 0.8	1,349	△ 3.3	1.78	13.61
40	281.600	36.581	12.4	3,014	9.6	1.07	8.24
50	1,585.000	212.888	24.5	13,273	21.4	0.84	6.23
51	1,681.000	242.960	14.1	15,124	13.9	0.90	6.22
52	1,928.500	285.143	17.4	16,906	11.8	0.88	5.93
53	2,106.000	342.950	20.3	19,010	12.4	0.90	5.54
54	2,320.000	386.001	12.6	20,945	10.2	0.90	5.43
55	2,478.000	425.888	10.3	22,302	6.5	0.90	5.24
56	2,648.000	467.881	9.9	24,000	7.6	0.91	5.13
57	2,772.000	496.808	6.2	25,861	7.8	0.93	5.21
58	2,817.000	503.796	1.4	27,542	6.5	0.98	5.47
59	2,960.000	506.272	0.5	29,346	6.55	0.99	5.80
60	3,146.000	524.996	3.7	31,371	6.9	0.997	5.98
61	3,367.000	540.886	3.0	33,435	6.58	0.993	6.19
62	3,504.000	541.010	0.0	35,174	5.2	1.004	6.50
63	3,652.000	566.997	4.8	37,003	5.2	1.013	6.53
元	3,897.000	604.142	6.6	39,198	5.9	1.006	6.49

資料 27. 上位 20 個國의 國防費 (1987 年度)

順位	國名	國防費 (百萬元)	1人當 國防費 (달러)	國防費의 政府支出 에 대한比率 (%)	國防費의 GNP/GDP 에 대한比率 (1986年度) (%)
-	소련	不明	不明	不明	不明
-	미국	288,433	1,185	28.7	6.7
3	프랑스	34,430	620	19.8	3.9
4	서독	34,244	560	22.9	3.1
5	영국	31,774	567	11.2	4.9
6	일본	25,422	207	6.5	1.0
7	이탈리아	16,817	293	4.9	2.2
8	사우디아라비아	16,235	2,360	35.8	22.4
9	이탈	13,996	880	不明	31.7
10	동독	11,626	700	7.6	7.7
11	인도	9,648	12	19.9	3.5
12	이란	8,956	179	15.8	30.4
13	캐나다	8,773	342	9.3	2.2
14	스페인	7,470	187	11.2	2.2
15	화란	6,503	446	9.0	3.0
16	폴란드	5,929	157	7.5	3.7
17	韓國	5,735	134	25.4	5.2
18	中國	5,636	5	8.9	2.6
19	체코슬로바키아	5,419	345	不明	4.9
20	오스트레일리아	5,265	316	9.9	2.7

註 1) 資料는 밀리탈리·발란스(1988 ~ 89)에 의함.

- 註 2) 소련에 관해서는 “不明”이긴 하나, 美國의 軍備管理軍縮局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87”에 의하면 1985年의 소련 國防費는 275,000百萬달러로서 당년도에 세계제 1위였다.
- 3) 나토諸國의 國防費는 나토定義에 의한 統一된 개념이다.
- 4) 國防費의 GNP/GDP에 대한 比率를 산출할 때에는 대부분의 나라는 GDP의 數價를 사용, 그것이 없는 나라에서는 GNP의 數價를 사용하고 있다.

資料 28. 美日共同訓練의 實績 (昭和 63 年度)

統合幕僚會議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內容
			日本側	美國側	
統合指揮所演習	63.5.21 ~ 5.23	檜町 駐日美軍司令部	統幕事務局 等 約 150 名	駐日美軍事 令部 約 110 名	調整要領의 연습
統合指揮所演習	12.13 ~ 2.18	檜町 駐日美軍司令部等	統幕, 陸, 駐日美軍司令部, 駐日海, 空各幕, 司令部, 駐日北部・東北 美各軍司令部, 各方面 總部, 第 7 艦監部, 自衛隊司令部, 艦隊司令部, 約 250 名 航空總隊司令部, 等 約 850 名		調整要領의 연습

陸上自衛隊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內容
			日本側	美國側	
方面隊指揮所演習 (YS-14)	63.5.17 ~ 5.26	美國하와이州 美陸軍施設	陸幕 等 約 90 名	第 9 軍團 等 約 240 名	調整要領의 연습
師團指揮所演習	63.10.30 ~ 11.7	王城寺原演習場 岩沼訓練場, 大和, 仙臺駐屯地	東北方面隊 約 110 名	第 9 軍團 約 30 名	調整要領의 연습

海上自衛隊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內容
			日本側	美國側	
對潛特別訓練	63.5.13 ~ 5.22	四國南方 및 九州 南東方海 域	함정 14 척 항공기 (延) 14 기	함정 7 척 항공기 (延) 13 기	對潛訓練 防空戰訓練 對水上戰訓 練 등
지휘소연습	63.5.31 ~ 6.4	海自船越 地區地方 總監部 및 駐日 美海 軍 橫須賀 基地 등	自衛艦隊司 令部 등 約 120 名	第 7 艦隊 駐屯美軍司 令部 約 120 名	調整要領의 연습
掃海特別訓練	63.7.19 ~ 7.29	무쯔灣	함정 2 척 항공기 (延) 25 기	항공기 (延) 2 기	掃海訓練
소규모특별 훈련	63.8.5 ~ 8.13	佐世保 및 中國을 통 하는 海域	함정 1 척	함정 1 척	戰術運動訓 練 등
海上自衛隊 演習時의 美日共同訓 練	63.10.5 ~ 10.12	本州南方 및 東方 海域	함정 9 척 항공기 (延) 33 기	함정 9 척 (미드웨이 포함) 항공기 (延) 123 기	對潛訓練 防空戰訓練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內容
			日本側	美國側	
實動 訓練	63.10.29 ~ 11.14	王城寺原・ 岩手山演 習場, 霞目飛行 場, 大和, 仙台, 岩 手駐屯地	東北方面隊 約 1,800 名	第 9 軍團 約 1,800 名	連携要領의 연습
實動 訓練	63.11.19 ~ 12.1	아이바野 演習場, 今 津駐屯地	中部方面隊 約 500 名	第 3 海兵機 動展開部隊 契 600 名	連携要領의 연습
方面隊指揮 所演習 (YS-15)	1.1.17 ~ 1.28	東千歳駐 屯地	北部方面隊 約 1,700 名	第 9 軍團 約 1,600 名	調整要領의 연습
實動 訓練	1.1.27 ~ 1.9	弘前・小 谷演習場 私前・青 森駐屯地	東北方面隊 約 180 名	第 3 海兵機 動展開部隊 約 160 名	連携要領의 연습 (積雪寒冷 地訓練)
實動 訓練	1.3.1 ~ 3.14	上富良野・ 近文台演 習場, 上富 良野・旭川 駐屯地 近文台彈 藥支處	北部方面隊 約 350 名	第 9 軍團 約 400 名	連携要領의 연습 (積雪寒冷 地訓練)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內容
			日本側	美國側	
지휘소연습	1.1.23 ~ 1.30	美海軍 大學校 15名	海幕 등 駐日美軍司 令部 등 約 50 名	第 7 艦隊	調整要領의 연습
對潛特別訓練	1.2.1 ~ 2.7	四國 및 紀伊南方 海域	함정 8 척 항공기 (延) 10기	함정 5 척 항공기 (延) 5기	對潛訓練 防空戰訓練 對水上戰訓練 등
掃海特別訓練	1.2.15 ~ 2.27	周防灘	함정 27 척 항공기 (延) 25 기	항공기 (延) 2기	掃海訓練

航空自衛隊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內容
			日本側	美國側	
전투기 전투 투훈련	63.4.25 ~ 4.27	小松沖空 域 (G)	항공기 (延) 40기	항공기 (延) 19기	공중전투
防空戰鬪訓 練 戰鬪機 戰鬪訓練	63.5.11 ~ 5.20	三澤東方 空域 (B) 秋田西方 空域 (C)	항공기 (延) 297기	항공기 (延) 273기	美日의 部 隊 상호간 의 連帶要 領의 연습 空中戰鬪
전투기전투 훈련	63.6.13	九州西方 空域	항공기 (연) 12기	항공기 (延) 12기	空中戰鬪
전투기전투 훈련	63.7.1 ~ 7.2	三澤東方 空域 (B) 秋田西方 空域 (C)	항공기 (연) 34기	항공기 (연) 11기	空中戰鬪
전투기전투 훈련	63.7.5	沖繩周邊 空域 (W-179)	항공기 (연) 10기	항공기 (연) 8기	空中戰鬪
전투기전투 훈련	63.7.11 ~ 7.15	三澤東方 空域	항공기 (연) 18기	항공기 (연) 18기	空中戰鬪
전투기전투 훈련	63.7.26 ~ 7.29	沖繩周邊 空域	항공기 (연) 52기	항공기 (연) 19기	空中戰鬪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內容
			日本側	美國側	
전투기전투 훈련	63.8.18 ~ 8.24	沖繩周邊 空域 (W-172)	항공기 (연) 25 기	항공기 (연) 17 기	공중전투
防空戰鬪訓 練※	63.10.5 ~ 10.7	北海道上 空空域 (A) 三澤東方 空域(B) 秋田西方 空域(C)	항공기 (연) 100 기	항공기 (연) 68 기	美日の 부 대 상호간의 連携要領의 演練
전투기전투 훈련	63.11.7 ~ 10.10	三澤東方 空域(B)	항공기 (연) 76 기	항공기 (연) 76 기	공중전투
救難訓練	63.11.28 ~ 11.30	沖繩周邊 空域 (W-172, 173,178)	항공기 (연) 7 기	항공기 (연) 8 기	항공기에 의한 救難
防空戰鬪訓 練 戰鬪機戰鬪 訓練	1.2.6 ~ 2.10	沖繩周邊 空域 (W-172, 179)	항공기 (연) 119 기	항공기 (연) 59 기	미일부대상 호간의 運 携要領의 演練. 空中 戰鬪

訓練名	日時	場所	規模		訓練内容
			日本側	美國側	
전투기전투 훈련	1.2.27 ~ 3.3	四國沖空 域(L) 九州北方 空域(N) 九州西方 空域(P)	항공기(연) 255기	항공기(연) 149기	공중전투

註: ※는 航空部隊 訓練時에 실시함.

日本防衛白書(平成元年版)

1990年 1月 30日 印刷

1990年 2月 5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5-19)

국통연 89-12-140

